

지방세외수입의 확충 및 효율적 관리방안-수원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icient Management Plan of Non-tax Revenue

황소하

연구진

연구책임자 황소하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강혜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신준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 2017 수원시정연구원

발행인 이재은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더함파크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쇄 2017년 12월 31일
발행 2017년 12월 31일
디자인 경기첨단인쇄디자인센터 Tel.031-8007-6000
I S B N 979-11-87778-65-3 (9332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황소하. 2017. 「지방세외수입의 확충 및 효율적 관리방안-수원시를 중심으로-」. 수원시정연구원.

비매품

국문 요약

제1장 서론

- 지방세수를 둘러싼 환경변화와 국세-지방세 구조의 근본적 한계로 인해 지방의 재정운영 자율성과 재정기반의 안정성 확보에 있어서 세외수입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관심은 그간 매우 부족하였음
- 이에 본 연구는 수원시를 중심으로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현황 및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세외수입 확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수원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변화하는 재정여건 속에서 안정적인 수입구조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는 지방세외수입의 전반적 현황 및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수원시 세외수입 업무 환경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수원시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운영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내용적 범위로 함
- 연구목적을 위해 통계자료 및 문헌분석, 업무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하고, 홈페이지 및 지방세외수입 관련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함

제2장 지방세외수입의 이론적 논의

- 지방세외수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통틀어 지방세 이외의 모든 자체수입을 지칭하며, 지방경영합리화, 각종 공기업의 확대, 경영수입 개발 확충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행정자치부, 2016)
- 지방세외수입을 통해 지방정부는 특정 공공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며, 수익자 부담원칙이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과하고 별다른 저항 없이 재원을 획득 할 수 있음(진회원 외, 2015)
- 일반적으로 세외수입은 세원 개발의 용이성, 수입의 다양성과 복잡성, 용도의 제한성, 세원의 다양성, 수익자 부담이라는 특징을 가짐(행정자치부, 2009; 김재진, 2013; 김대영, 2014; 이상훈, 2015; 서정섭 외, 2015; 최원구, 2016)
- 세외수입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님

- 세외수입은 민간시장의 가격처럼 작동하므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함
- 세외수입은 공공서비스로부터 편익을 얻은 수혜자들이 그 공급비용을 지불하므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재원조달 방법임
- 세외수입은 일반조세의 대안으로 재정수입 확충의 잠재력을 갖고 있음
- 반면 세외수입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님
 -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하여 조세저항이 적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과태료나 과징금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제기되는 등 조세저항이 다소 강해지고 있음
 - 지방세외수입은 부담규모와 가계의 소득수준을 연계할 수 없어 역진성을 띠는 가능성이 높음(이상훈, 2015)
 - 지방세외수입의 복잡한 수입구조와 방대하고 산재된 법령에 따른 징수근거는 재정정보의 수합 및 분석을 어렵게 함
 - 세외수입 구조의 취약성 문제와 관리체계의 비효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음



<그림 1> 지방세외수입의 구조

자료: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행정안전부,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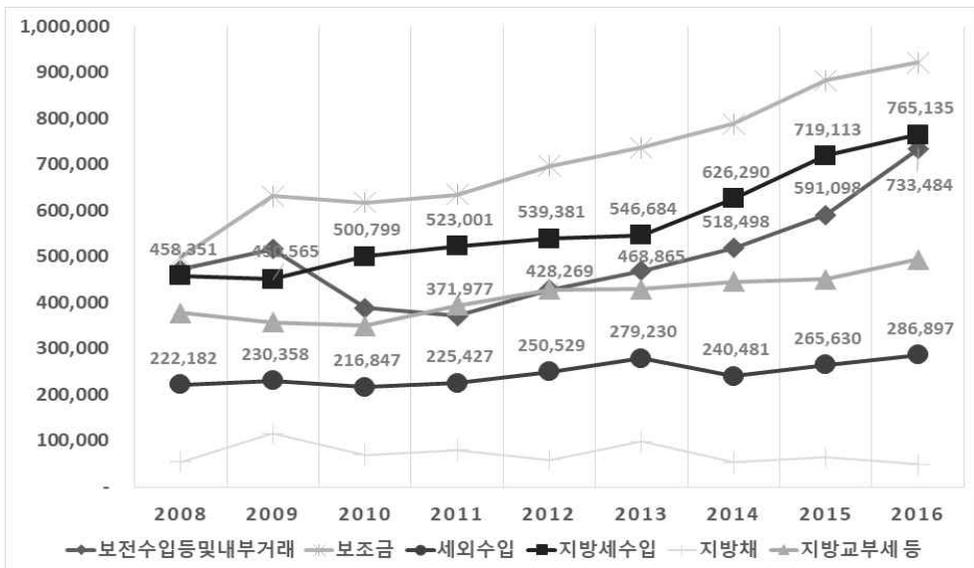
<표 1> 세외수입 제도의 주요 변화

연도	내용	
1961	새제개혁 및 지방세과 신설	○ 세외수입을 조세수입과 구분하여 별개의 개념으로 정립
1966	특별회계의 수입 구분	○ 특별회계 수입을 사업 수입과 사업외수입으로 구분 ○ 사업장수입과 이지사입을 잡수입으로부터 분리·구분
1970	세외수입계 설치 및 운영	○ 내무부 칙령 제 179호에 따라 지방세과에 세외수입계 설치 ○ 각 시도 재정과에 세외수입계 설치
1993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개정	○ 기존 감면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도록 도로 점·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사용료 수입 증대 도모
1997	수수료 현실화·유료화 계획수립	○ 물가와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연차별 현실화·유료화 계획 수립 및 추진
2002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 전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 2005년 224개 기관에 구축완료
2005	특별회계 세외수입 분리	○ 특별회계 세외수입 구분체계를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로 분리
2006	세외수입 발전기획단 구성	○ 세외수입 관련 지침 및 세외수입 실무매뉴얼(안), 세외수입 관련 서식정비(안) 등 마련
2008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계획 추진	○ 정보시스템의 web기반 전환 ○ 2010년 7개 시범기관에 구축 시작 후 2011년 고도화 완료
2013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체납절차, 제재수단,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과세자료의 제공 등을 명문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 세입예산 과목구분 변경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별도과목 신설을 통한 세외수입항목 으로부터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원금, 전입금, 예수금 및 예탁금 등 제외
2014	지방세입정보과 신설	○ 지방세외수입의 체계적 운영·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의 역할 수행 ○ 자치단체별 세무부서 내 전담조직 신설 추진
2015	지방세외수입운영실적 분석·진단 도입	○ 지방자치단체 운영 상황 점검 및 자체수입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 유도

자료: 2016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행정자치부, 2016) 재구성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은 2013년 세외수입 항목 개편 이후, 기존 임시적 세외수입에 포함되어 있던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등이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항목으로 제외되면서 2014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이후 2016년 말까지 최근 3년 간 지방세외수입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한편,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세입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대비 41.5%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세외수입 증가율(19.3%)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상승함
- <그림 2, 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방 세입총액 중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로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원으로서 세외수입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까지 30%를 상회하였으나 이후 3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16년 다소 증가한 27.3%의 비중을 보임
- 따라서 자주재원 비중의 지속적 증가는 세외수입 보다는 지방세수입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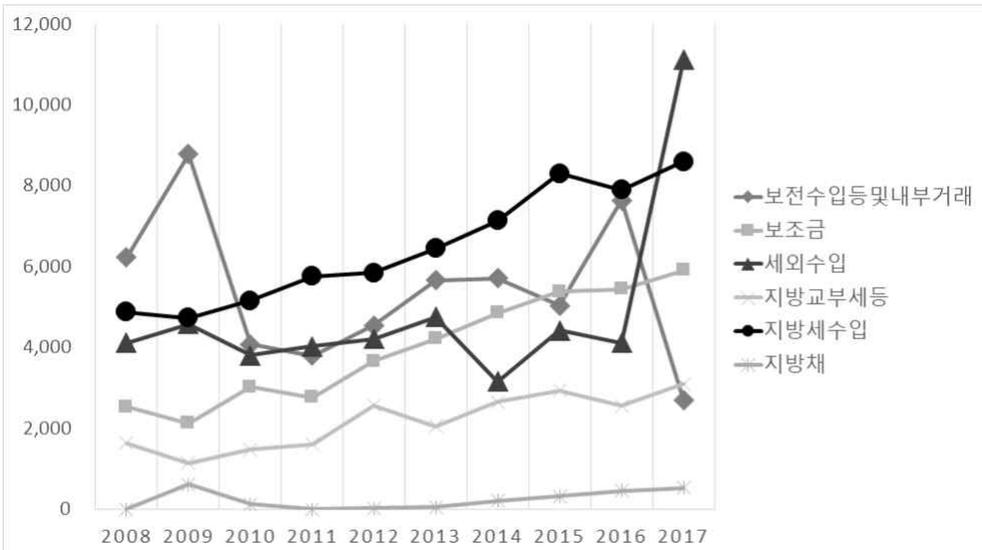
<그림 2> 세입항목별 결산(총계) 규모 증가 추이

자료: 2008~2016 지방재정연감(행정안전부, 각 년도) 재구성

- 선행연구들에서 지적한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운영에 있어 문제점은 체납비율 상승, 임시적 세외수입 상승, 비현실적인 요율 체계, 그리고 인력 및 조직에서의 비효율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크게 세외수입 규모 확충과 체계적인 운영관리방안의 마련의 틀에서 논의되었음

제3장 수원시의 세외수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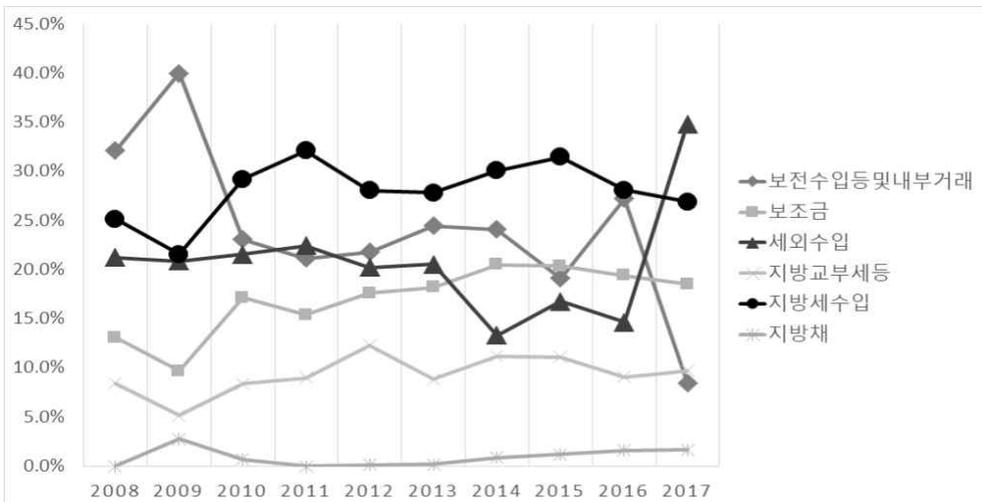
- 수원시는 높은 인구규모와 전자통신 산업을 바탕으로 자체수입 비중이 높아 유사자치단체 대비 높은 재정자립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로 우수한 사회경제적 환경과 세입확보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바탕으로 재정력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그럼에도 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향후 일자리, 안전, 복지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세입구조의 확립이 요구됨
- 지방세징수액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는 삼성전자의 영업실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신도시 조성 및 인구증가에 따른 세목의 완만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세입규모가 불안정함
- 수원시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보조금을 제외하고 의존재원의 증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수원시는 경기침체 및 중앙정부 정책 변화, 특정기업에 의한 세수변동성, 증가하는 세출수요 등을 고려할 때 자체수입 확충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므로 세수증대가 용이하여 재정수입 확충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세외수입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그림 3> 수원시 세입항목별 결산(총계) 규모 증가추이

자료: 2008~2016 지방재정연감(행정안전부, 각 년도) 재구성, 수원시 2017 세입가결산 내부자료(수원시, 2017)

- 수원시 지방세외수입은 2013년 세외수입 항목 개편 이후, 기존 임시적 세외수입에 포함되어 있던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등이 보조수입 등 및 내부거래 항목으로 제외되는 제도변화를 거치면서 2014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그러나 이후 2015년부터 예년 규모를 회복하였으며, 2017년에는 전년대비 2.6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음
- 전체 지방세입 총액 중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20.5%에서 2014년 13.3%로 감소한 이후, 지방세수입 및 보조금과 비교하여 지속적으로 낮은 예산규모와 비중을 유지하여 옴
- 지방세입 총액에서 지방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6.7%, 2016년 14.6%로 등락을 거듭하다 2017년(가결산 자료), 34.8%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26.9%)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최근 수원시 자체재원 증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특히 일반회계 세입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산기준으로 2014년 6.0%, 2015년 6.4%, 2016년 7.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특별회계의 세외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안정적 세외수입 확보 방안이 필요함



<그림 4> 수원시 세입항목별 결산(총계) 비중 증가추이

자료: 2008-2016 지방재정연감(행정안전부, 각 년도) 재구성, 수원시 2017 세입가결산 내부자료(수원시, 2017)

- 회계구분에 따른 2016년 결산총계 기준, 수원시 세외수입 규모는, 일반회계 1,496억 원(36.4%), 기타특별회계 682억 원(16.6%), 공기업특별회계 1,935억 원(47.1%)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경상적 세외수입은 2,910억 원으로 전체 세외수입 중 70.7%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 중 특별회계가 2,004억 원(68.9%)을 차지하고 있어 일반회계의 비중(31.1%)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임
-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204억 원으로 전체 세외수입 중 29.3%에 해당되며, 이 중 특별회계가 614억 원(51.0%), 일반회계가 590억 원(49.0%)에 해당하는 규모를 나타내고 있음

제4장 타지방자치단체 사례분석

-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확충 노력은 주로 부서별로 산재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를 세외수입 전담팀을 구성을 통해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체납징수팀을 강력히 운영하여 체납액 정리율 및 징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에 집중된 모습을 보임
- 최근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관리 체계는 체납액 통합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책임관제를 도입하거나, 정책수립 및 연구를 담당하는 전략조직 및 담당자를 통하여 종합적인 세입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각 자치단체들은 시민들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와 소액체납자 및 체납 원인을 구분하여 사례에 맞는 체납처분을 실시함
- 세외수입 관리체계에 있어서 유사 자치단체 들은 전담인력의 전문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정기적인 징수대책회의,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부서별 체납액 상시 관리체계 등을 통해 부과·징수·체납관리 등 업무전반에 대해 밀도 있는 점검체계를 구축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법령 해석 및 조례변경 통한 납부대상의 확대와 누락세원의 발굴, 이자 및 금고관리를 통한 효율적 이자관리, 투자 및 연구를 통해 특허권을 확보하는 등 기존 세원의 효율적 관리와 새로운 세원확보 측면의 노력을 기울임
- 검토한 국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수원시와 유사하게 세외수입 징수전담 조직운영, 통합관리 및 납부시스템 개선 등을 중심으로 체납징수 관리체계 효율화에 집중해옴
- 일부 우수사례가 있으나 징수 관리시스템 개선에 비해 신규세원 발굴, 세원관리 및 확충 등에는 정책적 관심이 다소 미비한 경향을 보임

- 향후 기존 세외수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경제적 연구 및 지속가능한 세외수입 창출을 위한 기술적 연구와 투자, 신규세입원 발굴을 위한 기반과 원칙 마련,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확충이 요구됨

<표 2> 유사 자치단체 사례 종합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	창원시
현황 (유사 단체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자체수입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세외수입 및 지방세 규모에 따른 높은 자체수입 확보 (의존재원<자체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경상적 세외수입 규모와 비중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인구유입에 따른 지방세를 바탕으로 높은 자체수입 확보 (의존재원<자체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경상적 세외수입 규모 보유 · 낮은 체납액 규모
조직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과 7팀 총 41명 (세정과 17명, 징수와 24명) · 맞춤형 징수전담팀 설치 · 각 과별로 세외수입 전담팀 설치 · 4개구청 총 11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과 12팀 총 69명 (세정과 13명, 징수과 56명) · 체납징수 조직이 각 2팀으로 구성 · 세무조사팀과 징수팀이 1개과에 배치 · 3개구청 총 12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과 8팀 총 49명 (세정과 22명, 징수과 27명) · 징수과는 체납징수 업무에 집중 · 세외수입체납팀 별도 설치 · 3개구청 총 10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과 13팀 총 81명 (세정과 22명, 세징 2과 20명, 징수과 39명) · 징수과 내에서 세외수입 관리와 징수 업무를 분리 · 정책 및 전략기획팀이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과 5개 담당 1팀 총 23명 · 5개구청 총 97명 · 세외수입 전담조직은 없으나, 세외수입 체납정리 전문단 운영
성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제도를 통한 인센티브의 부여 · 책임징수 전담 목표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관리관제를 통한 체납액 총괄 관리 · 징수책임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성과금, 제안제도를 통한 인센티브의 부여 · 책임징수제, 직위책임관리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책임징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원발굴징수 포상금 제도 시행
정보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통합계좌납부 기능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 체납액 통합 관리 시스템 : 지방세 체납액과의 통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지방세정보 시스템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 ARS 납부시스템 · 카드납부시스템 · 체납차량 알리미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 시스템 · 세외수입시스템 · 세외수입가상계좌 및 ARS납부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예금 압류서 비스 확대 시행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인으로 구성된 체납실태 시민조사반 운영으로 소액체납자와 고액 체납자 관리 차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지역 대규모 시설물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 · 수질조사를 시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세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질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 · 상표권 사용권 잉여에 끼지 판매를 통한 세원 확보

<표 3> 세외수입 세원 발굴 주요 우수사례

구분		주요 사례
법령 해석 및 조례변경 통한 납부대상의 확대와 누락세원의 발굴	납부대상의 확대	(충북단양군)하천 점·사용료를 중심으로 숨은 세원 발굴, (인천중구) 민간투자사업자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 (대구수성구)불법현수막 게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대상자 변경, (경남김해시)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상한선 규제의 검토를 통한 과태료 수입 증대, (대전서구) 도안신도시 옥외광고물 선진화 수입증대
	수수료 현실화	(경북상주시) 처리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예산절감 및 세외수입증대
	세무조사 체계 고도화	(인천광역시)DB 융합·분석을 통한 교통유발부담금 탈루세원 발굴, (경기광주시)3.0 빅데이터를 활용한 누락세원 발굴
이자 및 금고관리를 통한 효율적 이자관리		(전북순창군)민간보조자금(보조사업자)을 활용한 이자수입 확보, (충남보은군)이자수입 증대로 지방세입 확대, (강원도)통합관리기금 수익률 제고, (충청남도) 기금 여유자금 예치방법 개선
투자개발 및 연구를 통한 새로운 판매수익의 확보와 운영효율화	지역 문화관광시설 확충	(충북영동군)지역 관광 자원을 활용한 국악체험촌 조성운영, (경기고양시), 미활용 재산의 리모델링을 통한 아시아 최대 수조(특수)촬영장 조성, (강원정선군)정선아리랑 상품권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울산울주군)대자연 속 작은영화관 「알프스시네마」 운영에 따른 세입증대
	발전소 건립 및 에너지 판매	(충남천안시) 생활폐기물 광역 소각처리를 통한 상생발전 및 세외수입 증대, (충남공주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폐열 판매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 (전남고흥군) 폐석산 활용 태양광 발전소 건립으로 세수 증대, (서울특별시) 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로 판매 수익 창출
	공공시설 운영효율화	(전북완주시)관사 활용을 통한 공유재산 임대수입 확충, (전남강진군) 공공건물 옥상·주차장 태양광발전 투자유치 사업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임대 등 세입증대, (강원원주시) 청사면적 효율화로 수익 창출, (부산남구)국민체육센터의 성공적인 직영으로 세외수입 증대
	연구 및 직무발명	(대전광역시) 대덕특구 내 연구성과 사업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 (울산북구) 직무발명을 통한 기업-지자체간 공동특허획득 및 수익창출, (경북예천군)미생물의 활용성 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 농기경영비절감, (전남고흥군)통합쓰레기 분리수거 차량 개발과 특허 등록으로 예산 절감 및 지속 가능 새로운 세외수입 창출, (경남거창군)시스템 특허 개발로 예산 절감 및 세수 확보

자료: 기획재정부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및 행정자치부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기획재정부, 각 년도)

제5장 수원시 세외수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수원시 세외수입의 문제점

1) 세외수입의 낮은 위상과 구조의 불안정성

- 수원시의 세외수입이 총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산총계 기준, 2014년 13.3%를 나타낸 이후 다소 증가하였으나 지방세수입 및 보조금과 비교하여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 낮은 위상과 더불어 세외수입의 신장률이 매우 낮아 안정적 세입원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실정임
- 특히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으로 정의되는 경상적 세외수입(이상훈, 2015)에 비해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가 두드러져 세입구조의 불안정성을 나타냄
- 임시적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경상적 세외수입이 총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낮아지게 됨
- 경상적 세외수입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신장성이 낮은 가운데 개발수요, 재산매각 등에 의한 임시적 세외수입 규모의 변동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 세외수입의 불안정성을 드러냄
- 전반적으로 볼 때, 수원시는 안정적 경상적 세외수입원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향후 기존의 광고, 호매실, 권선택지개발 등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한 세외수입 창출이 기대되기 어려운 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신세원 확보가 요구됨

2) 과징금 및 과태료의 낮은 징수율

- 2016 일반회계 결산 기준, 수원시의 세외수입 징수율은 약 79.3% 수준으로 경기도 평균이 66.1%인 것을 감안할 때 매우 양호한 편임
- 부과형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낮은 경향을 보인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통적인 문제이며 수원시는 상대적으로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수원시 타 세외수입 항목에 비해 과징금 및 과태료 항목의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2017년 기준 일반회계 세외수입 항목의 징수율은 대부분 80~10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과징금 및 과태료의 경우 70% 대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음

3) 지방세외수입 관련 조직 및 인력운용상의 문제

- 현재 수원시의 경우 시청 세정과 내 세외수입팀, 징수와 내 세외수입징수팀, 도로교통 관리사업소의 자동차관리과 등의 전담조직을 두고 있으나 세외수입 업무의 근본적인 특성상 세외수입의 부과·징수·관리 업무는 수백 개의 개별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개별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업무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구조임
 - 실질적으로 세외수입 전담조직이 각 부서의 세외수입원의 관리 및 효율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하지만 현재 인력으로는 전체 세외수입을 취합·관리하고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 특히 각 부서의 세외수입 실무 담당자는 해당 업무를 타 업무와 병행하고 있어 해당 업무에 대한 우선순위와 전문성이 떨어짐
- 또한 수원시의 세외수입 인력운영과 관련하여 차량등록사업사업소의 인력부족의 문제가 제기됨
- 세외수입 업무 구조상 세외수입 전담조직이 각 부서의 세외수입업무에 대한 종합계획 및 목표설정, 관리 기능을 모두 담당하기는 다소 어려우나 전문가 및 실무자 인터뷰 결과 향후 신세원 개발 및 세원관리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의 정책개발 및 기획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세외수입원 관리 및 신규 수입원 발굴의 한계

-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원시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공공시설 사용료 인상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신장률이 저조하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변동 폭이 매우 큼
- 이와 같은 세외수입 구조의 불안정성과 낮은 신장성과 더불어 향후 기존의 광고, 호매실, 권선택지개발 등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한 임시적 세외수입 창출이 기대되기 어려운 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신세원 확보가 요구됨
- 세원관리 및 신규 수입원 발굴을 위해서는 각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세외수입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및 조직과 신규 수입원 발굴 기준 등의 마련이 필요함
- 이와 같은 조직 및 인력구성상의 한계, 조직간 연계 미비, 공유재산에 대한 조사부족 등으로 신세원발굴과 같은 기획업무는 도모하기 어려운 실정임

5)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 필요

- 수원시는 2015년 12월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통해 2007년 이후 동결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2018년 1월부터 ‘하수도 요금 연차별 인상계획’에 따라 하수도 요금을 2018년 20%, 2019년 10%, 2020년 4% 인상함
- 수원시는 이번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통해 세외수입 구조를 합리화하고 상하수도 경영적자 해소를 도모하였으나 수원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으로 원가분석에 기반한 사용료 및 수수료의 조정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수년째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2. 수원시 세외수입의 개선방향

1) 안정적 경상적 세외수입의 확충

- 안정적 경상적 세외수입의 확충은 재원의 지속성,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지방재정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됨
- 무엇보다 안정적 경상적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해 근간이 되는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와 주기적 조정이 요구됨
- 또한 현재 재산임대수입 등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세외수입은 낮은 규모에 정체되어 있거나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수원시 내 활용 가능한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파악과 이를 활용 한 세원 확충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저금리 시대에 따라 감소가 불가피한 이자수익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져야 함
-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외국 및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수원시 고유의 지역적 특성(산업경제적 특성 및 역사문화자원 등)을 고려한 신규 경상적 세외수입원 발굴이 요구됨

2)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관리개선

- 수원시는 부과관리 및 체납징수 업무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밀착 관리를 통해 체납액이 감소하여 징수율 측면에서 동종단체 대비 매우 우수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타 세외수입 항목에 비해 과태료 및 과징금 징수율이

낮게 나타나는 등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다양한 세목의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유사 지방자치단체들의 우수사례를 검토·도입하고 징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조직 확충, 성과보상 측면에서의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함

3) 신규 수입원 발굴을 위한 노력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제도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과세대상을 확대 및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있으며, 효율적 이자관리, 투자개발 및 연구, 문화관광시설 확충, 공공문화시설의 복합적인 활용과 운영효율화를 바탕으로 신규 세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음
- 수원시 역시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적 기반 및 기간산업, 기타 공유재산을 바탕으로 잠재된 세원을 발굴하여 안정된 세외수입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수원시 세외수입 전담조직이 단순히 세외수입 업무의 취합 및 관리만을 담당하는 것에서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신규 세입원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로서 현재 세외수입 전담팀의 인력 및 조직규모 확충이 필수적일 것임
- 신규 세입원 발굴 등을 위해서는 세외수입 전담팀과 회계과, 건축과 및 건설정책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등 주요 관련부서와의 협력이 필수적임
- 이를 위해서는 신규 수입원 발굴시 검토해야 할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과 연구 인력의 확보가 요구됨

4) 세외수입 조직의 확충 및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

- 수원시의 경우, 부과관리 및 징수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나 도내 유사 지방자치단체들과 비교하여 가장 많은 인구수와 큰 세입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담당인력은 유사 자치단체와 비슷하거나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세외수입 확충 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조직의 구축이 미비함
- 이에 세외수입의 확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세외수입 전담조직의 확대 및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정립이 요구됨
- 그 외 관외 세외수입 업무수요로 인한 세외수입 인력부족은 중앙정부 차원의 인력충

- 원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의한 비용지원 등이 합리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앞서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된 바와 같이 세외수입 담당인력의 전문성 부족 문제의 해소를 위해 전문교육 실시, 잦은 순환보직의 방지, 업무성과 및 신규세입 발굴에 따른 인센티브의 강화, 격무부서에 대한 보상체계 확립, 세외수입 업무 매뉴얼의 구축 등이 필요함
- 현재 수원시의 경우 납부편의를 제공하는 대시민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으나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은 미비한 편으로 세외수입 업무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5) 세외수입 관리체계 강화 및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 제고

-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세원확충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지방분권시대에 매우 중요한 세원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동안 지방세 및 이전재원에 비해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낮았음
- 전문가 및 담당자 인터뷰 결과,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에 따라 징수성과에 큰 차이가 있으며, 주민 수용도에도 큰 영향을 받음
- 따라서 정기적인 징수대책회의, 부서별 체납액 상시 관리체계 등을 통해 업무전반에 대해 밀도 있는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주민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주제어: 지방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신세원 발굴, 징수율

| 차례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제2장 지방세외수입의 이론적 논의	5
제1절 지방세외수입의 개요	5
1. 지방세외수입의 정의	5
2. 지방세외수입 제도의 흐름	6
3. 지방세외수입의 유형	9
4. 지방세외수입의 기능과 특성	15
제2절 지방세외수입 현황	20
1. 지방자치단체 세입구조와 추이	20
2. 지방세외수입 징수현황	23
3. 지역별 지방세외수입 규모	27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40
제3장 수원시 세외수입 현황	47
제1절 수원시 세입환경 및 전망	47
1. 수원시의 입지적 특성	47
2. 수원시 인구 현황	47
3. 수원시 산업구조	49
제2절 수원시 세입구조와 현황	52
1. 수원시 지방세입 규모와 구성	52
2. 수원시 세외수입 추이	57
제3절 수원시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68
1. 수원시 세외수입 징수실적	68
2. 수원시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73
제4절 수원시 세외수입 관리체계 현황	77
1. 수원시 세외수입 관련 정책방향 및 조례	77

2. 수원시 세외수입 관련 조직	82
제5절 수원시 세외수입 확충 노력과 성과	86
1. 체납액 정리율 향상	86
2. 요율 현실화를 통한 세입 증대	87
3. 신규세입 발굴과 기존 시설 운영 효율화	87
제4장 타지방자치단체 사례분석	89
제1절 유사지방자치단체의 사례	89
1. 성남시	89
2. 용인시	101
3. 화성시	113
4. 창원시	121
제2절 기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129
1. 법령해석 및 조례변경을 통한 납부대상의 확대와 누락세원의 발굴	129
2. 효율적 이자관리를 통한 세입규모의 확충	132
3. 투자개발 및 연구를 통한 새로운 판매수입원의 확보와 운영효율화	134
제3절 소결	138
제5장 수원시 세외수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43
제1절 수원시 세외수입의 문제점	143
1. 세외수입의 낮은 위상과 구조의 불안정성	144
2. 과징금 및 과태료의 낮은 징수율	145
3. 지방세외수입 관련 조직 및 인력운용상의 문제	148
4. 세외수입원 관리 및 신규 수입원 발굴의 한계	149
5.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 필요	150
제2절 수원시 세외수입의 개선방향	152
1. 안정적 경상적 세외수입의 확충	152
2.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관리개선	152
3. 신규 수입원 발굴을 위한 노력	153
4. 세외수입 조직의 확충 및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	155
5. 세외수입 관리체계 강화 및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 제고	155
참고 문헌 	157

| 표 차례 |

<표 2-1> 세입과목 개편 비교	7
<표 2-2> 세외수입 제도의 주요 변화	8
<표 2-3> 경상적 세외수입 유형	11
<표 2-4> 임시적 세외수입 유형	12
<표 2-5> 지방세외수입의 유형(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12
<표 2-6> 연도별 세입항목별 결산(총계) 규모 및 비중	20
<표 2-7> 2016년 회계별 세입항목별 결산(총계) 규모	22
<표 2-8> 연도별 수입별 세외수입 결산(총계) 규모	23
<표 2-9> 회계별 수입별 세외수입 규모 추이(결산총계)	25
<표 2-10> 항목별 세외수입 규모 추이(결산 총계)	26
<표 2-11> 2016년 단체별 세외수입 징수현황	27
<표 2-12> 2017년도 시도별 세입재원별 규모(총계예산)	27
<표 2-13> 단체별 세외수입 구성 비교(총계예산)	29
<표 2-14> 연도별 단체별 주민1인당 세외수입액 추이	30
<표 2-15> 2017년도 단체별 주민1인당 세외수입액 시도별 현황	31
<표 2-16> 2017년도 서울특별시 세외수입 구조(총계 당초예산)	31
<표 2-17> 2017년도 경기도 세외수입 구조(총계 당초예산)	33
<표 2-18> 세외수입 확충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43
<표 3-1> 수원시주민등록인구 현황(2016년12월)	47
<표 3-2> 수원시 경제활동인구 추이	48
<표 3-3> 수원시 인구 추이	49
<표 3-4> 수원시 지역내총생산 추이	49
<표 3-5> 수원시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	50
<표 3-6> 수원시 재정자립도 추이	52
<표 3-7> 수원시 연도별 회계구분별 세입결산(총계) 규모	52
<표 3-8> 수원시 연도별 세입항목별 결산(총계) 규모	54
<표 3-9> 수원시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현황	56
<표 3-10> 2016년 수원시 세외수입 구조(결산총계)	57
<표 3-11> 2017년 수원시 세외수입 징수액(가결산)	59

<표 3-12> 수원시 3개년도 세입결산 현황(결산총계)	68
<표 3-13> 수원시 지방세 징수액 추이	69
<표 3-14> 수원시 연도별 세입항목별 결산(총계) 규모	69
<표 3-15> 수원시 2016년 세입항목별 결산(총계) 규모(일반회계)	70
<표 3-16> 수원시 세외수입 회계구분별 징수실적(결산총계)	71
<표 3-17> 2016년 수원시 징수율 현황(결산총계)	72
<표 3-18> 2017년 수원시 징수율 현황(결산총계)	72
<표 3-19>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일반회계)	73
<표 3-20> 연도별 수원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추이	74
<표 3-21> 2016년 수원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	74
<표 3-22>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75
<표 3-23> 세외수입 연도별 관리조직별 체납액 현황(2017.7.31. 기준)	76
<표 3-24> 2017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계획	78
<표 3-25> 2017년 세외수입 징수목표	79
<표 3-26> 수원시 세외수입 관련 주요 자치법규 목록(세외수입)	80
<표 3-27> 수원시 세외수입 주요항목별 자치법규 현황	81
<표 3-28> 수원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유관 조직(시 본청 및 사업소)	82
<표 3-29> 수원시 신설 세외수입 징수과(세외수입징수팀) 업무	84
<표 3-30> 수원시 구별 세무과 조직구조	85
<표 3-31> 수원시 외국인 차량관련 체납액 ZERO화 성과	86
<표 3-32> 수원시 신규세입 발굴 사례(2016년)	88
<표 4-1> 성남시 지방세 징수 추이	90
<표 4-2> 성남시 세외수입 징수 추이(일반회계)	91
<표 4-3> 성남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일반회계)	92
<표 4-4> 성남시 체납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92
<표 4-5> 성남시 세외수입 관련 자치법규 목록	93
<표 4-6> 성남시 세외수입 주요항목별 자치법규 현황	94
<표 4-7> 성남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유관 조직	96
<표 4-8> 성남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유관 조직(구별)	98
<표 4-9> 성남시 체납액 징수 통합시스템 개요	99
<표 4-10> 용인시 지방세 징수 추이	103

<표 4-11> 용인시 세외수입 징수 추이(일반회계)	104
<표 4-12> 용인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일반회계)	104
<표 4-13> 용인시 체납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105
<표 4-14> 용인시 세외수입 관련 자치법규 목록	106
<표 4-15> 용인시 세외수입 주요항목별 자치법규 현황	107
<표 4-16> 용인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유관 조직	109
<표 4-17> 용인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유관 조직(구별)	110
<표 4-18> 세입통합 간편납부시스템 수납실적(2012.9~2013.12)	111
<표 4-19> 화성시 지방세 징수 추이	114
<표 4-20> 화성시 세외수입 징수 추이(일반회계)	115
<표 4-21> 화성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일반회계)	115
<표 4-22> 화성시 체납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115
<표 4-23> 화성시 세외수입 관련 자치법규 목록	116
<표 4-24> 화성시 세외수입 주요항목별 자치법규 현황	117
<표 4-25> 화성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유관 조직	119
<표 4-26> 창원시 지방세 징수 추이	122
<표 4-27> 창원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일반회계)	123
<표 4-28> 창원시 체납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123
<표 4-29> 창원시 세외수입 관련 자치법규 목록	124
<표 4-30> 창원시 세외수입 주요항목별 자치법규 현황	125
<표 4-31> 창원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유관 조직(구별)	127
<표 4-32> 단양군 하천 점·사용료 추정 주요 내용	129
<표 4-33>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 점용료 추정 주요 내용	130
<표 4-34>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주요 내용	130
<표 4-35> 대구광역시 수성구 연도별 과태료 부과현황	131
<표 4-36> 대구광역시 수성구 연도별 과태료 징수현황	131
<표 4-37> 경상남도 상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수수료 현실화 주요 내용	131
<표 4-38> 경기도 광주시 3.0 빅데이터를 활용한 누락세원 발굴 주요 내용	132
<표 4-39> 전라북도 순창군 민간보조금 이자수입 지도 관리 주요 내용	133
<표 4-40> 서울특별시 세출자금 집중관리제 주요 내용	133
<표 4-41> 충청북도 영동군 국악체험촌 조성 주요 내용	134

<표 4-42> 경기도 고양시 수조(특수)촬영장 조성 주요 내용134
 <표 4-43> 전라남도 강진군 공공건물 옥상, 주차장 태양광발전 투자유치사업 주요내용 ...135
 <표 4-44>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직영 전환 주요 내용135
 <표 4-45> 울산광역시 북구 직무발명을 통한 기업-지자체간 공동특허획득 주요내용 ...136
 <표 4-46> 전라남도 고흥군 통합쓰레기 분리수거 차량 개발 및 특허 등록 주요 내용 ...136
 <표 4-47> 충청남도 천안시 생활폐기물 광역처리 주요 내용137
 <표 4-48> 충청남도 공주시 생활폐기물 폐열 판매 주요 내용137
 <표 4-49> 유사 자치단체 사례 종합139
 <표 4-50> 세외수입 세원 발굴 주요 우수사례140
 <표 5-1> 2016년 회계연도 수원시 세입결산 세외수입(일반회계)146
 <표 5-2> 2017년 회계연도 수원시 세외수입 징수현황147

| 그림 차례 |

<그림 1-1> 연구 흐름도	4
<그림 2-1> 지방세외수입 관련 법령	9
<그림 2-2> 지방세외수입의 구조	10
<그림 2-3> 세입항목별 결산(총계) 규모 증가 추이	21
<그림 2-4> 세입항목별 결산(총계) 비중 증가 추이	22
<그림 2-5> 회계별 세외수입 결산(총계) 규모 추이	24
<그림 2-6> 회계별 수입별 세외수입 규모 추이(결산총계)	25
<그림 2-7> 2017년도 경기도 세외수입 규모(당초 총계예산)	32
<그림 2-8> 2017년도 경기도 경상적 세외수입 규모(당초 총계예산)	35
<그림 2-9> 2017년도 경기도 임시적 세외수입 규모(당초 총계예산)	37
<그림 2-10> 2017년도 경기도 회계구분별 세외수입 규모(당초 총계예산)	37
<그림 2-11> 2017년도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규모(대도시형)	38
<그림 2-12> 2017년도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 구성(대도시형)	39
<그림 2-13> 2017년도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 구조(대도시형)	39
<그림 3-1> 2017년도 수원시 연도별 회계구분별 세입구조(결산총계)	53
<그림 3-2> 2017년도 수원시 세입구조(결산총계)	54
<그림 3-3> 수원시 세입항목별 결산(총계) 규모 증가추이	55
<그림 3-4> 수원시 세입항목별 결산(총계) 비중 증가추이	56
<그림 3-5> 2016년 수원시 세외수입 규모와 구성(결산총계)	60
<그림 3-6> 수원시 경상적 세외수입(일반회계) 규모 추이(결산총계)	61
<그림 3-7> 수원시 사용료수입(일반회계) 규모 추이(결산총계)	62
<그림 3-8> 수원시 수수료수입(일반회계) 규모 추이(결산총계)	62
<그림 3-9> 수원시 임시적 세외수입(일반회계) 규모 추이(결산총계)	63
<그림 3-10> 수원시 경상적 세외수입(기타특별회계) 규모 추이(결산총계)	64
<그림 3-11> 수원시 경상적 세외수입(공기업특별회계) 규모 추이(결산총계)	65
<그림 3-12> 수원시 임시적 세외수입(기타특별회계) 규모 추이(결산총계)	65
<그림 3-13> 수원시 임시적 세외수입(공기업특별회계) 규모 추이(결산총계)	66
<그림 3-14> 수원시 및 유사자치단체 체납액 추이	75
<그림 3-15> 2017년 수원시 재정운용 방향	77
<그림 3-16> 2017년 수원시 일자리경제국 전략목표(세정 운영 관련)	78
<그림 4-1> 체납실태 시민조사반 운영현황	101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로의 전환을 약속한 가운데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에 대한 다양한 개혁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는 국세중심의 세수구조, 불가피한 복지지출의 증가, 경기침체 등으로 재정적 위기에 봉착함
 - 국세와 지방세 8:2의 불균형적인 구조 지속과 대내외적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자체재원 확보가 어려워짐
 - 저출산·고령화의 추세와 중앙정부 정책에 의한 사회복지분야 지방비 부담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 및 세출의 국가의존성이 가중됨
 - 그밖에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중앙정부의 비과세 감면정책 등으로 그동안 지방의 재정부담은 더욱 증가함
- 이와 같은 구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과 같은 자체재원의 확보를 통해 안정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기 보다는 대부분의 세입을 이전재원에 의존하고, 더 많은 이전재원을 확보하는데 보다 주력해옴
 - 2017년 지방 일반회계 당초예산 중 지방세 약 72조 원,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이 102조 원임(김태호, 2017)
 - 2017년 국고보조금 확정예산액 46조 원 중, 27조 원(57.8%)이 사회복지사업 분야임(김태호, 2017)
 - 2017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비는 전체 예산의 25% 정도인 49.5조 원 수준이며 사회복지비의 89.3%는 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은 9.7%에 그침(이재원, 2017)
 - 2008년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28% 수준이었으나 2017년 34% 수준으로 증가함(김태호, 2017)
- 중앙의존적 재원구조로 인해 2017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곳은 215개로 전체의 88.4%에 달하며, 153곳(전체의 63%)의 재정자립도는 30%에도 미치지 못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취약한 이유는 재원(세수) 신장성과 직결되는 주요세원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과세대상(세원)이 협소하기 때문임(유태현, 2017)

-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측면에서는 일자리, 안전, 복지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기침체에 따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복지확대 등의 중앙정부 시책과 약속사업 추진을 위한 고정적 재정수요의 꾸준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정부의 탈 수도권 정책에 따라 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상권 위축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지방세는 부동산 관련 거래과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가 대부분으로, 부동산 경기변동에 민감하고(한선경, 2010), 법인지방소득세 역시 대기업이 입지한 경우 특정기업의 영업활동과 실적의 변동성이 세수변동성으로 이어진다는 특성이 있어 세수불안정성이 높아(구균철, 2017) 세원의 다양성 확보가 필요함
 - 특히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최근 이루어진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따라 세수감소와 재정환경의 변화가 예상됨
- 특히 수원시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서 자체재원 비중이 의존재원보다 높은 지방자치단체 중의 하나임
 - 수원시의 전체 세입 중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5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원조달에 있어서 자체수입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음
 - 자체수입 측면에서 수원시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어 전자·통신 산업의 경기변동과 중소기업의 재무적·사회적 이슈에 따라 큰 폭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입의 등락이 존재하여 지방세수입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와 같이 지방세수를 둘러싼 환경변화와 국세-지방세 구조의 근본적 한계로 인해 지방의 재정운영 자율성과 재정기반의 안정성 확보에 있어서 세외수입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관심은 그간 매우 부족하였음
 - 의존재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지방세수입 또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환경 속에서, 비교적 자율적으로 변경과 확대가 가능한 세외수입은 안정적인 지방재정수입 확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세외수입은 수익자부담원칙이 강하여 형평성이 높고 세수증대가 용이한 특징으로 인해 재정수입 확충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재원이자, 지금까지 지방세입 분야에 있어서 지방세나 보조금에 대한 관심과 비교하여 정책적 우선순위가 낮음¹⁾

1) 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명확화를 위한 본격적인 법령 변화는 2013년 이후에 시작되었으며, 정부차원에서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신설 및 운영지침을 마련한 것 또한 2014년으로, 세외수입에 대해 정책적

- 지방자치단체 세입대비 지방세외수입의 비중은 2014년도 12.6%에서 2017년도 11.6%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지방세외수입 증가세 둔화의 원인은 대체로 사용료나 수수료 등의 요율이 장기간 미조정되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2,000여 종이 넘는 세외수입 항목들이 개별 부서에 분산 관리되어 징수율이나 신장성 등이 다른 세입항목에 비해 저조하기 때문임(이희재, 2017)
- 그 동안 지방세외수입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이 일부 진행되었지만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관련 규정만 200여 개 이상의 개별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부과·징수되고 있고, 부과 세목 수만 2,000여 종이 넘는 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음(이상훈, 2015)
 - 주로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과태료 징수나 수수료를 현실화와 같이 일부 세목만을 중점 분석하거나, 징수 및 체납관리의 특정 업무프로세스 개선방안 마련에 초점을 둔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왔으며 종합적 관점의 연구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본 연구의 주요 연구대상인 수원시의 경우 세외수입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전무함
- 이에 본 연구는 수원시를 중심으로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현황 및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세외수입 확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수원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변화하는 재정여건 속에서 안정적인 세입구조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먼저 지방세외수입의 제도적 기반과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기존 쟁점을 파악하고, 지방세외수입 전국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지방세외수입 전반적인 문제점을 제시함
 - 다음으로 수원시의 세외수입의 규모, 징수현황, 세외수입 관리체계를 분석하여 세외수입 확충 및 관리개선의 기회를 도출함
 - 또한 타자치단체의 세외수입 구조, 세외수입 확충노력 및 관리 시스템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수원시 세외수입 구조개선을 위한 세원다양화 및 효율적 운영방향에의 함의를 제시함
 - 본 연구는 관심이 부족했던 수원시 지방세외수입 전반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세외수입 각 분야의 세부적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후속 연구방향을 제시함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본 연구는 지방세외수입의 전반적 현황 및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수원시 세외수입 업무 환경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수원시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운영 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내용적 범위로 함
 - 지방세외수입의 제도적 배경과 현황, 주요 쟁점을 도출
 - 수원시 세외수입 환경과 세외수입 관련 업무 및 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이슈 검토
 - 세외수입 확충 및 징수체계 개선을 위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노력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수원시 세외수입 확충 및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 본 연구를 위해 통계자료 및 문헌분석, 업무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하고, 홈페이지 및 지방세외수입 관련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함
 - 문헌분석 및 수원시청 관련부서 업무담당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수원시 세입현황과 쟁점, 업무환경과 주요이슈 파악
 - 홈페이지 및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을 조사하고 세외수입 확충 및 관리·운영 우수사례 검토
 - 문헌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원시 세외수입 운영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
- 이와 같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범위 및 방법을 토대로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됨

연구의 흐름		주요내용	연구방법
2장	지방세외수입의 이론적 논의	- 지방세외수입의 개요 - 지방세외수입 현황 - 선행연구의 검토	문헌조사
3장	수원시 세외수입 현황	- 수원시 세입 환경 및 전망 - 수원시 세입구조와 현황 - 수원시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 수원시 세외수입 관리체계 현황 - 수원시 세외수입 확충 노력과 성과	문헌조사 실증분석 담당자 인터뷰
4장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분석	- 국내 지방자치단체 사례 분석	홈페이지 및 문헌조사 담당자 인터뷰
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연구의 요약 및 결론 - 정책 제언	분석결과의 종합 및 대안의 모색

<그림 1-1> 연구 흐름도

제2장 지방세외수입의 이론적 논의

제1절 지방세외수입의 개요

1. 지방세외수입의 정의

- 지방세외수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통틀어 지방세 이외의 모든 자체수입을 지칭하며, 지방경영합리화, 각종 공기업의 확대, 경영수입 개발 확충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행정자치부, 2016)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정의)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 정의함
- 즉,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세원의 성격보다는 조세인 지방세에 대응하는 잔여적 관점에서 이해되어 온 것이 특징임
 - 이러한 경향은 지방세외수입의 실체와 역할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힘들게 하고,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및 관리체계의 효율화 달성을 어렵게 함(곽채기, 2014; 윤태섭, 2016)
- 세외수입은 지방자치제의 건전한 육성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지방재정자립도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서, 세외수입에 대한 정의는 지방재정 수립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변화시킬 수 있음(안종석, 1997)
- 최근 개정된 IMF 재정통계편람(GFSM 2014)²⁾에서는 일반정부의 수익 유형을 조세수입(Taxes), 사회기여금(Social Contributions), 출연금(Grants), 기타소득(Other Revenue)으로 구분함
 - GFSM 1986의 세외수입(nontax revenue) 정의에 따르면, 사회기여금 중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험과 기타소득에서 자본이전을 제외한 재산소득, 재화와 용역의 판매, 벌금 및 과태료, 몰수금, 보험료, 수수료 및 청구가 세외수입에 포함됨(IMF, 2014)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2014년부터 기존 세외수입 과목 중 회계기술 상 수입에 해당하는 과목들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분류되면서 실질적 수입에 중점을 두기 시작함
-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지방세외수입의 개념은 크게 광의, 협의, 최협의의 3가지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음

2)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14(IMF, 2014)

- 광의의 세외수입은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지방세를 제외한 모든 자체수입을 의미하는 잔여적 관점에서 사용되는 세외수입의 정의임
 - 기존 광의의 세외수입에는 전입금, 이월금과 같은 회계의 조작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포함하였으나, 2013년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세외수입에서 제외되었음
- 협의의 세외수입은 임시적 수입을 제외한 실질적 수입을 의미함
 -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 수입 등 정상적 수입과 특별회계 사업수입만 포함하며, 기타수입, 과년도 수입과 같은 임시적 수입은 제외함
 - 명목적 수입을 제외한 정상적이고 실질적 수입으로서 주로 재정정책의 대상이 됨 (이원희, 1996)
- 최협의의 세외수입은 일반회계로 구분되는 정상적 수입만을 의미함
 - 상수도사업, 주차장 관리사업, 공영개발사업 등의 특별회계 사업수입은 제외함
- 한편, 세외수입은 ACIR 및 OECD가 제시하는 사용료·수수료(user charge and fee)의 측면에서 정부의 공공서비스에 대해 가격의 형태로서 개념이 정의되기도 함
 - 즉, 수익자부담원칙 혹은 원인자부담원칙을 직접적으로 적용하여 정부 서비스를 받기 위해 고객들이 지불하는 대가를 통칭함으로써 공기업특별회계의 사업수입과 임시적 수입을 포괄함 (주만수, 2015)

2. 지방세외수입 제도의 흐름³⁾

-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외수입의 개념을 규정한 것은 고종 32년 4월 5일자 칙령 제71호 「수입예규」에서 규정된 ‘조세외수입’으로 볼 수 있음
 - ‘조세외수입’은 ‘관유 재산수입, 관업수입, 벌금, 몰수금, 환약금과 기타 국고에 수납함이 가한 수입금 등으로서 법률, 칙령 또는 구 관행에 따라 토지, 호구, 제반 영업 및 물건 등에 부과하여 국고에 수납하는 조세 이외의 제수입’으로 조세수입과 구분하여 규정됨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원을 확충하고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수입과 구분되는 ‘세외수입’을 별개의 개념으로 정립하고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1962년 이후 세계개혁과 함께 내무부에 지방세과를 신설하면서부터임
- 1966년에는 특별회계수입을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으로 구분하였고, 잡수입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장수입과 이자수입을 잡수입에서 구분·분리함

3) 2016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행정자치부, 2016)을 참조함

- 1970년 각 시·도 재정과에 세외수입계를 설치·운영하여 명실상부한 세외수입업무체계를 갖추었으며, 경영수익사업이 새롭게 등장함
- 1984년에는 징수교부금이 교부금수입에서 구분·분리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1999년), 예탁금 및 예수금(2003년)이 지방세외수입의 범위에 추가되는 한편, 지방채(1997년)와 기부금(1999년)은 지방세외수입의 범위에서 제외됨
- 전산관리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업무방식 개선과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2002년 전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개발되어 2005년까지 224개 기관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구축됨
 - 지방세외정보시스템은 2008년 노후화된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도화 계획을 바탕으로 web기반으로 전환하여 7개 시범기관에 구축 후, 2011년 고도화를 완료하여 전자납부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
- 2005년 이후, 특별회계 세외수입 구분체계를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로 분리함
- 2013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체납절차와 체납에 대한 제재수단,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과세자료의 제공 등이 명문화됨에 따라 지방세외수입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법률 시행에 앞서 지방세외수입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지방세입정보과가 행정안전부에 신설됨 (2014.4.1.)
 - 세외수입의 납부편의를 위한 간단 e납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과태료 및 상하수도 요금 등을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어 왔던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용자금 원금수입, 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 등 5개 세입을 신설 세입과목인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수입 항목으로 재분류함

〈표 2-1〉 세입과목 개편 비교

개편 전(~ '13)		개편 후('14~)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예탁금및예수금, 용자금원금수입, 부담금,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 용자금원금수입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국내차입금(시도지역개발기금 시도용자금수입 포함), 국외차입금, 예치금회수	지방채	국내차입금, 국외차입금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예탁금 및 예수금 (시도지역개발 기금 시도용자금수입 포함), 예치금회수

자료: 2017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행정자치부,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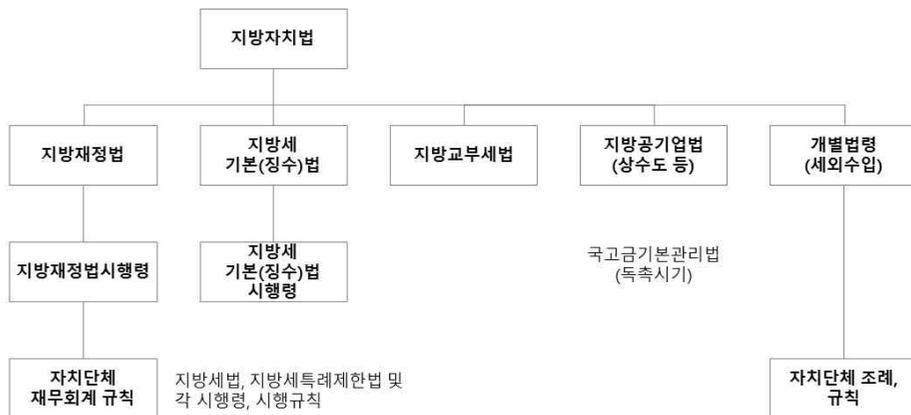
- 즉, 명목상 수입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존의 이질적이고 다양한 과목이 포함되어 잔여적 개념으로 이해되었던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적극적 정의가 가능해짐 (곽채기, 2014)

<표 2-2> 세외수입 제도의 주요 변화

연도	내용	
1961	새제개혁 및 지방세과 신설	○ 세외수입을 조세수입과 구분하여 별개의 개념으로 정립
1966	특별회계의 수입 구분	○ 특별회계 수입을 사업 수입과 사업외수입으로 구분 ○ 사업장수입과 이자수입을 잡수입으로부터 분리·구분
1970	세외수입계 설치 및 운영	○ 내무부 칙령 제 179호에 따라 지방세과에 세외수입계 설치 ○ 각 시도 재정과에 세외수입계 설치
1993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개정	○ 기존 감면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도록 도로 점·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사용료 수입 증대 도모
1997	수수료 현실화·유료화 계획수립	○ 물가와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연차별 현실화·유료화 계획 수립 및 추진
2002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 전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 2005년 224개 기관에 구축완료
2005	특별회계 세외수입 분리	○ 특별회계 세외수입 구분체계를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로 분리
2006	세외수입 발전기획단 구성	○ 세외수입 관련 지침 및 세외수입 실무매뉴얼(안), 세외수입 관련 서식정비(안) 등 마련
2008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계획 추진	○ 정보시스템의 web기반 전환 ○ 2010년 7개 시범기관에 구축 시작 후 2011년 고도화 완료
2013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체납절차, 제재수단,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과세자료의 제공 등을 명문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 세입예산 과목구분 변경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별도과목 신설을 통한 세외수입항목 으로부터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원금, 전입금, 예수금 및 예탁금 등 제외
2014	지방세입정보과 신설	○ 지방세외수입의 체계적 운영·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의 역할 수행 ○ 자치단체별 세무부서 내 전담조직 신설 추진
2015	지방세외수입운영실적 분석·진단 도입	○ 지방자치단체 운영 상황 점검 및 자체수입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 유도

자료: 2016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행정자치부, 2016) 재구성

- 2016년 지방세외수입금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3개 항목 80종에 대한 정의가 보완되었고, 세외수입금과 수수료, 재산임대 수익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지방세외수입금의 정의를 신설함⁴⁾
- 또한 현재 지방세외수입법을 적용받는 법령은 과징금 관련 54개, 이행강제금 관련 12개, 부담금 관련 14개의 총 70개 관련 법령이 있음(한국지방세연구회, 2017)
-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처분 등의 업무에 있어서 세외수입은 이와 같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을 비롯하여 200여개의 개별법령 및 조례에 부과·징수 근거를 두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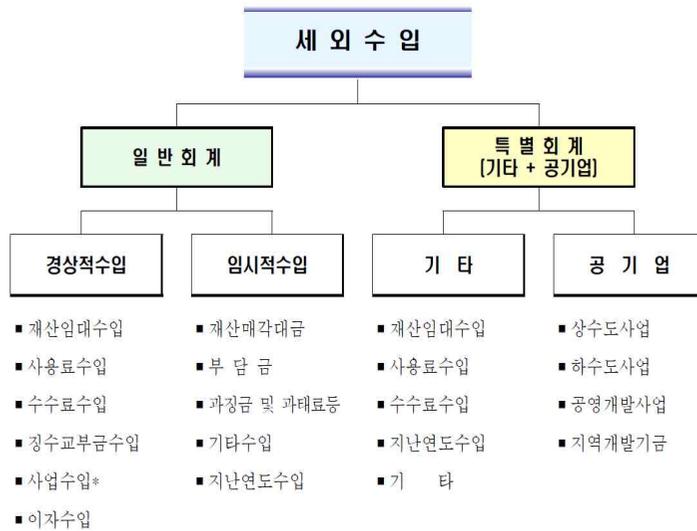
<그림 2-1> 지방세외수입 관련 법령

자료: 2017년도 지방세외실무(한국지방세연구회, 2017)

3. 지방세외수입의 유형

- 지방세외수입은 회계 귀속관계,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 수입의 내용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음
- 우선 세외수입은 회계의 귀속관계를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수입의 규칙성을 기준으로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으로,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다시 회계의 귀속관계를 기준으로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로 구분함

4)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재정수입 가운데 지방세입 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정 서비스 또는 경제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하며, 이러한 지방세외수입 가운데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부과형 세외수입만을 대상으로 함(한국지방세연구회, 2017).



<그림 2-2> 지방세외수입의 구조

자료: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제정개요 (행정안전부, 2017)

- 김대영(2014)은 지방세외수입을 부과·징수형태를 기준으로 부과형 세외수입과 비부과형 세외수입으로 구분한 바 있음
 - 부과형 세외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게 별도의 부과·징수절차를 거쳐 확보되는 지방세외수입임
 - 행정서비스의 대가를 수수하기 위한 유형(사용료, 수수료, 상·하수도 요금 등)과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세외수입(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변상금 및 위약금, 체납처분수입, 그 외 기타수입 등)으로 구분됨
 - 비부과형 세외수입은 부과형 세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수입(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과 임시적 수입(재산매각수입, 융자금원금수입, 기부금 등)으로 구분함
 - 이러한 구분방식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영역을 구분하는 데 활용됨
-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구분 없이 수입발생과 확보의 규칙성을 기준으로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으로 구분하고 있음(행정안전부, 2016)
- 경상적 세외수입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년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을 의미함

- 세외수입 중 수입원이 가장 많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수입입
-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이 포함됨

〈표 2-3〉 경상적 세외수입 유형

항목	내용
사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료는 공공시설이용 또는 재산사용의 대가로서, 공공시설의 사용으로 인하여 얻는 편익에 대하여 보상으로 징수함 ○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시장사용료, 입장료 수입 등이 포함됨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게 제공한 특정사무에 대하여, 사무처리의 대가로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징수함 ○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제증명발급 수수료, 인허가 수수료 등이 포함됨
재산임대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의미함 ○ 국·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제외함 ○ 토지 및 건물의 임대수입, 잡종재산의 임대수입 등이 포함됨
사업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종축장, 임업시험장, 원종장 등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매각수입 및 주차장 운영수입, 보건소 진료수입 등이 포함됨
징수교부금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 도세, 하천 및 도로 사용료 등을 시·군이 위임받아 징수하는 경우 징수위임기관인 국가나 도에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함 ○ 실질적으로 도와 시·군 간 자원배분의 의미를 가짐
이자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가 세입금 및 자금을 예치하여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의미함

- 임시적 세외수입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의미함
 - 대체로 규모가 크지만 수입원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세입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움
 -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등, 기타수입(불용품 및 매각대, 체납처분수입, 보상금수납금, 시·도비 반환금수입, 기부금, 그 외 수입)이 포함됨

<표 2-4> 임시적 세외수입 유형

항목	내용
재산매각 수입	○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매각계획에 따라 공유물건인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얻는 수익을 의미함
부담금	○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이익을 받는 경우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 ○ 자치단체 간 부담금과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일반부담금으로 구성됨
기타수입	○ 불용품 매각수입, 체납처분수입, 시도비반환금 수입, 기부금 등이 포함됨
과징금 및 과태료 등	○ 기타수입 중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2014년도부터 세외수입 예산과목 상 '목' 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의 '항' 으로 재분류됨 ○ 위약금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지불할 것을 미리 약정한 경우 약정위반으로 지자체에 귀속하는 금전을 의미함 ○ 변상금은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여 가능한 손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하거나 변상명령에 의하여 변상되는 수입을 의미함 ○ 과태료는 행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벌을 의미함 ○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으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거나 사업의 취소·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금전상 제재를 의미함 ○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이행확보를 위해 부과하는 금전벌을 의미함
지난년도 수입	○ 징수결정된 수입금이 당해연도 출납폐쇄기일까지 수납되지 않고 그 후에 수납된 수입금을 의미함 ○ 납부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으로 하되 이를 지난년도수입으로 정리함

-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근 지방세외수입의 세부 분류 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 2-5> 지방세외수입의 유형(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211-01	국유재산임대료	1.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관리하는 국유토지·임야·건물 임대수입
			211-02	공유재산임대료	1.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령 및 관련 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는 공유 재산 임대료 수입 2.기타특별회계의 이용료·실습수입·임대료 등 기타 재산수입

장	관	항	과목구분	설 정
			목	
			212 사용료수입	
			212-01 도로사용료	1.도로사용료 수입
			212-02 하천사용료	1.하천사용료 수입
			212-03 하수도사용료	1.하수도사용료 수입
			212-04 상수도사용료	1.상수도사용료 수입
			212-05 시장사용료	1.공설도매시장 및 가축시장사용료 수입
			212-06 도축장사용료	1.도축장사용료 수입
			212-07 입장료수입	1.운동장, 공연장 등 입장료 수입 2.기타특별회계의 영조물 입장료 수입
			212-08 기타사용료	1.공원, 운동장, 묘지, 복지회관, 시민회관 등의 공공시설 및 재산의 사용료 수입 2.기타특별회계의 온천급탕, 중기사용, 주차장 사용 등 사용료 수입 3.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사용료 수입
			213 수수료수입	
			213-01 증지수입	1.자치단체 수입증지 판매수입
			213-02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1.자치단체가 쓰레기처리봉투를 판매한 수입
			213-03 재활용품수거판매 수입	1.자치단체가 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판매한 수입
			213-04 기타수수료	1.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수료 수입
			214 사업수입	
			214-01 사업장생산수입	1.사업장의 생산물 및 부산물 매각수입
			214-02 주차요금수입	1.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금수입
			214-03 통행료수입	1.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도로 통행료 수입
			214-04 청산금수입	1.환지청산금 수입
			214-05 분담금수입	1.공사완료지구 분담금 수입
			214-06 매각사업수입	1.주택·택지공업용지, 생산품 등 매각수입
			214-07 배당금수입	1.공사 등 출자금에대한 이익배당금 수입
			214-08 의료사업수입	1.보건소, 보건의료원 등의 운영수입
			214-09 기타사업수입	1.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사업수입
			215 징수교부금수입	
			215-01 징수교부금수입	1.시·도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 수입 2.사용료 징수에 따른 교부금 수입 3.수수료 등 징수에 따른 교부금 수입
			216 이자수입	
			216-01 공금예금이자수입	1.공금예금 이자수입
			216-02 민간용자금회수 이자수입	1.민간용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216-03 통화금융기관용자금회수이자수입	1.통화금융기관 용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16-04 공사공단등융자금 회수이자수입	1.공사공단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2.출자출연기관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216-05 시·군·구융자금 회수이자수입	1.시·군·구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216-06 기타이자수입	1.세입·세출 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2.지방보조금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수입
	220 임시적세의수입	
	221 재산매각수입	
	221-01 국유재산매각귀속 수입금	1.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매각 을 위임받은 국유재산(토지, 건물 등) 매각수입 중 지방자치단체 에 귀속되는 수입
	221-02 시·도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1.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로부터 매각을 위임받은 시·도유재산(토지, 건물 등) 매각수입 중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
	221-03 공유재산매각수 입금	1.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매각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 2.공유재산과 타인재산의 교환 차액수입
	222 부담금	
	222-01 자치단체간부담금	1.자치단체간의 부담금 수입
	222-02 일반부담금	1.민간인·기타단체의 부담금 수입 2.개발이익환수금 3.기타특별회계의 · 주차장법제8조에 의한 주차장관리수탁자부담금 · 주차장법제19조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수입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관련 사업시행자의 비용 부담금 수입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예관특별법 제11조에 의한 부담금수입 4.교육비특별회계의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부담금수입
	223 과징금및과태료등	
	223-01 과징금	1.자동차운송사업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등 2.기타특별회계의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의한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중 ① 벽지노선 운행 결손보전 해당액 ② 교통안전시설 확충해당액 3.자동차관리법 제87조에 의한 범칙금 수입
	223-02 이행강제금	1.건축법등 법령위반 이행강제금
	223-03 변상금	1.법규에서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하거나 변상명령에 의하여 변상되는 수입
	223-04 위약금	1.약정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수입
	223-05 과태료	1.주민등록법 등 법령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2.기타특별회계의 주차장법 제30조에 의한 과태료 및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에 의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3.기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장	관	항	과목구분	설 정
			목	
			224 기타수입	
			224-01 불용품매각대	1.불용품의 매각수입
			224-02 체납처분수입	1.체납처분으로 생기는 수입
			224-03 보상금수납금	1.법령및조례의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서 수납하는 보상금 2.콘돔 및 피임약 위탁판매 수수료 수입
			224-04 시·도비반환금 수입	1.시·도에서 전년도에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보조금 중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
			224-05 기부금	1.용도지정 기부금 수입
			224-06 그외수입	1.기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2.기타특별회계의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수입 3.지방자치단체 금고출연 등 협력사업비 4.지역상생발전기금(재정지원계정) 지원금
			225 지난연도수입	
			225-01 지난연도수입	1.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사용료 등 세외수입

자료: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자치부, 2016)

4. 지방세외수입의 기능과 특성

1) 지방세외수입의 특성

- 지방세외수입을 통해 지방정부는 특정 공공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며, 수익자부담 원칙이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과하고 별다른 저항 없이 재원을 획득 할 수 있음(진희원 외, 2015)
 - 기본적으로 정부의 경제적 거래 활동을 통해 수입이 창출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과 경영활동이 중심을 이루는 세입항목임
 - 주로 특정인의 공물사용 및 역무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서 조세와 달리 국민저항이 비교적 적은 편임
 - 세외수입은 조세재정 외에 법률과 조례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며, 합리적 요금부과, 세원발굴 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계속적인 확대 및 개발이 용이하고 공익 차원에서 적정규제를 도모하기에 유용한 정책수단임(임성일, 2014)
- 지방세외수입은 일반재원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특정 목적재원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음
 - 수입원의 근거에 따라 사용되는 곳이 특정되어 있는 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고, 이들의 재원은 특정세출에만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됨
 - 행정상 의무이행의 확보 또는 의무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행정

제재금도 포함되어 반드시 재정수입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

- 세외수입은 재정수입 확보라는 국고목적 외에도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을 통해 초과수요를 억제하는 수요조절 기능이 발휘되기도 함(곽채기, 2014)
- 세외수입 중에는 법적 공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부여하는 과태료나 과징금과 같이 조세와 같은 방식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음
- 일반적으로 세외수입은 다음 5가지 특징을 가짐(행정자치부, 2009; 김재진, 2013; 김대영, 2014; 이상훈, 2015; 서정섭 외, 2015; 최원구, 2016)
 - 세원 개발의 용이성
 - 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임
 -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지속적인 확대 및 개발이 용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잠재수입원임
 -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과 비교하여 볼 때, 세목의 신설과 폐지, 과목 변경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함
 - 세입의 다양성과 복잡성
 - 세외수입은 종류가 많고 형태가 다양하며, 복잡한 수입구조를 지니고 있음
 - 회계의 귀속,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 등 다양한 세외수입의 정의에 따라 세분화되어, 세목의 수가 많고 다양함
 - 세외수입 징수 근거는 법률, 대통령령, 부령, 조례 및 사법상의 계약 등으로 다양함
 - 용도의 제한성
 - 세외수입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 발굴되는 수입이나, 수입원의 법적 근거에 따라 사용되는 곳이 특정되기도 함
 - 하천사용료, 공원사용료, 상·하수도 사용료 등 특정 세외수입이 특정세출예산과 직결되는 경우도 있음
 - 세원의 다양성
 - 현금으로 징수(금고납부)하는 것 외에 수입증지나 금권으로 징수하는 등 징수형태가 다양하며, 정부의 수수료 현실화 노력에 따라 고액권종화 되고 있음
 - 수익자 부담
 - 주로 특정인의 공물사용 및 역무제공 등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이므로 조세와는 달리 국민저항이 비교적 적음
-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지방세외수입 예산과목의 세목은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추가·제외되어 왔음

2) 지방세외수입의 장점과 한계

(1) 지방세외수입의 장점⁵⁾

- 세외수입은 민간시장의 가격처럼 작동하므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함
 - 공공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과 혜택을 이용자와 정부에게 보다 가시적으로 부각시킴
 - 공공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수요에 대한 규율(discipline)을 유도함
 - 기업형, 고객지향 관리방식의 강화를 통해 서비스 공급자의 재정 및 서비스 성과 향상을 도모하고, 시장 활성화와 경쟁을 진작시킴
- 세외수입은 공공서비스로부터 편익을 얻은 수혜자들이 그 공급비용을 지불하므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재원조달 방법임
 - 공공서비스의 직접이용자에게 서비스 사용대가를 부담시킴으로써 일반납세자의 재정부담을 완화함
- 세외수입은 일반조세의 대안으로 재정수입 확충의 잠재력을 갖고 있음
 - 수익자 부담원칙 또는 원인자 부담원칙의 특성이 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세수 증대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자주재원임

(2) 지방세외수입의 한계

-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하여 조세저항이 적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과태료나 과징금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제기되는 등 조세저항이 다소 강해지고 있음
 - 과징금 및 강제이행금,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등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와 같은 부과형 세외수입의 경우 납부저항이 심하며 체납 발생률 또한 매우 높은 실정임
- 지방세외수입은 부담규모와 가계의 소득수준을 연계할 수 없어 역진성을 띠 가능성 높음(이상훈, 2015)
 - 세외수입의 역진성의 문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 부담을 해야 한다는 ‘응능원칙’에 위배되고, 수직적 형평성을 달성할 수 없는 원인이 됨
- 지방세외수입의 복잡한 수입구조와 방대하고 산재된 법령에 따른 징수근거는 재정정보의 수합 및 분석을 어렵게 함
 - 세외수입의 부과·징수근거는 200여개의 개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산재되어 있음(이상훈, 2015)

5) 주만수(2015)를 참조함

-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권한을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각 개별법에 의해 각 실과소별로 부과·징수권을 가지고 있어 부과세목의 종류가 다양함
- 부과 근거 및 징수절차, 체납처분 절차의 기준이 모호하고, 특히 가산금 및 증가산금의 적용기준이 불분명한 특징이 있음
- 세외수입 구조의 취약성 문제가 지적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비중이 낮은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비중은 높아 수입구조가 불건전함
 -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회성에 그치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외수입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안정성을 야기함
 - 사용료·수수료의 낮은 원가보상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있음
 - 공공서비스의 사용량이 적은 시민들이 사용량이 많은 시민들을 보조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남
 - 재정부담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해당서비스에 대한 과잉수요가 발생하여 자원의 낭비 및 효율적 배분이 발생함
 - 지방자치단체 계층별 징수력 격차가 크게 나타나며, 세외수입의 징수율 편차를 확대한다는 문제를 야기함
- 세외수입 관리체계의 비효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음
 -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관리체계 미비,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무관심, 순환보직으로 인한 담당자의 잦은 교체, 지방자치단체 중간관리자의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지방세외수입 징수 실적이 매우 저조함(김대영, 2014)
 - 지방세외수입은 부과·징수 근거법령을 담당하는 소관부서별로 분산되고, 총괄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업무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에서 맡고 있어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책임성을 갖고 세외수입을 관리할 수 있는 운영체계가 없어 업무효율성이 떨어짐
 - 지방세외수입 담당자는 세외수입 항목별로 부과와 징수, 체납 징수까지 함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될 뿐만 아니라 업무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어려움
 - 지방세외수입 담당자는 신규자가 많으며 업무기간 1년 미만 담당자 비율도 절반 이상에 달하는 경우가 많음
 - 업무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지방세에 비해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이 결여됨
 -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외수입 업무는 기피대상 보직에 해당되며 지방세외

수입 이외의 업무를 겸함

- 정보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체납 정보 파악이 어렵고, 부실 과세 및 세원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정보가 통합되어 있지 않아 체납자에 대한 현황 파악이 어려움
 -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운영기준의 세입예산 분류체계(코드 부여)와 지방세외수입 세목을 총괄·관리하는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상의 분류체계가 상이함
 - 특히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세목별 분류코드가 체계적이지 않고, 미부과 세목이 많으며, 세목이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담당자의 오분류 가능성이 높음
 - 지방세외수입의 업무시스템이 분산되어 운용되고 있어, 시스템 간의 이동 시에 통계자료나 정보가 수기로 관리되는 경우가 발생함(이상훈, 2015)

제2절 지방세의수입 현황

1. 지방자치단체 세입구조와 추이

- 지방자치단체 세입구조는 크게 자체수입으로서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그 외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지방채로 구분됨
- 우리나라 지방 세입구조를 살펴보면, 2016 회계연도 결산총계 기준, 지방세입 총액은 325조 5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함
 - 전체 지방세입에서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76조 5,135억 원(23.5%), 세외수입이 28조 6,897억 원(8.8%)으로 자체재원비율은 약 32.4%임(2015년 세입결산 98조 4,743억 원 대비 6.8% 증가)
 - 이전수입의 경우, 지방교부세 등이 49조 3,955억 원(15.2%), 보조금이 92조 1,539억 원(28.4%)이며, 지방교부세의 경우 지난 5년 간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6년 전체 지방세입 총액 중 73조 3,484억 원(22.6%)으로 전년 대비 24.1% 증가함
 - 반면, 지방채 수입은 2016년 전체 세입 중 4조 9,538억 원(1.5%)으로 전년 대비 22.8% 감소함

<표 2-6> 연도별 세입항목별 결산(총계) 규모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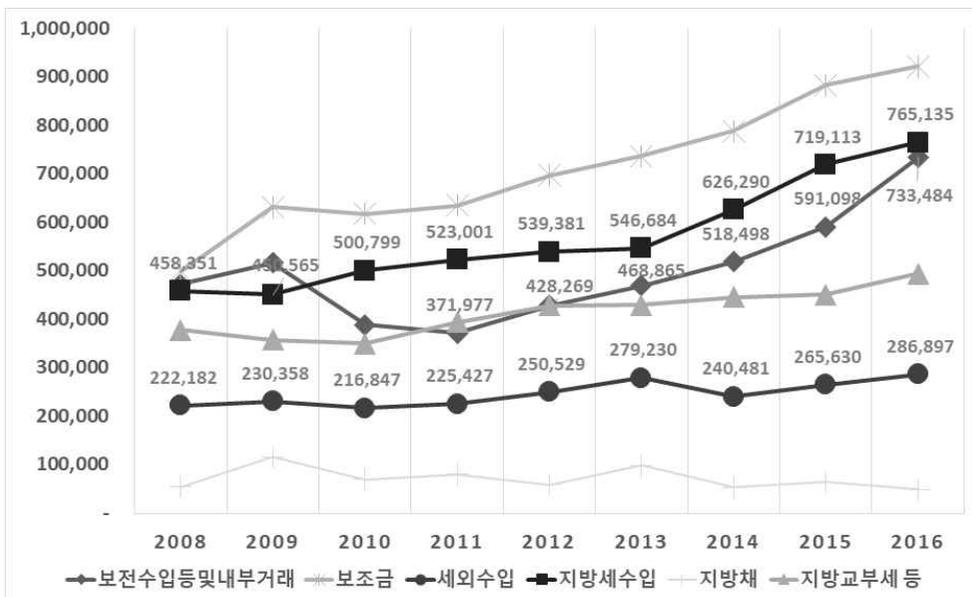
(단위: 억 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합계	2,086,090	2,302,635	2,143,579	2,229,727	2,402,534	2,559,837	2,672,602	2,972,994	3,250,549
지방세수입	458,351	450,565	500,799	523,001	539,381	546,684	626,290	719,113	765,135
세외수입	222,182	230,358	216,847	225,427	250,529	279,230	240,481	265,630	286,897
지방교부세등	378,291	357,639	349,741	393,603	428,886	429,942	445,872	450,579	493,955
보조금	499,261	631,520	617,618	634,949	696,500	736,247	787,927	882,419	921,539
지방채	55,170	116,405	70,055	80,770	58,969	98,869	53,534	64,156	49,538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472,835	516,147	388,519	371,977	428,269	468,865	518,498	591,098	733,484

주: 2008-2013년 잉여금, 전입금, 이월금, 융자금, 예수금 및 예탁금 해당 세목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항목으로 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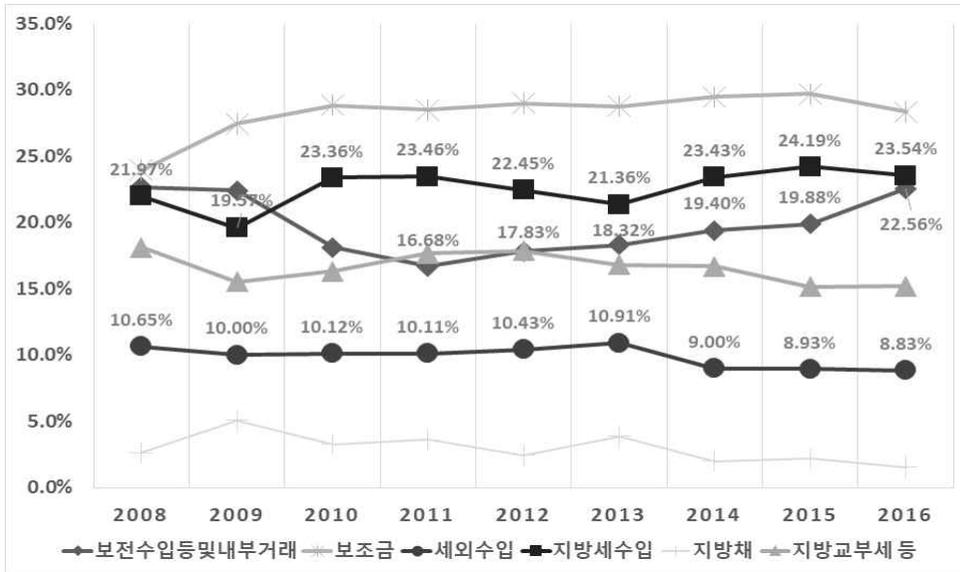
자료: 2008-2016지방재정연감(행정안전부, 각 년도) 재구성

- 지방세외수입은 2013년 세외수입 항목 개편 이후, 기존 임시적 세외수입에 포함되어 있던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등이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항목으로 제외되면서 2014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2013년 대비 13.9% 감소)
 - 이후 2016년 말까지 최근 3년 간 지방세외수입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한편,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세입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대비 41.5%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세외수입 증가율(19.3%)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상승함
- <그림 2-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방 세입총액 중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로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원으로서 세외수입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까지 30%를 상회하였으나 이후 3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16년 다소 증가한 27.3%의 비중을 보임
- 따라서 자주재원 비중의 지속적 증가는 세외수입 보다는 지방세수입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볼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규모 증가에 있어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의 역할도 증대되고 있음



<그림 2-3> 세입항목별 결산(총계) 규모 증가 추이

자료: 2008-2016 지방재정연감(행정안전부, 각 년도) 재구성(단위: 억 원)



<그림 2-4> 세입항목별 결산(총계) 비중 증가 추이

자료: 2008-2016 지방재정연감(행정안전부, 각 년도) 재구성(단위: %)

- 회계구분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세입규모의 4.8%(12조 7,150억 원)로 타 세입항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함
- 한편, 특별회계 세입 중 세외수입 비중은 공기업 특별회계 33.3%(9조 3,970억 원), 기타특별회계 19.8%(6조 5,777억 원)로 현재 지방세외수입은 특별회계에서의 세입이 핵심적인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음

<표 2-7> 2016년 회계별 세입항목별 결산(총계) 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합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합계	3,250,549	100.0	2,636,312	100.0	332,196	100.0	282,041	100.0
지방세수입	765,135	23.5	765,135	29.0	0	0.0	0	0.0
세외수입	286,897	8.8	127,150	4.8	65,777	19.8	93,970	33.3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113,793	3.5	112,555	4.3	1,225	0.4	13	0.0
지방교부세	380,162	11.7	378,837	14.4	1,292	0.4	34	0.0
보조금	921,539	28.4	830,601	31.5	74,434	22.4	16,504	5.9
지방채	49,538	1.5	10,844	0.4	13,478	4.1	25,217	8.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33,484	22.6	411,190	15.6	175,991	53.0	146,303	51.9

자료: 2016지방재정연감(행정안전부, 2017)

-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재정자립도 제고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안중석, 1997),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분담 수단의 하나인 기본적인 지방세입원으로서 적절한 역할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곽채기, 2014)
- 이에 행정자치부는 핵심 개혁과제인 '지방재정 혁신'에 있어서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행정자치부, 2015),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및 진단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는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항목과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항목 중 세외수입과 관련된 항목은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과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등 2개 항목이 있음
- 새 정부 역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및 지방세외수입 업무시스템 통합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2. 지방세외수입 징수현황

- 결산(총계) 기준 2016년 총 지방세외수입 규모는 28조 6,897억 원으로 2008년부터 연도별 다소 증감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표 2-8> 연도별 수입별 세외수입 결산(총계) 규모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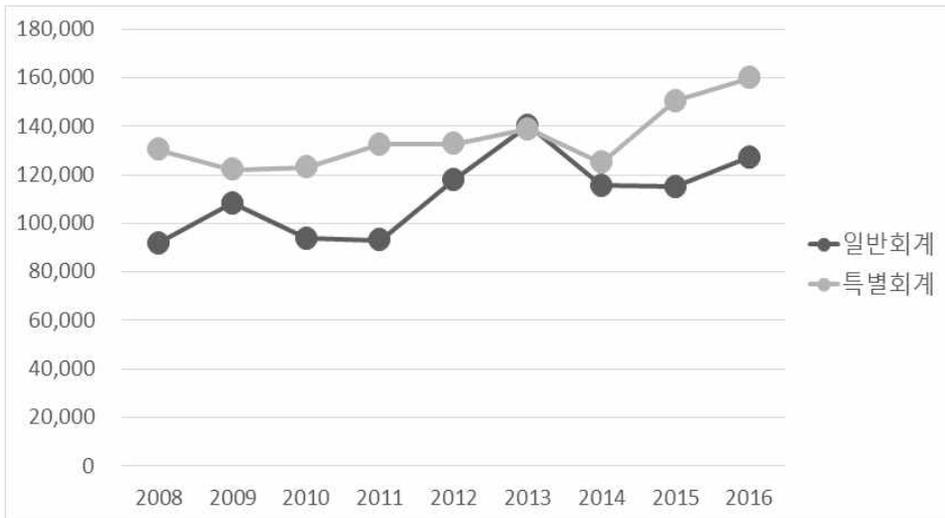
	2008	2010	2012	2014	2016
총계	22,218,169	21,684,738	25,052,867	24,048,133	28,689,713
일반회계	9,180,750	9,368,244	11,789,220	11,542,037	12,715,013
경상적세외수입	4,841,358	4,158,958	4,811,975	4,907,061	5,717,413
사업수입	397,988	496,163	726,944	636,132	583,934
사용료수입	835,773	951,055	1,057,446	1,265,668	1,402,090
수수료수입	883,312	914,470	952,365	1,060,270	1,387,979
이자수입	1,477,813	609,409	760,993	626,426	609,029
재산임대수입	211,126	232,351	250,320	262,570	363,441
징수교부금수입	1,035,346	955,510	1,063,906	1,055,996	1,370,939
임시적세외수입	4,339,392	5,209,285	6,977,245	6,634,976	6,997,600
과징금및과태료등	239,358	243,910	271,567	344,538	400,094
기타수입	1,244,002	2,436,695	3,264,191	4,087,865	3,257,724
부담금	1,442,152	1,149,639	1,289,840	1,150,303	1,216,684

		2008	2010	2012	2014	2016
	재산매각수입	1,032,157	1,038,576	1,820,455	741,361	1,636,537
	지난년도수입	381,723	340,465	331,192	310,909	486,560
기타특별회계		5,452,959	5,491,822	5,534,744	5,168,406	6,577,666
공기업특별회계		7,584,460	6,824,672	7,728,903	7,337,690	9,397,034

주: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약금 및 예수금, 융자금 원금은 2014년 이후 제외되었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는 2015년 잡수입(기타수입)으로부터 분리됨에 따라 현재 항목 기준으로 계상함

자료: 2008~2016 지방재정연감(행정안전부, 각 년도)

- 회계별 세외수입 규모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특별회계의 세외수입 규모가 일반회계 규모보다 크게 나타나 일반회계에서의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음



<그림 2-5> 회계별 세외수입 결산(총계) 규모 추이

자료: 2008-2016 지방재정연감(행정안전부, 각 년도) 재구성(단위: 억 원)

- 전년 대비 세외수입 규모와 비교하여 볼 때, 2016년 지방세외수입 규모는 28조 6,896억 원으로, 2015년 대비 일반회계가 10.4%, 특별회계가 6.1% 증가하였으며, 각 수입원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보임
 - 2016년 일반회계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5조 7,174억 원(전체 세외수입 중 19.9%), 임시적 세외수입은 6조 9,976억 원(24.4%)으로 각각 전년대비 7.7%, 12.8% 증가하였음
 - 2016년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9조 3,970억 원(전체 세외수입 중 32.8%)으로 전년대비 7.3%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6조 5,777억 원(22.9%)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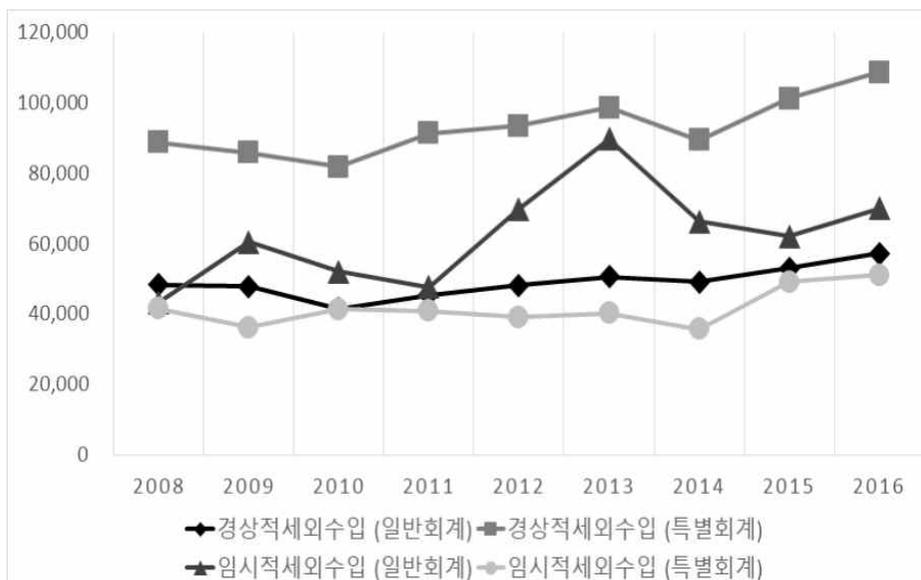
〈표 2-9〉 회계별 수입별 세외수입 규모 추이(결산총계)

(단위: 천 원, %)

	2014	2015		2016	
		금액	전년대비 증감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율
일반회계	11,542,036,521	11,512,758,274	-0.3%	12,715,012,722	10.4%
경상적세외수입	4,907,060,873	5,309,252,484	8.2%	5,717,412,835	7.7%
임시적세외수입	6,634,975,648	6,203,505,790	-6.5%	6,997,599,887	12.8%
특별회계	12,506,096,354	15,050,254,797	20.3%	15,974,700,072	6.1%
기타특별회계	5,168,405,911	6,296,013,436	21.8%	6,577,665,578	4.5%
경상적세외수입	2,776,657,720	3,001,397,908	8.1%	3,133,483,650	4.4%
임시적세외수입	2,391,748,191	3,294,615,528	37.7%	3,444,181,928	4.5%
공기업특별회계	7,337,690,443	8,754,241,361	19.3%	9,397,034,494	7.3%
경상적세외수입	6,158,032,150	7,127,762,866	15.7%	7,739,664,792	8.6%
임시적세외수입	1,179,658,293	1,626,478,495	37.9%	1,657,369,702	1.9%
총계	24,048,132,877	26,563,013,074	10.5%	28,689,712,795	8.0%

자료: 2016, 2017 지방재정연감(행정자치부, 2016; 2017) 재구성

- 지방세외수입 규모는 2014년 지방세외수입의 범위가 재구성됨에 따라 다소 감소한 이후, 다른 지방세입원에 비해서는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림 2-6〉 회계별 수입별 세외수입 규모 추이(결산총계)

자료: 2008-2016 지방재정연감(행정안전부, 각 년도) 재구성(단위: 억 원)

<표 2-10> 항목별 세외수입 규모 추이(결산 총계)

(단위: 백만 원, %)

회계구분	2014	2015		2016	
		금액	전년대비 증감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율
총계	24,048,133	26,563,013	10.5%	28,689,713	8.0%
일반회계	11,542,037	11,512,758	-0.3%	12,715,013	10.4%
경상적수입	4,907,061	5,309,252	8.2%	5,717,413	7.7%
사업수입	636,132	574,784	-9.6%	583,934	1.6%
사용료수입	1,265,668	1,306,503	3.2%	1,402,090	7.3%
수수료수입	1,060,270	1,189,101	12.2%	1,387,979	16.7%
이자수입	626,426	635,397	1.4%	609,029	-4.1%
재산임대수입	262,570	273,469	4.2%	363,441	32.9%
징수교부금수입	1,055,996	1,329,998	25.9%	1,370,939	3.1%
임시적수입	6,634,976	6,203,506	-6.5%	6,997,600	12.8%
과징금및과태료등	344,538	360,708	4.7%	400,094	10.9%
기타수입	4,087,865	2,731,403	-33.2%	3,257,724	19.3%
부담금	1,150,303	1,346,024	17.0%	1,216,684	-9.6%
재산매각수입	741,361	1,411,346	90.4%	1,636,537	16.0%
지난연도수입	310,909	354,025	13.9%	486,560	37.4%
특별회계	12,506,096	15,050,255	20.3%	15,974,700	6.1%
기타특별회계	5,168,406	6,296,013	21.8%	6,577,666	4.5%
경상적수입	2,776,658	3,001,398	8.1%	3,133,484	4.4%
사업수입	1,217,106	1,560,411	28.2%	1,514,495	-2.9%
사용료수입	1,012,803	992,288	-2.0%	991,182	-0.1%
수수료수입	22,881	20,407	-10.8%	18,231	-10.7%
이자수입	143,144	136,863	-4.4%	139,038	1.6%
재산임대수입	370,509	279,240	-24.6%	451,202	61.6%
징수교부금수입	10,214	12,188	19.3%	19,337	58.6%
임시적수입	2,391,748	3,294,616	37.7%	3,444,182	4.5%
과징금및과태료등	257,527	278,940	8.3%	314,647	12.8%
기타수입	319,835	669,359	109.3%	436,626	-34.8%
부담금	1,277,522	1,520,139	19.0%	1,843,338	21.3%
재산매각수입	255,851	503,497	96.8%	433,444	-13.9%
지난연도수입	281,013	322,680	14.8%	416,126	29.0%
공기업특별회계	7,337,690	8,754,241	19.3%	9,397,034	7.3%
경상적수입	6,158,032	7,127,763	15.7%	7,739,665	8.6%
사업수입	896,430	1,472,003	64.2%	1,589,580	8.0%
사용료수입	4,859,607	5,196,694	6.9%	5,751,691	10.7%
수수료수입	32,109	31,565	-1.7%	37,296	18.2%
이자수입	350,987	404,068	15.1%	336,266	-16.8%
재산임대수입	15,141	16,904	11.6%	22,630	33.9%
징수교부금수입	3,758	6,530	73.8%	2,202	-66.3%
임시적수입	1,179,658	1,626,478	37.9%	1,657,370	1.9%
과징금및과태료등	593	3,423	477.7%	4,252	24.2%
기타수입	126,493	152,283	20.4%	190,779	25.3%
부담금	485,790	731,943	50.7%	779,206	6.5%
재산매각수입	326,181	509,683	56.3%	496,739	-2.5%
지난연도수입	240,602	229,146	-4.8%	186,394	-18.7%

자료: 2014-2016 지방재정연감 재구성(행정안전부, 각 년도)

- 2016년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34조 6,515억 원, 징수액 28조 6,896억 원으로 82.8%의 징수율을 보임
 - 이 중 광역자치단체가 징수결정액 12조 5,764억 원, 징수액 11조 4,103억 원으로 기초자치단체(78.3%)보다 높은 90.7%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음
 - 각 지방자치단체 계층별 세외수입 징수율은 특별·광역시 94.5%, 도 80.8%, 시 83.2%, 군 89.0%, 구 58.6%를 보이고 있음

<표 2-11> 2016년 단체별 세외수입 징수현황

(단위: 백만 원)

	최종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징수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E=B-C-D)	징수율	
						(C/A)	(C/B)
전국계	26,830,748	34,651,505	28,689,573	424,177	5,537,756	106.9	82.8
광역계	11,050,514	12,576,361	11,410,302	24,369	1,141,690	103.3	90.7
특별광역시	8,662,901	9,127,304	8,624,997	19,847	482,460	99.6	94.5
도	2,387,613	3,449,057	2,785,304	4,523	659,230	116.7	80.8
기초계	15,780,234	22,075,144	17,279,271	399,808	4,396,065	109.5	78.3
시	10,850,846	14,135,427	11,763,039	216,043	2,156,345	108.4	83.2
군	2,165,649	2,838,389	2,526,372	33,549	278,468	116.7	89.0
구	2,763,739	5,101,329	2,989,860	150,216	1,961,252	108.2	58.6

자료: 2017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행정안전부, 2017)

3. 지역별 지방세외수입 규모

- 2017년 예산 총계 기준 지역별 세입구조를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경기도가 50조 5,498억 원(19.5%)으로 가장 높은 지방세입 총액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시가 42조 3,203억 원(16.3%)을 나타내 서울·경기권의 세입이 전체 세입규모의 35.8%를 차지함

<표 2-12> 2017년도 시도별 세입재원별 규모(총계예산)

(단위: 억 원, %)

시도별	총규모	자체수입		중앙정부 지원		광역단체 지원		지방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교부세	보조금	시·도보조금	조정교부금		
계	2,594,324	721,838	237,469	337,384	772,428	109,227	86,486	22,757	306,734
서울	423,203	179,278	53,383	2,597	69,825	22,873	24,146	12,216	58,884
	100	42.4	12.6	0.6	16.5	5.4	5.7	2.9	13.9

시도별	총규모	자체수입		중앙정부 지원		광역단체 지원		지방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교부세	보조금	시·도보조금	조정교부금		
부산	148,219	45,789	12,516	8,583	47,065	7,732	5,818	4,444	16,272
	100	30.9	8.4	5.8	31.8	5.2	3.9	3.0	11.0
대구	105,154	30,083	7,872	9,755	32,018	5,978	4,134	2,170	13,144
	100	28.6	7.5	9.3	30.4	5.7	3.9	2.1	12.5
인천	125,595	40,479	18,398	7,924	33,660	6,683	4,862	38	13,551
	100	32.2	14.6	6.3	26.8	5.3	3.9	0.0	10.8
광주	59,016	15,280	4,448	6,988	20,348	3,982	2,407	400	5,164
	100	25.9	7.5	11.8	34.5	6.7	4.1	0.7	8.8
대전	56,605	16,357	4,798	5,910	17,663	4,023	2,613	180	5,062
	100	28.9	8.5	10.4	31.2	7.1	4.6	0.3	8.9
울산	54,996	19,012	6,094	3,150	13,102	2,909	2,755	-	7,974
	100	34.6	11.1	5.7		5.3	5.0	-	14.5
세종	12,420	5,560	1,116	905	2,407	-	-	-	2,432
	100	44.8	9.0	7.3	19.4	-	-	-	19.6
경기	505,498	177,471	61,283	24,305	128,195	13,432	19,678	640	80,494
	100	35.1	12.1	4.8	25.4	2.7	3.9	0.1	15.9
강원	123,861	16,693	8,772	37,968	44,359	4,115	1,410	229	10,316
	100	13.5	7.1	30.7	35.8	3.3	1.1	0.2	8.3
충북	100,310	18,617	6,026	23,469	34,864	4,166	2,048	138	10,982
	100	18.6	6.0	23.4	34.8	4.2	2.0	0.1	10.9
충남	137,115	29,446	8,932	29,355	48,624	5,941	3,313	305	11,199
	100	21.5	6.5	21.4	35.5	4.3	2.4	0.2	8.2
전북	134,496	17,859	8,052	34,571	56,359	5,793	1,977	370	9,515
	100	13.3	6.0	25.7	41.9	4.3	1.5	0.3	7.1
전남	163,750	19,763	7,938	45,087	68,825	5,479	1,751	-	14,907
	100	12.1	4.8	27.5	42.0	3.3	1.1	-	9.1
경북	209,598	33,189	11,725	51,613	76,161	8,412	3,413	1,265	23,819
	100	15.8	5.6	24.6	36.3	4.0	1.6	0.6	11.4
경남	189,994	44,872	13,212	33,354	66,297	7,710	6,160	362	18,027
	100	23.6	7.0	17.6	34.9	4.1	3.2	0.2	9.5
제주	44,493	12,090	2,904	11,849	12,657	-	-	-	4,992
	100	27.2	6.5	26.6	28.4	-	-	-	11.2

자료: 2017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개요(행정안전부, 2017)

- 자체수입 측면에서는 경기도가 가장 높은 규모(23조 8,754억 원)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수입구조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시가 55.0%로 경기도(47.2%)보다 높게 나타남

- 자체수입 중 지방세 규모는 서울시 17조 9,278억 원(세입예산 내 비중 42.4%) 경기도 17조 7,471억 원(35.1%), 부산광역시 4조 5,789억 원(30.9%) 순으로 나타남
-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 규모는 경기도 6조 1,283억 원(세입예산 내 비중 12.1%), 서울시 5조 3,383억 원(12.6%), 인천광역시 1조 8,398억 원(14.6%) 순으로 크게 나타남
- 자체수입 규모가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 6,676억 원(세입예산 내 비중 53.8%), 제주특별자치도 1조 4,994억 원(33.7%), 광주광역시 1조 9,728억 원(33.4%) 순으로, 세외수입 규모 역시 각각 1,116억 원(16.7%), 2,904억 원(19.4%), 4,448억 원(22.5%)으로 낮게 나타남
- 도의 경우, 제주도를 제외하고 강원도가 2조 5,465억 원(세입예산 내 비중 20.6%)으로 자체수입 규모가 가장 낮게 나타나며, 총 세입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라남도가 16.9%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이 중 세외수입 규모는 충청북도가 6,026억 원(24.5%)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는 한편,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충청남도가 23.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지방세외수입 규모 측면에서 단체별로 살펴볼 때, 시·도의 경우에는 특별·광역시예,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에 집중되어 있어 세외수입에 지역편중이 존재함(행정자치부, 2017)
 - 특별·광역시와 시의 세외수입이 전체 세외수입 중 73.2%를 차지함

〈표 2-13〉 단체별 세외수입 구성 비교(총계예산)

(단위: 억 원, %)

구분	계	시·도					시·군·구			
		소 계	특별·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소 계	시	군	구
총계(비중)	237,469 (100)	100,473 (42.3)	79,418 (33.4)	1,116 (0.5)	17,035 (7.2)	2,904 (1.2)	136,997 (57.7)	93,343 (39.3)	17,284 (7.3)	26,370 (11.1)

자료: 2017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개요(행정안전부, 2017)

- 한편, 연도별 평균 주민 1인당 세외수입액은 2014년 16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39.6% 감소하여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이후 다시 증가추세에 있음
 - 군의 주민 1인당 세외수입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24만 9천원으로 2014

년 19만 1천원에서 30.4% 증가하며 가장 높은 규모를 보였으며, 시의 경우에도 2014년 대비 29.5% 증가함

- 반면, 특별·광역시는 2017년 11만 9천 원으로 2014년 대비 8.5% 감소하였으며, 도·특별자치도 역시 12.2% 감소하였음
- 따라서 2014년 이후 주민 1인당 세외수입액의 증가는 시·군·구의 세외수입액 증가가 견인하여 왔다고 볼 수 있음

<표 2-14> 연도별 단체별 주민1인당 세외수입액 추이

(단위: 천 원)

연도별	전국 평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2008년	233	102	59	198	324	111
2009년	278	144	69	231	409	118
2010년	273	127	59	227	425	125
2011년	243	119	70	182	371	107
2012년	248	120	80	180	380	111
2013년	280	158	86	190	410	113
2014년	169	130	41	105	191	81
2015년	154	95	39	107	229	81
2016년	171	123	40	113	237	92
2017년	178	119	36	136	249	96

주: 평균은 예산순계, 자치단체별은 예산총계 기준임

자료: 2008-2016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행정안전부, 각 년도) 재구성

- 주민 1인당 세외수입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35만 6천 원)이며, 울산광역시(27만 5천 원), 인천광역시(25만 6천 원) 순으로 나타남
 - 주민 1인당 평균 세외수입 규모가 가장 높은 강원도의 경우, 군이 19만 3천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 다음으로 큰 규모를 나타내는 울산광역시의 경우 9만 9천원으로 울산광역시의 주민 1인당 세외수입이 소속 자치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 역시 특별·광역시의 주민1인당 세외수입이 소속 자치구에 비해 높음
- 단체별 주민 1인당 세외수입액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시·도의 경우는 특별·광역시 가, 시·군·구의 경우에는 군의 주민 1인당 세외수입액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표 2-15> 2017년도 단체별 주민1인당 세외수입액 시도별 현황

(단위: 천 원)

시도별	평 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평 균	178	119	36	136	249	96
서울	238	148			117	131
부산	102	54			108	65
대구	112	63			255	66
인천	256	199				78
광주	101	60				65
대전	130	81			261	60
울산	275	99				76
세종	130	130	32	139	233	
경기	134		56	191	466	
강원	356		31	123	193	
충북	166		39	138	200	
충남	161		24	111	387	
전북	174		35	138	214	
전남	189		23	147	239	
경북	185		34	106	231	
경남	166		184			
제주	184					

주: 평균은 예산순계, 자치단체별은 예산총계 기준임
 자료: 2017 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개요(행정안전부, 2017)

- 세입 중 자체수입 비중이 가장 높은 서울시의 경우, 경상적 세외수입이 3조 8,614억 원 (72.3%)으로 임시적 수입 2조 9,220억 원(27.7%)보다 높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상적 수입 중 사용료 수입이 1조 6,743억 원(43.4%)으로 전체 세외수입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2위인 사업수입(9,466억 원, 24.5%)과 약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임
 - 임시적 수입 중에서는 재산매각수입이 6,297억 원으로 42.6%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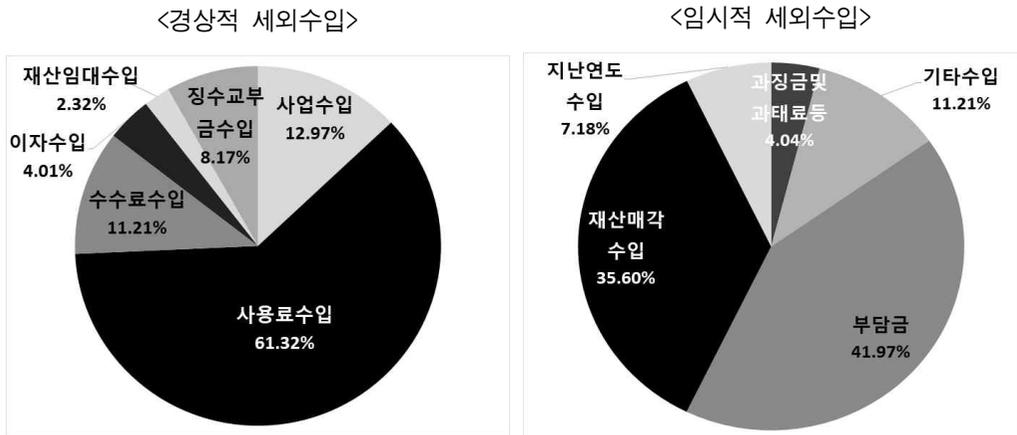
<표 2-16> 2017년도 서울특별시 세외수입 구조(총계 당초예산)

(단위: 백만 원)

수입별	예산
총합계	5,338,296
경상적수입	3,861,404
사업수입	946,603
사용료수입	1,674,388
수수료수입	292,251
이자수입	64,210
재산임대수입	482,391
징수교부금수입	401,561
임시적수입	1,476,892
과징금및과태료등	167,424
기타수입	225,546
부담금	287,536
재산매각수입	629,732
지년연도수입	166,654

자료: 2017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개요(행정안전부,2017) 재구성

- 한편, 자체수입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3조 2,063억 원(52.3%)으로 세외수입 중 경상적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시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이 중 사용료 수입이 1조 9,661억 원으로 경상적 수입의 대부분인 6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업수입(12.97%), 수수료 수입(11.21%)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임



<그림 2-7> 2017년도 경기도 세외수입 규모(당초 총계예산)

자료: 2017 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개요(행정안전부, 2017) 재구성(단위: 억 원)

- 임시적 수입 중에서는 부담금이 1조 2,265억 원(42.0%)로 비중이 가장 높으며, 재산매각수입은 1조 403억 원(35.6%)으로, 부담금과 재산매각수입이 임시적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표 2-17> 2017년도 경기도 세외수입 구조(총계 당초예산)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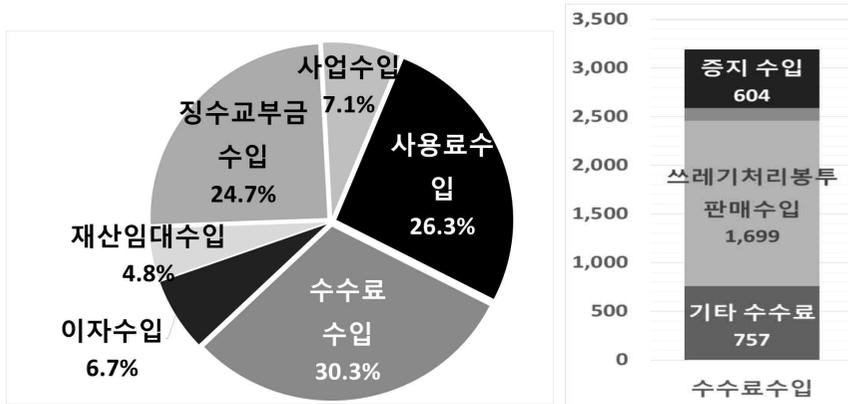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총합계	2,194,269	1,458,479	2,475,527
경상적세외수입	1,051,975	208,852	1,945,428
사업수입	74,275	166,249	175,260
기타사업수입	14,415	13,298	54,708
매각사업수입	1,000	51,145	57,101
배당금수입	300	0	0
분담금수입	5,233	0	58,464
사업장생산수입	29,957	10,330	4,986
의료사업수입	17,260	0	0
주차요금수입	6,109	79,849	0
청산금수입	0	11,626	0
통행료수입	0	0	0
사용료수입	276,610	12,485	1,677,046
기타사용료	182,248	12,415	21,664
도로사용료	58,746	0	0
도축장사용료	0	0	0
상수도사용료	0	0	989,543
시장사용료	4,120	0	0
입장료수입	19,382	70	0
하수도사용료	0	0	665,839
하천사용료	12,114	0	0
수수료수입	319,255	1,330	38,803
기타수수료	75,715	644	38,803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169,921	0	0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13,185	0	0
증지수입	60,434	686	
이자수입	70,932	17,235	40,257
공공예금이자수입	65,144	16,663	37,695
공사공단등융자금회수이자수입	0	0	0
기타이자수입	5,785	486	2,562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3	86	0
시·군·구융자금회수이자수입	0	0	0
통화금융기관융자금회수이자수입	0	0	0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재산임대수입	재산임대수입	50,780	10,797	12,924
	공유재산임대료	46,977	10,797	12,860
	국유재산임대료	3,803	0	64
징수교부금수입	260,124	756	1,138	
입시적세의 수입		1,142,294	1,249,626	530,099
과징금및과태료등		57,688	59,853	548
	과징금	9,758	7,069	2
	과태료	31,349	52,510	226
	변상금	3,044	74	317
	위약금	71	141	3
	이행강제금	13,466	60	0
기타수입		157,272	125,153	45,004
	그외수입	156,320	122,693	44,804
	기부금	117	1,848	0
	보상금수납금	179	0	0
	불용품매각대	654	612	139
	시·도비반환금수입	0	0	0
	체납처분수입	3	0	61
부담금		427,367	595,423	203,723
	일반부담금	157,684	472,934	201,358
	자치단체간부담금	269,683	122,489	2,364
재산매각수입		390,933	386,606	262,778
	공유재산매각수입금	390,866	386,606	262,778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0	0	0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66	0	0
지난연도수입		109,035	82,591	18,046
총합계		2,194,269	1,458,479	2,475,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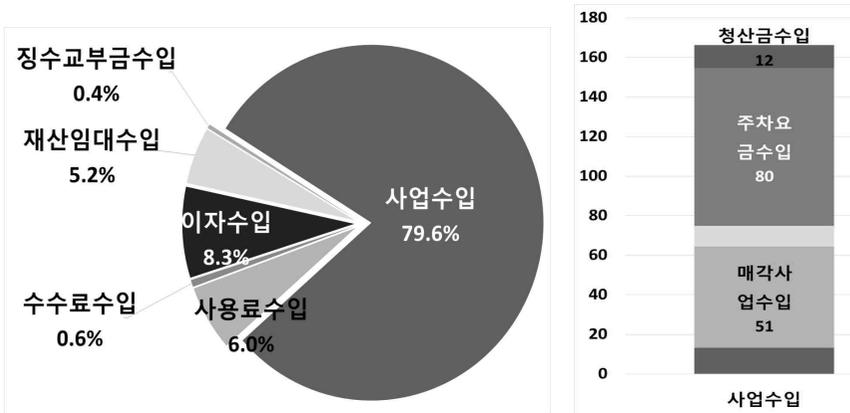
자료: 2017 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개요(행정안전부, 2017) 재구성

- 경기도의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용료 수입(61.3%)의 경우 공기업 특별회계의 상하수도 사용료가 전체 사용료 수입의 84.2%를 차지함 (상수도 사용료 9,895억 원(50.3%), 하수도 사용료 6,658억 원(33.9%))
 - 일반회계의 경우, 쓰레기처리비용 판매수입 및 증지수입을 바탕으로 한 수수료 수입과 도로사용료를 포함한 사용료 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 중 56.8%를 차지함
 - 기타특별회계는 주차요금수입 및 매각사업수입을 중심으로 한 사업수입이 79.6%로 경상적 세외수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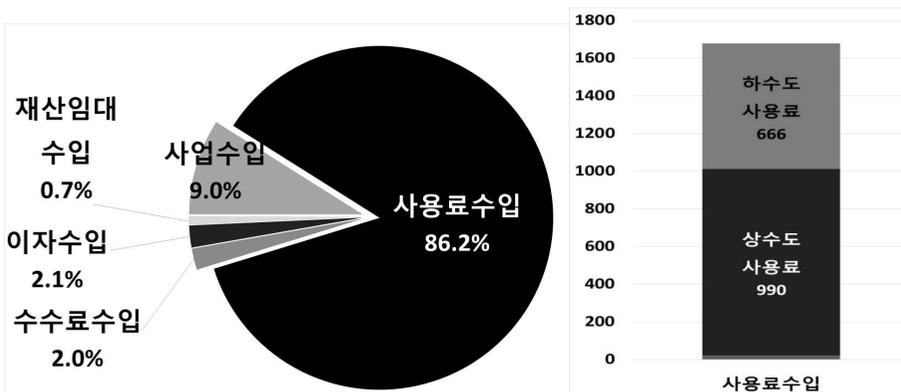
<일반회계 경상적 세외수입 구조>



<기타특별회계 경상적 세외수입 구조>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적 세외수입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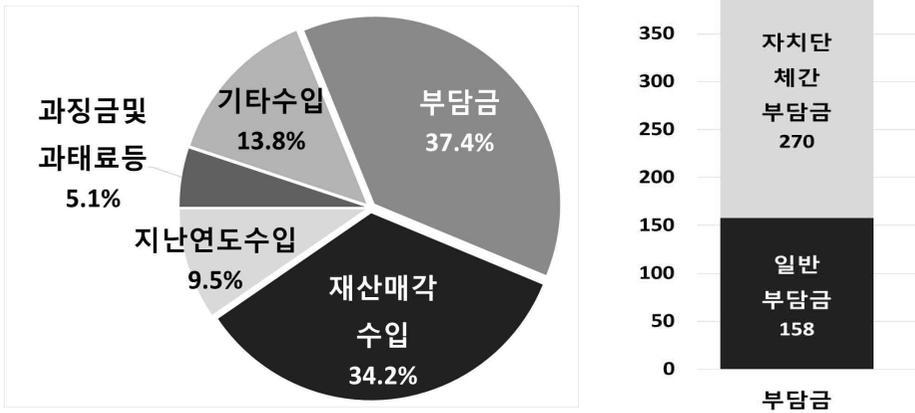


<그림 2-8> 2017년도 경기도 경상적 세외수입 규모(당초 총계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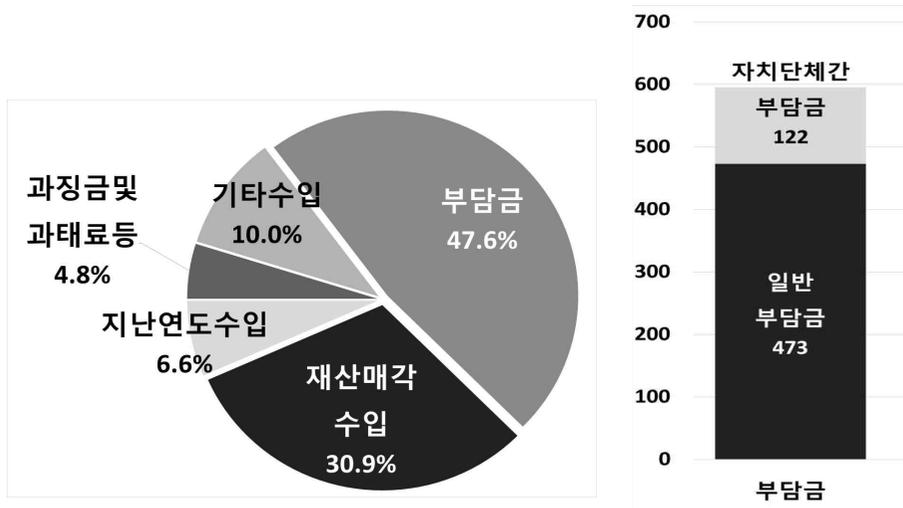
자료: 2017 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개요(행정안전부, 2017) 재구성(단위: 억 원)

- 경기도의 임시적 수입은 회계별 재산매각수입과 부담금 수입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재산매각수입은 일반회계가 37.6%, 기타특별회계가 25.3%, 공기업특별회계가 37.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담금의 경우에는 공기업특별회계의 부담금이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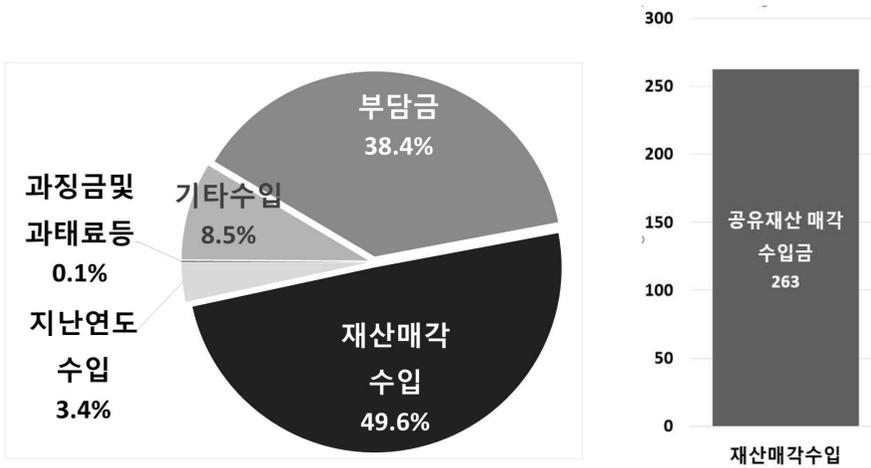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구조>



<기타특별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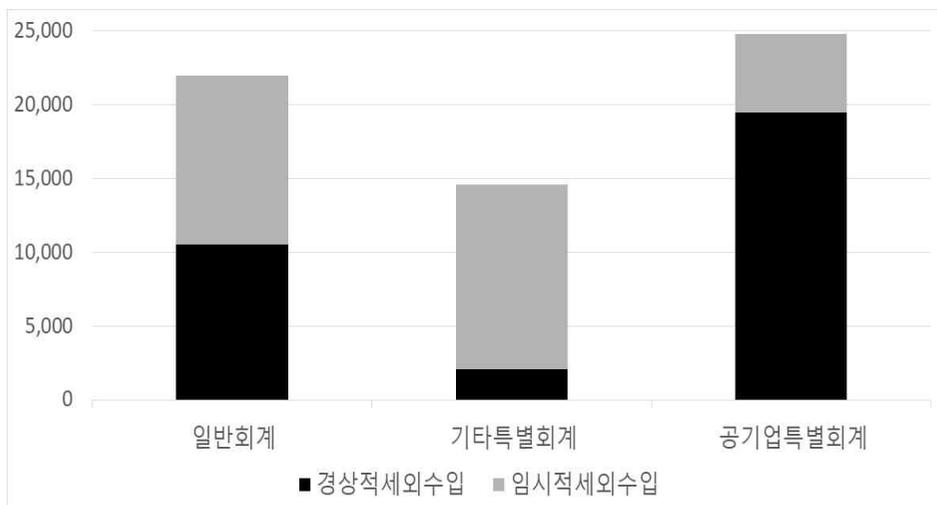
〈공기업 특별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구조〉



〈그림 2-9〉 2017년도 경기도 임시적 세외수입 규모(당초 총계예산)

자료: 2017 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개요(행정안전부, 2017) 재구성(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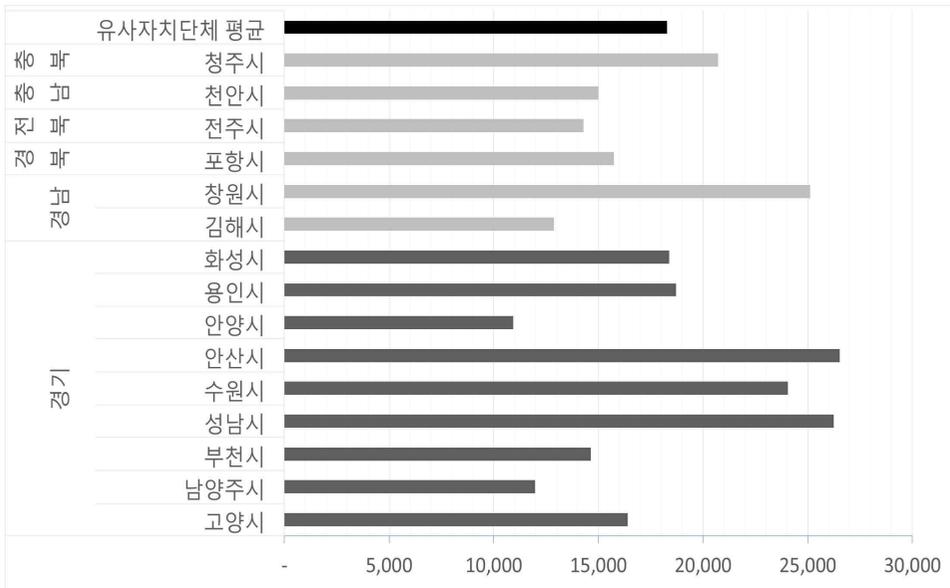
- 경기도 세외수입 구조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규모가 2조 4,755억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일반회계 세입규모가 2조 1,943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1조 4,755억 원을 보이고 있음



〈그림 2-10〉 2017년도 경기도 회계구분별 세외수입 규모(당초 총계예산)

자료: 2017 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개요(행정안전부, 2017) 재구성(단위: 억 원)

- 대도시형에 속하는 15개 기초자치단체⁶⁾ 중 경기도 내 지방세입규모 상위 3위에 해당하는 지역은 안산시(2조 6,523억 원), 성남시(2조 6,251억 원), 수원시(2조 4,054억 원)로 유사자치단체의 세입평균(1조 8,286억 원)의 약 1.5배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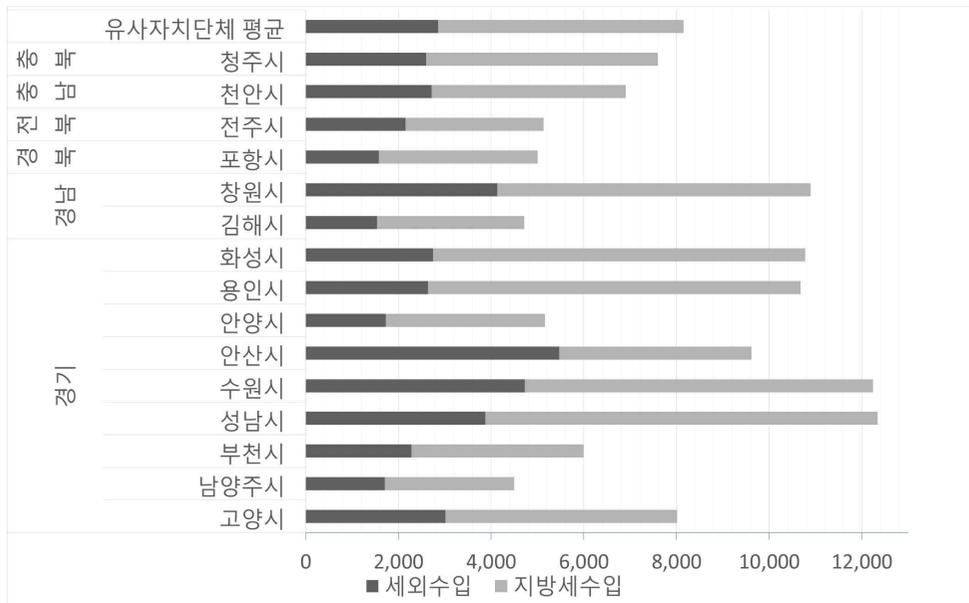


<그림 2-11> 2017년도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규모(대도시형)

자료: 2017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개요(행정안전부, 2017) 재구성(단위: 억 원)

-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중심으로 한 자체수입 규모 측면에서는 성남시가 1조 2,338억 원(47.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원시가 1조2,240억 원(50.9%)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전체 예산 중 자체수입 비중 측면에서는 화성시 58.6%, 용인시 57.0% 순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나고 있으며, 수원시가 50.9%로 3위를 차지하고 있음
 - 세외수입 규모는 안산시가 5,469억 원(20.6%)으로 가장 크며, 수원시 4,723억 원(19.6%), 성남시 3,879억 원(14.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지방세 규모의 경우 성남시가 8,462억 원(32.2%)으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용인시가 8,043억 원(43.0%), 화성시가 8,033억 원(43.7%)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높은 세입규모를 보이고 있음

6) 2017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행정자치부, 2017)에 명시된 총 15개 대도시형(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에 속한 자치단체는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고양시, 남양주시, 용인시, 화성시 등 9개 지역임



<그림 2-12> 2017년도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 구성(대도시형)

자료: 2017 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개요(행정안전부, 2017) 재구성(단위: 억 원)

- 2017년 예산 총계 기준, 경기도 내 대도시형 기초자치단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수원시가,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안산시가 유사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큰 규모를 나타냄



<그림 2-13> 2017년도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 구조(대도시형)

자료: 2017 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개요(행정안전부, 2017) 재구성(단위: 억 원)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 선행연구들에서 지적한 세외수입 운영에 있어 문제점은 체납비율 상승, 임시적 세외수입 상승, 비현실적인 요율 체계, 그리고 인력 및 조직에서의 비효율성 등으로 요약됨
 - 체납비율의 상승
 - 체납자에 대한 징수수단이 미약하고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납세의무자와 부과·징수권자 모두에게 혼동이 있음
 - 지방세외수입 중 일반부담금,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지난년도 수입 등 일부항목의 체납비율이 현저히 높음
 - 세외수입구조의 불건전성
 - 임시적 세외수입의 비중이 높아 안정적 재원의 확보가 어려움
 - 경상적 세외수입 규모의 지역별 편차가 심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음
 - 비현실적인 요율체계
 - 유사수수료 요율이 기관별로 불균형하게 나타나며 합리적 원가산출이 어려움
 - 낮은 원가 보상율로 인해 세외수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비효율적 관리체계
 - 세외수입 징수절차는 개별법상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또는 국세징수법을 준용 하도록 되어 있어 2중 규정이 적용됨
 - 세외수입 관련 통합 정보관리시스템이 미비
 -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및 인센티브 제도 미흡
 - 경영수익 사업상 문제점으로 경영수익 미약, 경영사업 추진의 타당성 분석 결여, 경영수지평가 미흡, 전문성 부족을 지적함
-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크게 세외수입 규모 확충과 체계적인 운영관리방안의 마련으로 나누어볼 수 있음
 - 세외수입의 규모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는 세입과목의 개편, 새로운 수입원의 발굴, 기존 요율의 효율화, 세외수입 관련 법체계의 정비가 제시됨
 - 주로 법령의 단일 법제화, 낮은 수수료 원가 현실화, 무료 수수료의 유료화 등이 논의됨
 - 체계적인 운영관리 방안으로는 세외수입 징수율의 제고를 위한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수익사업의 효율화, 통합적 관리감독 체계 구축 등이 제시됨
 - 주로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분석과 성과평가의 강화, 담당공무원 교육훈련과

인센티브제도 도입, 총괄부서의 설치와 통합정보시스템 마련 등이 논의됨

- 김태복 외(2002)는 지방세외수입의 문제점으로 낮은 부과징수율, 비현실적인 사용료 및 수수료, 체납액의 과다, 경영체제가 취약한 경영수익사업 운영 등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세외수입 관리·감독 총괄부서를 설치하고 부서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업무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대응하고, 전산시스템의 통합운동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체납징수에 있어 지방세를 연계하여 관리·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집중적인 재산추적을 시행하여 채권확보율을 제고하는 등 체납액징수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검토와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
 - 개별적인 보상관계가 강하고 수익성이 담보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객관적 원가산정에 기초하여 사용료·수수료율을 현실화하고 공공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생산성 제고가 시급함
 - 예금이자수익 증대와 자금관리의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을 담보하여 여유자금 관리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합자금관리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
- 강종규 외(2007)는 제도상, 구조상, 관리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각각의 개선사항을 제시함
 - 제도적 개선
 - 담당자 경영마인드와 전문성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경영수익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수입으로부터 성과를 창출해야 함
 - 부서 간 협조체제 하에 통합적 관리감독이 가능한 총괄부서와 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세외수입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성을 가지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유인조치와 강력한 행정제재수단을 강구하여 강도 높은 체납액 정리 대책을 추진해야 함
 - 구조적 개선
 - 사용자부담금적 성격을 띤 세외수입에 의한 재원을 조달하고, 새로운 세외수입원 발굴하여야 함
 - 징수·부과업무의 전산화 및 부과절차 합리화를 통해 탈루 세외수입을 방지하고 이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 관련 단일법제화가 요구됨

- 관리운영상개선
 - 원가분석 및 효율 재산정을 정례화하여 수수료·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무료행정 서비스에 대해 유료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부담금·과태료 운영방식을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선해야 함
 - 체납과태료·과징금 등을 엄격하게 부과·징수해야 함
 - 이자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방안이 요구됨
- 경영수익사업의 경우 사업분석 및 성과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함으로써 세외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주운현(2008)은 세외수입과 관련된 기존 연구결과들이 부분적, 탐색적인 연구에 그치고 있고 정부의 현실화 정책도 목표에는 미달하는 것으로 보고, 향후 정책대안을 제시함
 - 유희·사장·은닉된 국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재산수입을 확충하고, 무단점유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임대화를 추진하는 등 재산임대수입 증대가 필요함
 - 공공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부분적으로 사회화하고 부동산가격의 안정과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부담금 및 부담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함
 - 사적부문의 원가분석방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하여 비교하고 부과기준(원가보상율)에 대한 지표를 마련하여, 사용료·수수료의 합리적인 효율책정을 위한 원가분석 방법 및 부과기준을 개선해야함
 - 인허가 유형의 공공서비스에 대해 편익의 존재여부를 결정하고, 유형화를 통해 무료 수수료를 유료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 이상훈 외(2015)는 지방세외수입 관련 재정, 업무, 관리시스템 및 부과현황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 세외수입 관리상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세수 신장성이 축소되고 있음을 확인함
 - 사용료·수수료율의 현실화, 신규수입원의 발굴, 징수율 제고를 통하여 재정규모를 확충해야 함
 - 신규수입원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발굴되어야 하며, 발굴된 신규수입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수반되어야 함
 -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납부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며, 가산금제도의 확대, 자진납부 시 감경제도 도입, 부담금의 부과 시점 조정과 납부기한 축소가 필요함
 - 세외수입에 대한 통합관리, 세외수입의 전반적인 분류체계 및 구분방식의 개선 등을 통해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 지방세외수입 총괄조직 신설 및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지방세외수입업무 시스템의 통합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지방세외수입 업무의 효율성 제고해야 함
 - 지방세외수입의 목이나 세목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포함 또는 제외되어야 할 세외수입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연구에서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의 실효성 있는 지표의 마련, 변화된 세외수입 환경에 따른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등이 대두되고 있음

<표 2-18> 세외수입 확충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구분	저자	주요 내용
법제의 정비	정지선 외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외수입징수통합법의 체계를 통칙(총칙), 납부의무 성립과 소멸 및 확장, 징수절차, 세외수입과 기타채권과의 관계, 이의신청 등 및 보칙의 순서로 입법할 것을 제안
	여은정 최천규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외수입 징수절차의 일관성 확보와 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징수통합법 제정을 제안 - 징수통합법의 적용범위 결정시 세외수입징수대상은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분담금) 및 과태료에 한정 - 기본적인 제정방향은 지방세법 총칙 규정을 모델로 하고, 준용규정을 최대한 제한
수익사업의 효율화	배용수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공서비스 질 제고 등 공적인 목표달성에 초점 - 민간부문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 - 사업성을 정밀하게 분석할 것을 제안 - 경영의 전문화와 사용료 수준을 적정화
세입과목의 재정비와 신규수입원의 발굴	서희열 심충진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세, 소득세제의 확대 및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레저세를 중심으로 한 신규세원 개발안을 제안 - 지방소비세적 성격의 세목들을 확대 개편하고 재산과세를 거래중심에서 소유중심으로 변화시키는 방안 제시 - 폐광지역의 카지노, 소싸움, 관광·오락시설 및 원자력발전 등에 대한 과세방안 도입을 제안
	서정섭 김재영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외수입 예산과목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오부와 사례를 도출하고 유형화하여 개선방안 제시 - 중복·미사용 세입과목에 대한 정비방안 마련 - 유사·중복세입과목의 통폐합 - 통폐합이전의 부과자료 이관
	주만수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 시 효과적 도입 및 변화관리를 위한 원칙 제시 - 다양한 측면에서 도입방법 결정 및 법률적 검토 - 과세유형 결정 후 신규세외수입에 대한 설득논리 개발 - 해당 서비스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명확한 과세주체 설정 - 지방자치단체의 신규수입원 발굴에 대한 지속가능한 노력 요구 - 해당 주민의 세외수입원 증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

구분	저자	주요 내용
사용료·수수료 요율의 현실화	김종순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수료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 개선방안 제시 - 서비스 유형에 따라 사용료·수수료 수준을 차별화하여 현실화 - 사용료·수수료율을 현실화 및 무료 서비스의 유료화 - 표준요율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재량권 부여 - 개별법령에 규정된 사용료·수수료를 단일 법제화
	전상경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외수입의 가장 큰 문제점을 비현실적인 요율체계로 보고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원가에 대한 보전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 - 임시적 세외수입의 이월금을 지방채처럼 별도항목으로 분류 - 재산매각과 같은 세외수입 확충수단은 회피 - 수익자부담의 성격이 강한 서비스는 경제논리 적용
	이수범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에는 명확한 기준과 요율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성을 주장 - 지방세외수입의 기준과 대상을 명확히 정의 - 대가형 세외수입은 원가를 넘는 요율을 적용하여 질 좋은 상품 공급
	이세구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및 자치구의 주요 수수료 종목을 대상으로 원가분석을 실시하고 표준원가를 산정하여 수수료 요율 제시 - 활동기준원가 계산방식을 활용하여 수수료원가 재산정 - 행정서비스성격에 따라 원가보상을 적용 - 불합리한 무료 수수료의 유료화 - 적절한 사용료·수수료를 부과 - 세외수입 법령체계 단순화 또는 단일법제화
징수율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 정비	현대호 외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수율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체납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와 개별 법령의 정비를 제안 - 세외수입 징수절차에 있어 통합법 제정과 징수절차 등과 관련하여 각 개별법령의 구체화 - 체납자에 대한 자료제공근거 및 가산금제도 등에 대한 법령 마련을 통한 체납액 정리의 체계화 - 세외수입담당자가 부과와 체납처분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업무의 전문성 결여 행정실무상 결손을 꺼려하는 행정상의 문제 개선
	김재진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 시스템 정비를 통한 업무 비효율성 개선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강화를 제안 - 지방세외수입 통합관리시스템 및 관리·운영전담조직 마련 - 유관시스템과의 연계 및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정보공유 강화
	김대영 강민구 김민정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외수입 체납 징수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징수체계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 세외수입 징수·관리 조직 개편 - 세외수입 징수·관리 인력 운영의 효율화 - 체납 징수 관련 법령 체계 정비 -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설치 및 운영
	마정화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구체적인 법적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연구와 판례 검토 - 가산금제도 도입 - 지방세외수입징수금 채권의 배당순위 현실화 - 세외수입 법제 통일화

구분	저자	주요 내용
관련 조직 및 인력, 업무처리절차의 제도적 정비	이환범 권오규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증대와 효율 현실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수수료 수입의 증대와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수입원 개발 - 경상적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문직화 추진 - 신규 수입원 발굴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 - 공공요금의 현실화 - 세외수입업무의 통합시스템 구축 및 기존 지방세종합전산망시스템 연계·운영
	조임곤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분야에 산재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과 세외수입에 대한 인식전환의 중요성을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외수입 총괄부서 설치 -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보상책 마련 - 세외수입 독촉 및 체납처분에 대한 제도적 정비 - 무리한 세외수입의 확충 자제 - 세외수입 운영에 대한 관심 확대

제3장 수원시 세외수입 현황

제1절 수원시 세입환경 및 전망

1. 수원시의 입지적 특성

- 수원시는 경기도청 소재지로서 행정, 업무 중심지이며 편리한 접근성 등의 입지적 장점을 지님
- 수원화성 등과 같은 역사, 문화의 전통성을 보유하는 한편, 삼성전자를 주축으로 한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지방산업단지와 다양한 벤처기업들이 입지하고 있음
- 다만, 수도권 성장억제 정책으로 공업용지는 시 전체의 3.4%(4,063km²)에 그침⁷⁾
 - 수원시의 토지이용현황은 임야가 26,586km²(22%) 대지가 29,642km²(24%) 답과 전이 각각 14,072km²(12%), 8,982km²(7%), 그 외 기타가 41,767km²(35%)로 나타남
 - 수원시 용도지역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으로 수원시 전체의 56.5 %(68,393 km²)가 녹지지역이며, 그 다음은 주거지역으로 전체의 35.4 %(42,854 km²)를 차지하고 있음

2. 수원시 인구 현황

- 수원시 인구는 2016년 말 기준 1,194천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이며, 경기도 인구 12,716천 명의 9.4%를 차지하여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3-1> 수원시주민등록인구 현황(2016년12월)

(단위: 명, %)

구분	인구수			인구비중
	계	남	여	
전국	51,696,216	25,827,594	25,868,622	
경기도	12,716,780	6,395,453	6,321,327	100%
수원시	1,194,041	601,152	592,889	9.4%
성남시	974,580	483,374	491,206	7.7%
용인시	991,126	492,374	498,752	7.8%
화성시	640,890	330,923	309,967	5.0%
안산시	689,859	353,394	336,465	5.4%

자료 : KOSIS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 현황

7) KOSIS 지역통계>토지 및 기후>토지 지목별 현황, 주택건설>용도지역별 현황 참고

- 2016년 말 기준 수원시의 15세 이상 인구는 약 100만 명, 경제활동인구는 약 61만 명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2016년 다소 감소한 바 있으나, 2011년 이후 취업자가 대체로 계속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수원시의 고용 및 노동시장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고용률(15세 이상 기준)은 전국 60.4%, 경기도 평균인 61.5% 보다 낮은 58.0%를 보이고 있음

<표 3-2> 수원시 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천명, %, %p)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균증감률 ('11~' 16)
전국	15세이상인구	41,052	41,582	42,096	42,513	43,017	43,416	1.15
	경제활동인구	25,099	25,501	25,873	26,536	26,913	27,247	1.71
	취업자	24,244	24,681	25,066	25,599	25,936	26,235	1.64
	경제활동참가율	61.1	61.3	61.5	62.4	62.6	62.8	0.56
	고용률(15세 이상 기준)	59.1	59.4	59.5	60.2	60.3	60.4	0.44
경기도	15세이상인구	9,874	9,952	9,987	10,159	10,360	10,598	1.47
	경제활동인구	6,045	6,126	6,172	6,442	6,626	6,785	2.45
	취업자	5,833	5,923	5,988	6,226	6,364	6,518	2.35
	경제활동참가율	61.2	61.6	61.8	63.4	64.0	64.0	0.92
	고용률(15세 이상 기준)	59.1	59.5	60.0	61.3	61.4	61.5	0.81
수원시	15세이상인구	902.9	919.5	940.8	970.1	988.7	1,008.0	2.33
	경제활동인구	536.9	558.7	563.7	582.2	610.4	606.5	2.59
	취업자	511.8	535.4	541.9	566.8	588.5	584.6	2.84
	경제활동참가율	59.5	60.8	59.9	60.0	61.7	60.2	0.24
	고용률(15세 이상 기준)	56.7	58.3	57.6	58.4	59.5	58.0	0.46

자료 : KOSIS 경제활동인구 및 연령별 취업자 및 고용률

- 한편, 타자치단체에 비해서 고령화 수준이 양호한 편이나 저출산에 따른 유소년 인구 감소는 관련 소비시장 위축과 일자리 감소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고령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부양인구 증가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임
 - 2016년 말 65세 이상 인구는 수원시 전체 인구의 8.7%로 5년간 6.50%의 증가율을 나타내어 수원시 전체 인구의 증가율이 1.94%임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임
 - 한편, 수원시의 14세 이하 비중은 14.80%로 5년간 연평균 0.98%의 감소율을 보임

〈표 3-3〉 수원시 인구 추이

(단위: 명, %, %p)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균증감률
전체인구	1,088,489	1,120,258	1,148,157	1,174,228	1,184,624	1,194,041	1.9%
14세 이하	185,842	186,526	186,513	186,009	180,842	176,737	-0.98%
65세 이상	78,587	84,211	89,227	94,472	99,750	103,992	6.5%

주: '비중'은 각 연도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KOSIS → 국내통계 → 인구·가구 → 주민등록인구현황 →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

3. 수원시 산업구조

- 수원시의 GRDP는 2010년부터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 GRDP 증가율은 평균 1.10%로 전국 4.64%, 경기도 6.33%에 비해 낮게 나타남
 - 2013년 기준 1인당 GRDP는 약 2,212만 원으로 경기도 2,584만 원, 전국 2,848만 원 보다 낮은 추이를 보임

〈표 3-4〉 수원시 지역내총생산 추이

(단위: %, %p)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증감률
전국	GDP(십억 원)	1,265,146	1,330,888	1,377,041	1,430,255	1,484,542	1,558,592	4.64
	1인당생산액(만 원)	2,561	2,674	2,754	2,848	2,944	3,089	4.05
경기도	GRDP(십억 원)	266,562	276,155	288,147	313,671	329,449	350,962	6.33
	1인당생산액(만 원)	2,303	2,339	2,408	2,584	2,683	2,831	4.59
수원시	GRDP(십억 원)	23,732	24,651	24,433	25,034	-	-	1.10
	1인당생산액(만 원)	2,216	2,287	2,222	2,212	-	-	-0.06

자료: KOSIS 행정구역(시도)/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및 시군별 GRDP 규모(당해년 가격)

- 수원시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종사자수가 증가한 업종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업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종사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2015년 기준 사업체 수는 68,345개로 도소매업 24.70%, 숙박 및 음식점업 18.7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11.56%, 운수업 10.88% 순으로 나타남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과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환경복원사업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최근 경기를 반영하여 건설업 등은 감소세임

〈표 3-5〉 수원시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

(단위: 개소, %, %p)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 증감률
합 계	사업체수	57,844	61,426	63,865	65,259	67,143	68,345	3.63
	종업원수	342,752	362,790	344,579	382,066	394,141	401,197	3.41
농업, 임업 및 어업	사업체수	9	8	6	6	6	6	-6.67
	종업원수	253	238	260	247	215	191	-4.90
제조업	사업체수	3,072	3,224	3,426	3,342	3,506	3,704	4.11
	종업원수	58,957	47,698	48,092	41,590	38,775	39,858	-6.4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사업체수	14	14	14	14	14	12	-2.86
	종업원수	657	781	527	660	738	786	3.93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업체수	39	40	54	52	56	68	14.87
	종업원수	628	578	740	693	637	728	3.18
건설업	사업체수	1,732	1,919	1,946	2,012	2,167	2,254	6.03
	종업원수	15,826	15,154	14,254	15,575	20,337	20,213	5.54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수	13,703	14,529	15,472	15,736	16,340	16,884	4.64
	종업원수	44,563	46,667	49,189	50,362	52,972	55,721	5.01
운수업	사업체수	5,537	6,525	6,409	6,924	7,289	7,433	6.85
	종업원수	17,428	18,218	17,650	18,101	19,735	19,065	1.88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체수	11,376	11,782	12,070	12,327	12,584	12,780	2.47
	종업원수	34,218	36,360	37,947	40,522	42,730	44,871	6.2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체수	329	364	445	452	462	547	13.25
	종업원수	5,330	5,139	5,532	5,410	5,159	5,889	2.10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수	713	763	793	823	813	807	2.64
	종업원수	12,950	13,645	13,766	14,406	14,193	13,808	1.33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체수	3,042	3,158	3,235	3,237	3,323	3,365	2.12
	종업원수	10,440	10,803	11,180	10,805	11,051	11,535	2.1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체수	1,681	1,813	1,884	1,951	2,025	2,155	5.64
	종업원수	26,354	46,502	17,296	43,802	47,542	45,571	14.5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사업체수	886	1,010	1,111	1,105	1,166	1,188	6.82
	종업원수	20,869	25,439	27,163	34,617	31,490	31,344	10.04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사업체수	120	124	125	129	126	132	2.00
	종업원수	13,920	12,957	13,226	13,196	13,735	15,510	2.28
교육 서비스업	사업체수	3,724	3,813	3,946	4,006	4,042	4,057	1.79
	종업원수	33,887	33,387	35,186	36,420	37,091	36,675	1.6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체수	2,337	2,475	2,741	2,887	2,978	2,941	5.17
	종업원수	22,608	23,924	26,482	28,513	30,246	31,985	8.3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사업체수	2,218	2,237	2,277	2,246	2,230	2,109	-0.98
	종업원수	5,798	6,098	6,600	6,643	6,766	6,901	3.8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사업체수	7,312	7,628	7,911	8,010	8,016	7,903	1.62
	종업원수	18,066	19,202	19,489	20,504	20,729	20,546	2.75

자료: 수원시청 홈페이지 통계자료

- 도시환경과 관련 농업, 임업 및 어업은 하향산업이며, 전기·운수·통신·금융 산업은 다소 감소하고 있음
- 도소매·음식업 등 자영업자의 증가와 택지개발지구로 인해 서비스업 수요는 지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고색동에 지방산업단지 1, 2, 3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인근에 삼성전기 및 전자가 위치하여 전기, 전자업종에 특화되어 있음
 - 지방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체들이 집적되어 있으며, 전기·전자, 기계·금속, 정보통신 등의 벤처기업들이 형성되어 있음
 - 성균관대·아주대 등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기반 및 연구 잠재력을 내재하고 있음

제2절 수원시 세입구조와 현황

1. 수원시 지방세입 규모와 구성

- 최근 지방소득세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사 지방자체단체와 비교하여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준임
 - 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재정자립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2014년 도세 증가로 인한 조정교부금 증가와 국·도비 확보로 인해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2015년 이후 이전 수준으로 다소 회복됨

<표 3-6> 수원시 재정자립도 추이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재정 자립도	수원시	63.1	65.9	64.0	62.2	61.5	60.2	50.8	59.6	60.9	58.8
	유사단체	59.5	54.9	52.4	50.3	48.6	49.5	41.6	47.6	51.6	51.6
재정자주도		77.2	78.8	75.1	75.1	74.7	73.6	64.2	71.6	72.9	69.7

주: 세입과목 개편 전 산정기준

자료: KOSIS 지방재정자립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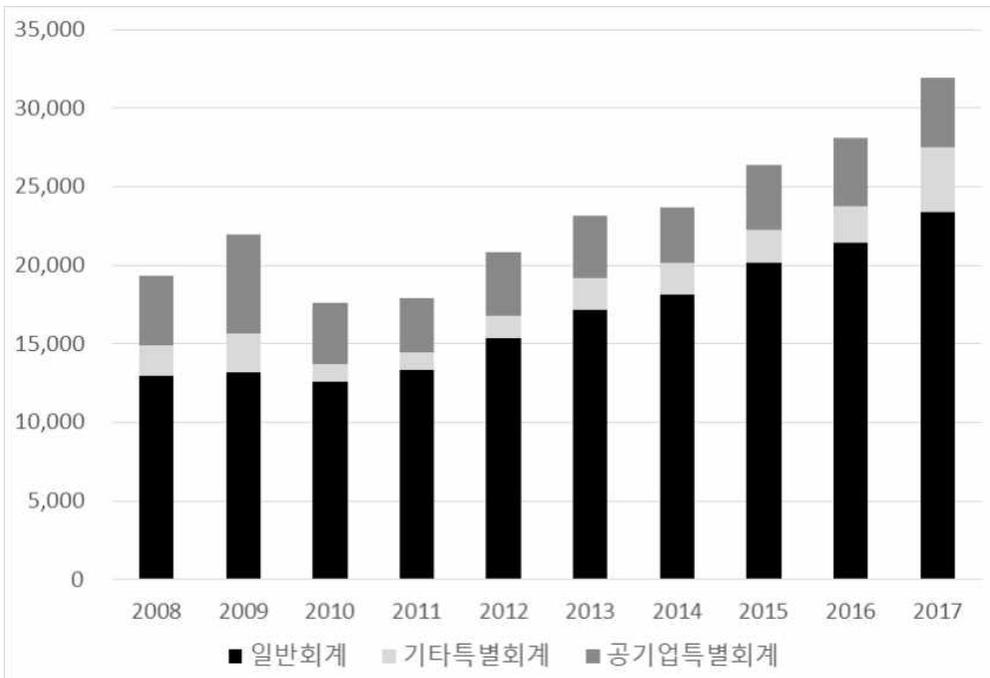
- 2017년 수원시 지방세입 규모를 살펴보면, 결산총계 기준 3조 1,924억 원으로 전년 2조 8,098억 원 대비 13.6%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지난 10년 간 증가세에 있으며, 2017년 기준 2조 3,369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73.2%를 차지하고 있음
 -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총 8,535억 원 중 기타특별회계가 4,144억 원(전체 세입 중 13.0%), 공기업특별회계는 4,412억 원(전체 세입 중 13.8%) 규모임

<표 3-7> 수원시 연도별 회계구분별 세입결산(총계) 규모

(단위: 억 원, %)

회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계	19,368	21,962	17,647	17,948	20,850	23,172	23,718	26,371	28,098	31,924
일반회계 (비중)	12,942 (66.8)	13,205 (68.2)	12,595 (65.0)	13,347 (68.9)	15,366 (79.3)	17,180 (88.7)	18,176 (93.8)	20,170 (104.1)	21,429 (110.6)	23,369 (73.2)
기타특별회계 (비중)	2,010 (10.4)	2,457 (12.7)	1,141 (5.9)	1,101 (5.7)	1,427 (7.4)	2,023 (10.4)	2,006 (10.4)	2,113 (10.9)	2,316 (12.0)	4,144 (13.0)
공기업특별회계 (비중)	4,416 (22.8)	6,300 (32.5)	3,911 (20.2)	3,500 (18.1)	4,056 (20.9)	3,969 (20.5)	3,536 (18.3)	4,088 (21.1)	4,353 (22.5)	4,412 (13.8)

자료: 2008-2016 지방재정연감(행정안전부, 각 년도) 재구성, 수원시 2017 세입가결산 내부자료(수원시,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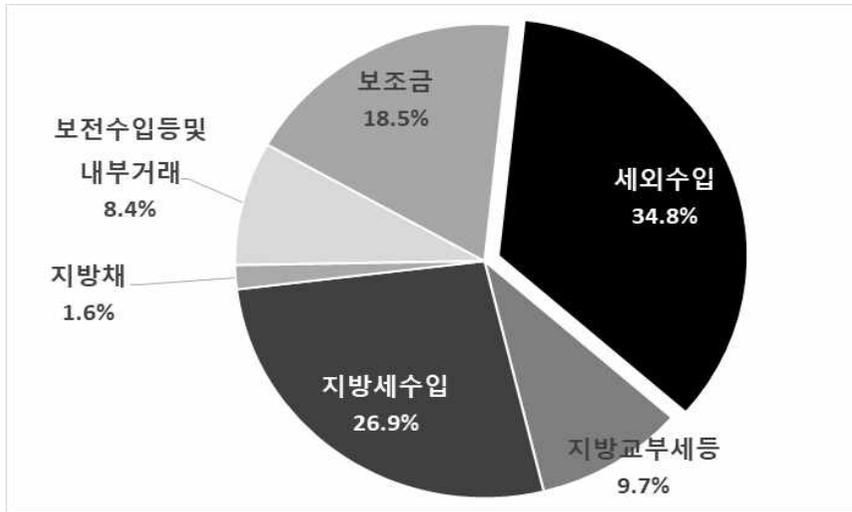


<그림 3-1> 2017년도 수원시 연도별 회계구분별 세입구조(결산총계)

자료: 2008~2016 지방재정연감(행정안전부, 각 년도) 재구성, 수원시 2017 세입가결산 내부자료(수원시, 2017)

- 2017년 수원시의 지방세입⁸⁾ 구조를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3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지방세(26.9%), 보조금(18.5%)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전체 세입 중 자체수입은 총 1조 9,703억 원(61.7%)으로 전년 대비 64.1% 증가하였으며, 이 중 지방세수입은 7,896억 원으로 총 자체수입 중 43.6%를 차지하며, 세외수입은 1조 1,110억 원으로 총 자체수입 중 56.4%로 나타남
 - 이전수입은 총 9,004억 원으로 이 중 조정교부금 2,864억 원(31.8%), 지방교부세 235억 원(2.6%), 보조금 5,906억 원(65.6%)로 보조금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은 전체 지방세입 총액 중 2,697억 원(8.4%)으로 전년 대비 64.7% 감소함
 - 지방채 수입은 2014년에 21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520억 원(1.6%)의 규모를 보이고 있음

8) 2017년 세입가결산 내부자료(수원시, 2017)



<그림 3-2> 2017년도 수원시 세입구조(결산총계)

자료: 수원시 2017 세입가결산 내부자료(수원시,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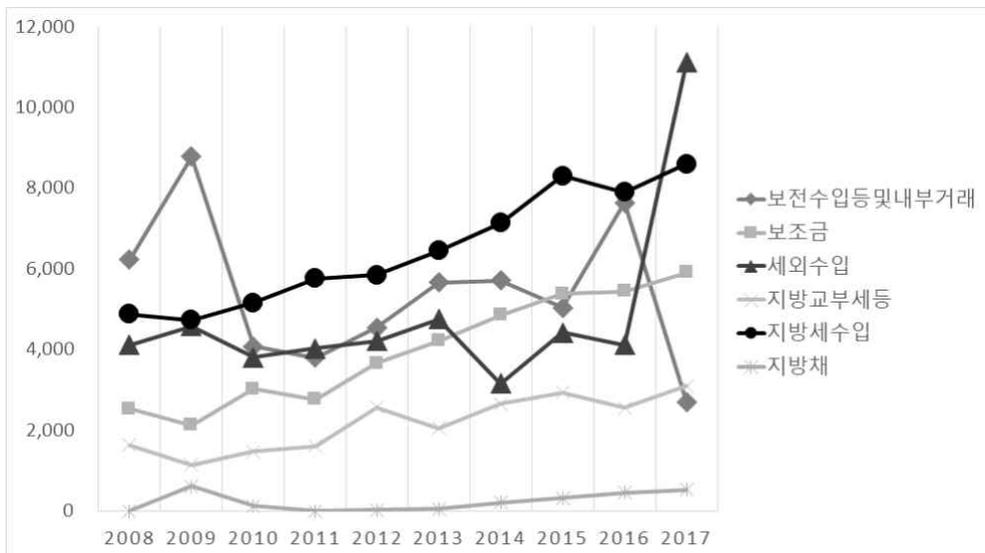
<표 3-8> 수원시 연도별 세입항목별 결산(총계) 규모

(단위: 억 원)

항목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합계	19,368	21,962	17,647	17,948	20,850	23,172	23,718	26,371	28,098	31,924
지방세수입	4,874	4,732	5,151	5,759	5,847	6,447	7,130	8,297	7,896	8,593
세외수입	10,333 (4,112)	13,364 (4,583)	7,877 (3,803)	7,816 (4,026)	8,754 (4,213)	10,419 (4,755)	3,156	4,416	4,114	11,110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1,401	1,035	1,372	1,515	2,351	1,903	2,498	2,790	2,398	2,864
지방교부세	230	101	106	96	211	149	155	138	154	235
보조금	2,529	2,122	3,021	2,761	3,665	4,210	4,855	5,373	5,443	5,906
지방채	-	-	120	-	-	-	210	317	450	52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0	608	-	0	23	44	-	-	-	-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6,221)	(8,780)	(4,074)	(3,791)	(4,541)	(5,664)	5,714	5,040	7,643	2,697

주: () 안의 수치는 법률 개정에 따라 2014년 이후 제외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항목을 별도 계상한 수치임
 자료: 2008-2016지방재정연감(행정안전부, 각 년도) 재구성, 수원시 2017세입가결산 내부자료(수원시, 2017)

- 수원시 지방세외수입은 2013년 세외수입 항목 개편 이후, 기존 임시적 세외수입에 포함 되어 있던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용자금 등이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항목으로 제외 되는 제도변화를 거치면서 2014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2013년도 대비 33.6% 감소)
- 그러나 이후 2015년부터 예년 규모를 회복하였으며, 2017년에는 전년대비 2.6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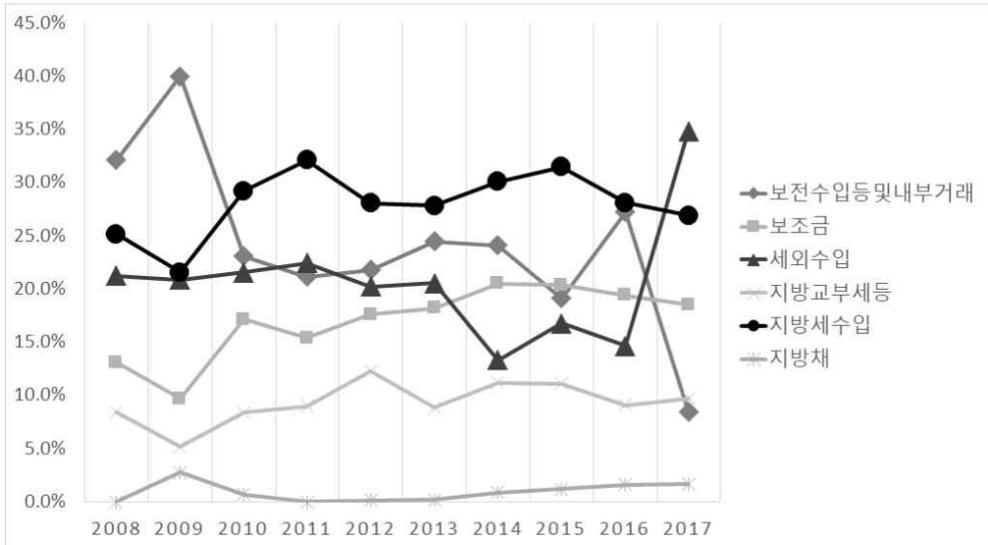


〈그림 3-3〉 수원시 세입항목별 결산(총계) 규모 증가추이

자료: 2008~2016 지방재정연감(행정안전부, 각 년도) 재구성, 수원시 2017 세입가결산 내부자료(수원시, 2017)

- 전체 지방세입 총액 중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20.5%에서 2014년 13.3%로 감소한 이후, 지방세수입 및 보조금과 비교하여 지속적으로 낮은 예산규모와 비중을 유지하여 옴
- 지방세입 총액에서 지방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6.7%, 2016년 14.6%로 등락을 거듭하다 2017년, 34.8%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26.9%)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최근 수원시 자체재원 증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반면, 지방세의 경우 전체 지방세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동 기간 감소세에 있어,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지속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됨
- 특히 일반회계 세입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산기준으로 2014년 6.0%, 2015년 6.4%, 2016년 7.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특별회계의 세외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안정적 세외수입 확보 방안이 필요함



<그림 3-4> 수원시 수입항목별 결산(총계) 비중 증가추이

자료: 2008~2016 지방재정연감(행정안전부, 각 년도) 재구성, 수원시 2017 세입가결산 내부자료(수원시, 2017)

<표 3-9> 수원시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817,570	100	2,016,968	100	2,142,930	100
지 방 세	713,026	39.23	829,750	41.14	789,569	36.85
세외수입	109,704	6.04	128,574	6.37	149,614	6.98
지방교부세	15,392	0.85	13,518	0.67	14,727	0.69
조정교부금	230,965	12.71	263,765	13.08	231,439	10.80
보 조 금	451,346	24.83	510,152	25.29	538,674	25.14
지 방 채	21,000	1.16	31,700	1.57	45,000	2.1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76,137	15.19	239,509	11.87	373,906	17.45

자료: 수원시 2017년 수원시 재정공시(결산) 공시문(수원시, 2017)

2. 수원시 세외수입 추이

- 회계구분에 따른 2016년 결산총계 기준, 수원시 세외수입 규모는, 일반회계 1,496억 원(36.4%), 기타특별회계 682억 원(16.6%), 공기업특별회계 1,935억 원(47.1%)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경상적 세외수입은 2,910억 원으로 전체 세외수입 중 70.7%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 중 특별회계가 2,004억 원(68.9%)을 차지하고 있어 일반회계의 비중(31.1%)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임
 -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204억 원으로 전체 세외수입 중 29.3%에 해당되며, 이 중 특별회계가 614억 원(51.0%), 일반회계가 590억 원(49.0%)에 해당하는 규모를 나타내고 있음

<표 3-10> 2016년 수원시 세외수입 구조(결산총계)

(단위: 천 원)

수입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계
총합계	149,613,990	68,210,246	193,560,322	411,384,558
경상적세외수입	90,640,080	22,816,551	177,564,301	291,020,932
사업수입	9,258,201	19,697,145	52,544,028	81,499,374
기타사업수입	1,284,901	37,907	3,086,587	4,409,395
매각사업수입	0	12,189,874	49,457,441	61,647,315
배당금수입	0	0	0	0
분담금수입	0	0	0	0
사업장생산수입	5,035,631	0	0	5,035,631
의료사업수입	0	0	0	0
주차요금수입	2,937,669	7,469,364	0	10,407,033
청산금수입	0	0	0	0
통행료수입	0	0	0	0
사용료수입	27,921,272	0	119,468,546	147,389,818
기타사용료	20,738,152	0	2,185,973	22,924,125
도로사용료	4,300,898	0	0	4,300,898
도축장사용료	0	0	0	0
상수도사용료	0	0	72,187,428	72,187,428
시장사용료	918,892	0	0	918,892
입장료수입	1,571,767	0	0	1,571,767
하수도사용료	0	0	45,095,145	45,095,145
하천사용료	391,563	0	0	391,563

수입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계
수수료수입	28,102,760	0	445,793	28,548,553
기타수수료	4,421,681	0	445,793	4,867,474
쓰레기처리비용투판매수입	17,010,499	0	0	17,010,499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1,570,791	0	0	1,570,791
증지수입	5,099,789	0	0	5,099,789
이자수입	4,804,589	1,475,021	2,487,212	8,766,822
공공예금이자수입	3,898,915	1,473,490	1,764,614	7,137,019
공사공단등용자금회수이자수입	0	0	0	0
기타이자수입	905,674	1,531	722,598	1,629,803
민간용자금회수이자수입	0	0	0	0
시·군·구용자금회수이자수입	0	0	0	0
통화금융기관용자금회수이자수입	0	0	0	0
재산임대수입	3,700,908	1,436,204	2,618,722	7,755,834
공유재산임대료	3,020,559	1,436,204	2,618,722	7,075,485
국유재산임대료	680,349	0	0	680,349
징수교부금수입	16,852,350	208,181	0	17,060,531
임시적세의수입	58,973,910	45,393,695	15,996,021	120,363,626
과징금및과태료등	8,830,640	8,130,120	6,457	16,967,217
과징금및이행강제금	2,733,497	159,950	0	2,893,447
과태료	5,686,055	7,970,170	0	13,656,225
변상금및위약금	411,088	0	6,457	417,545
기타수입	28,030,070	22,631,056	352,679	51,013,805
그외수입	27,625,796	22,610,272	290,016	50,526,084
기부금	117,000	0	0	117,000
보상금수납금	0	0	0	0
불용품매각대	287,274	20,784	62,663	370,721
시·도비환금수입	0	0	0	0
체납처분수입	0	0	0	0
부담금	8,921,067	7,229,355	13,738,744	29,889,166
일반부담금	8,921,067	7,229,355	13,738,744	29,889,166
자치단체간부담금	0	0	0	0
재산매각수입	3,667,002	0	0	3,667,002
공유재산매각수입금	3,667,002	0	0	3,667,002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0	0	0	0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0	0	0	0
지난연도수입	9,525,131	7,403,164	1,898,141	18,826,436

자료: 2016 지방재정연감(행정안전부, 2017)

〈표 3-11〉 2017년 수원시 세외수입 징수액(가결산)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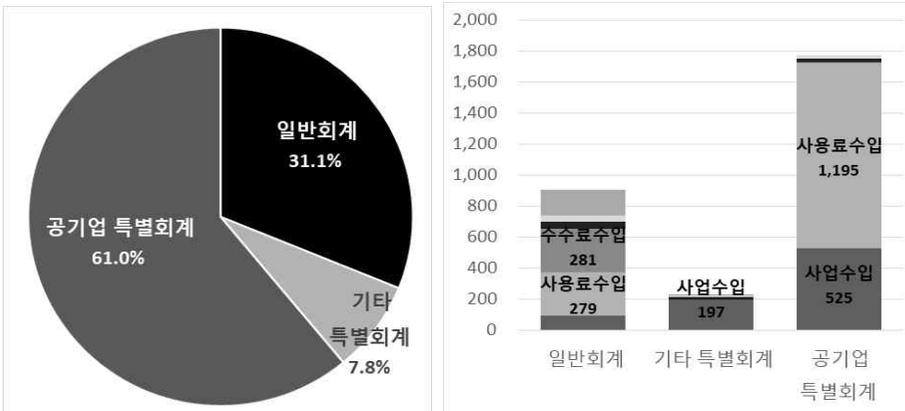
수입별	2017년 징수액
합계	1,111,011,983,159
일반회계	255,423,821,870
경상적세외수입	89,121,478,960
재산임대수입	3,266,633,090
사용료수입	28,400,856,790
수수료수입	28,872,918,240
사업수입	8,934,073,980
징수교부금	15,567,141,720
이자수입	4,079,855,140
임시적세외수입	166,302,342,910
재산매각수입	12,218,522,500
부담금	116,437,368,720
과징금 및 과태료	8,415,074,010
기타수입	22,230,821,990
지난년도수입	7,000,555,690
특별회계	855,588,161,289
공기업특별회계	441,238,147,337
상수도사업	112,371,270,565
공영개발사업	184,441,623,585
하수도사업	144,425,253,187
기타특별회계	414,350,013,952
도시교통사업	96,940,740,346
의료급여기금	6,182,786,066
기반시설부담금	2,077,998,240
도시개발	97,597,506,240
대지보상	105,750,75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37,338,830
폐기물처리시설	6,701,811,350
컨벤션센터건립	204,606,082,130

자료: 수원시 2017 세입가결산 내부자료(수원시,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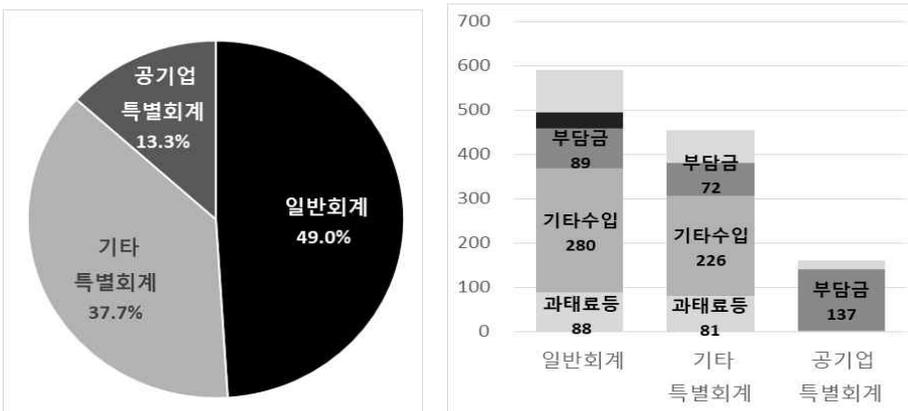
- 2016년 결산총계 기준, 항목별 세외수입을 살펴보면, 사용료 수입이 1,474억 원으로 전체 세외수입 중 35.8%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 기타수입이 510억 원(12.4%), 사업수입 815억 원(26.9%) 순으로 나타남
 - 경상적 세외수입의 50.6%를 차지하는 사용료 수입의 경우, 공기업특별회계의 상하수도 사용료가 전체 사용료 중 81.1%(1,195억 원)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은 그외수입이 약 505억 원으로 기타수입의 9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276억 원, 54.7%)와 기타특별회계(226억 원, 44.7%)가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음
- 경상적 세외수입 측면에서 일반회계는 수수료 수입 약 281억 원(31.0%), 사용료 수입이 279억 원(30.8%), 징수교부금 수입 169억 원(18.6%), 그 외 다양한 세입원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회계 특성상 각각 사업수입(197억 원, 86.3%), 사용료 수입(1,195억 원, 67.3%)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공공시설물 운영에 따른 기타수입(각각 280억 원 47.5%, 226억 원 49.9%), 공기업특별회계는 개발이익환수금과 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포함한 부담금(137억 원, 85.9%)에 치중된 모습을 보임

<회계구분별 경상적 세외수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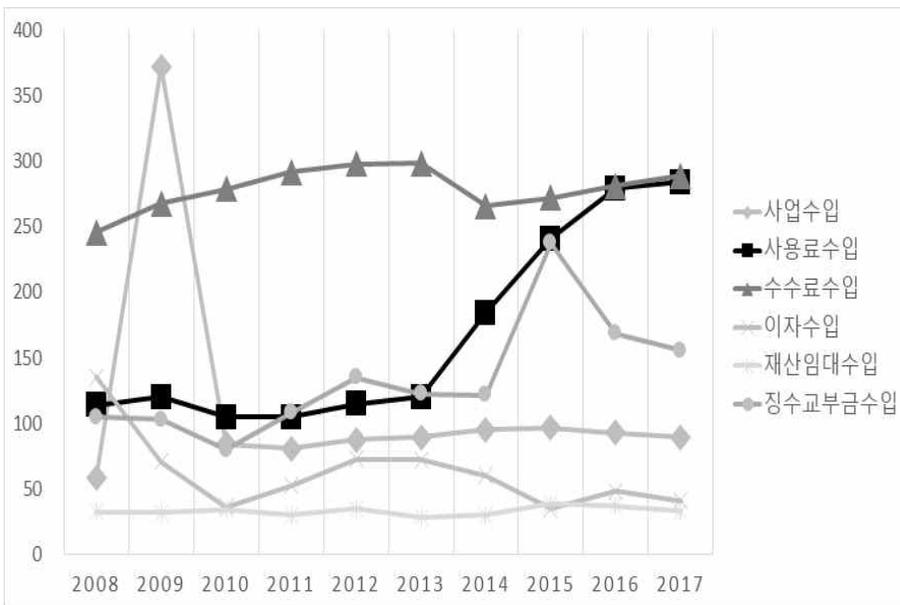
<회계구분별 임시적 세외수입 현황>



<그림 3-5> 2016년 수원시 세외수입 규모와 구성(결산총계)

자료: 2016 지방재정연감(행정안전부, 2017)

- 일반회계의 연도별 경상적 세외수입 변화를 살펴보면, 2013년 이후 사용료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경상적 세외수입의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수수료 수입은 비교적 큰 변동이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 반면, 사업수입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재산임대수입 역시 지속적으로 낮은 규모에 머무는 한편, 초저금리의 영향으로 이자수입 또한 낮은 규모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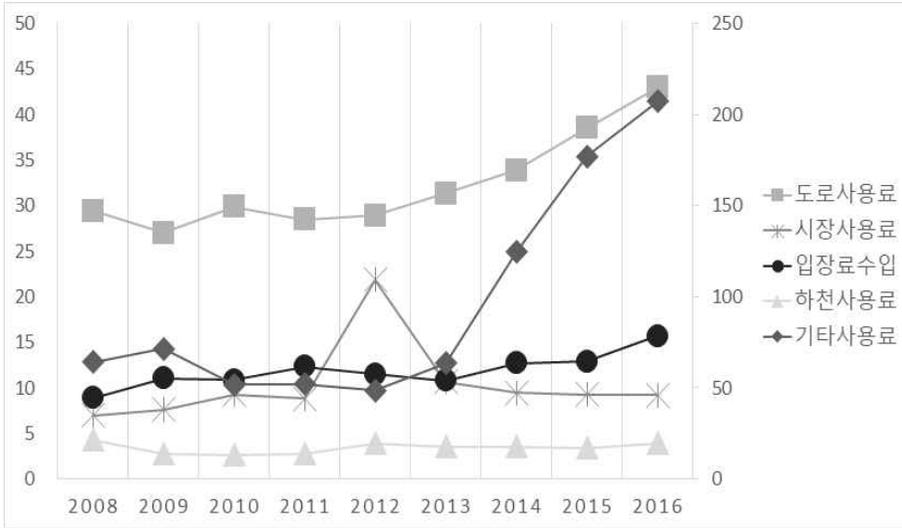


<그림 3-6> 수원시 경상적 세외수입(일반회계) 규모 추이(결산총계)

자료: 2008-2016 지방재정연감(행정안전부, 각 년도) 재구성, 수원시 2017 세입가결산 내부자료(수원시, 2017)

- 사용료 수입은 공원, 운동장, 묘지, 복지회관, 시민회관 등의 공공시설 사용료를 포함하는 기타 사용료가 사용료 수입의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음
 - 특히 2015년 수원시장레식장 운영방식을 변경·위탁하여 세입조치함으로써 추모의 집과 승화원, 장례식장 운영수익 증가에 따라 기타사용료 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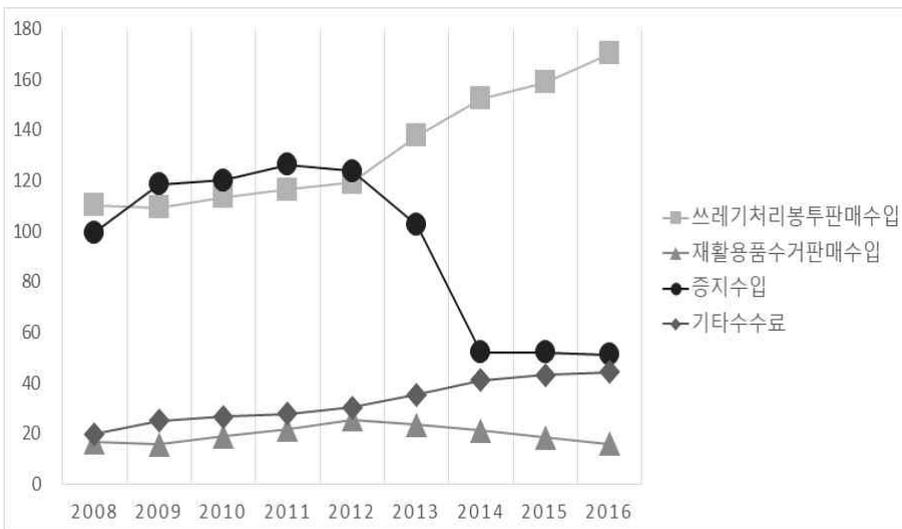
9) 징수교부금 수입은 대도시 재정특례에 따라 2011년 151억 원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임



<그림 3-7> 수원시 사용료수입(일반회계) 규모 추이(결산총계)

자료: 2016 지방재정연감(행정안전부,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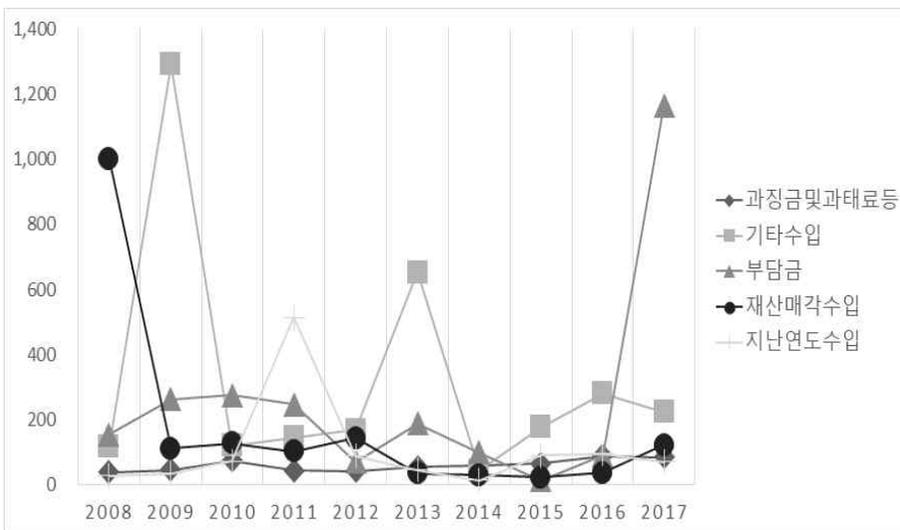
- 한편,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증가하며 전체적인 수입규모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그림 3-8> 수원시 수수료수입(일반회계) 규모 추이(결산총계)

자료: 2016 지방재정연감(행정안전부, 2017)

- 수원시의 일반회계의 연도별 임시적 세외수입¹⁰⁾은 기타수입 규모가 일반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2017년 개발부담금을 중심으로 부담금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 재산매각수입은 2012년 이후 감소세에 있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기타수입은 2014년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항목이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비 반환금과 기부금 수입으로 2016년 증가세를 보이다가 다시 감소함
 - 부담금은 주로 일반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택지개발사업 및 도로개설사업 시행에 따라 일시적으로 부담금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임
 - 2011년까지 광고, 호매실, 권선택지개발지구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과 도로개설 및 도로확장사업에 따른 부담금이 일반부담금의 규모에 영향을 미침
 - 2013년 수원의곽순환(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 및 오목천동~청구(아)곳집말지구 도로개설, 2017년 수원의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보상으로 부담금이 증가함
 - 기존 잡수입(2008년), 기타수입(2009년~2014년) 항에 속해 있던 과징금 및 과태료는 2015년부터 개별 ‘항’으로 분리되었으며, 이후 지속하여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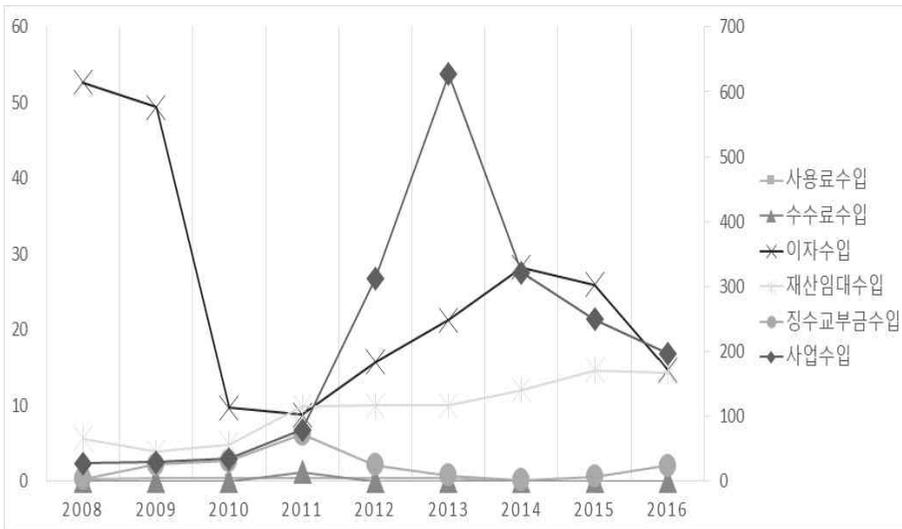


<그림 3-9> 수원시 임시적 세외수입(일반회계) 규모 추이(결산총계)

자료: 2008~2016 지방재정연감(행정안전부, 각 년도) 재구성, 수원시 2017 세입가결산 내부자료(수원시, 2017)

10) 세부항목까지 명시된 2017년 가결산 자료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확보가 불가능 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만 가능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만 2017년 가결산 수치를 제시함

- 특별회계의 정상적 세외수입 규모는,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매각수입 및 주차요금 수입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기타특별회계는 2013년 곡반정지구 및 산동지구, 2015년 산동지구와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의 채비지 매각과 환지 청산금 등 큰 규모의 도시개발 매각수입 및 청산금 수입이 사업수입의 추세를 주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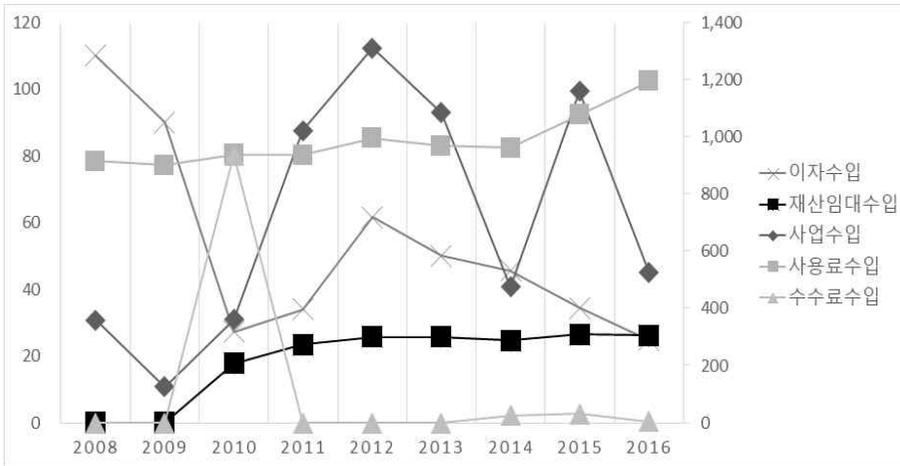
<그림 3-10> 수원시 경상적 세외수입(기타특별회계) 규모 추이(결산총계)

주: 사업수입의 경우 우측 값을 기준으로 함 (단위: 억 원)

자료: 2016 지방재정연감(행정안전부, 2017)

- 한편, 공기업특별회계의 사용료 수입은 상수도 사용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2015년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여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고 경영합리화를 강도 높게 추진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데 기여하였음¹¹⁾
- 공기업특별회계의 사업수익은 산업단지(3단지) 시설용지 분양에 따른 용지매출수익을 포함한 공영개발사업수익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R&D Science Park 조성 사업, 서수원 생태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기타용지매출수익이 기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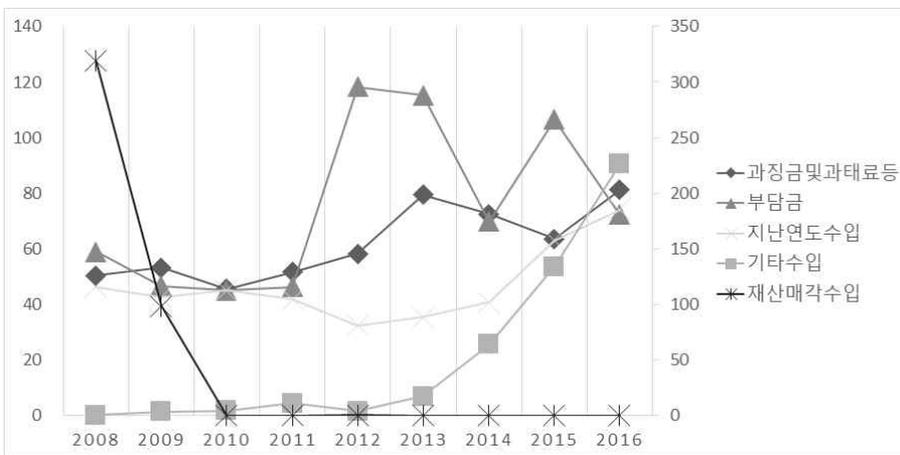
11) 2007년 상수도 요금 13% 인상 후 8년간 동결되었던 상수도요금을 7.1% 인상함



<그림 3-11> 수원시 경상적 세외수입(공기업특별회계) 규모 추이(결산총계)

주: 사업수입 및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의 경우 우측 값을 기준으로 함 (단위: 억 원)
 자료: 2016 지방재정연감(행정안전부,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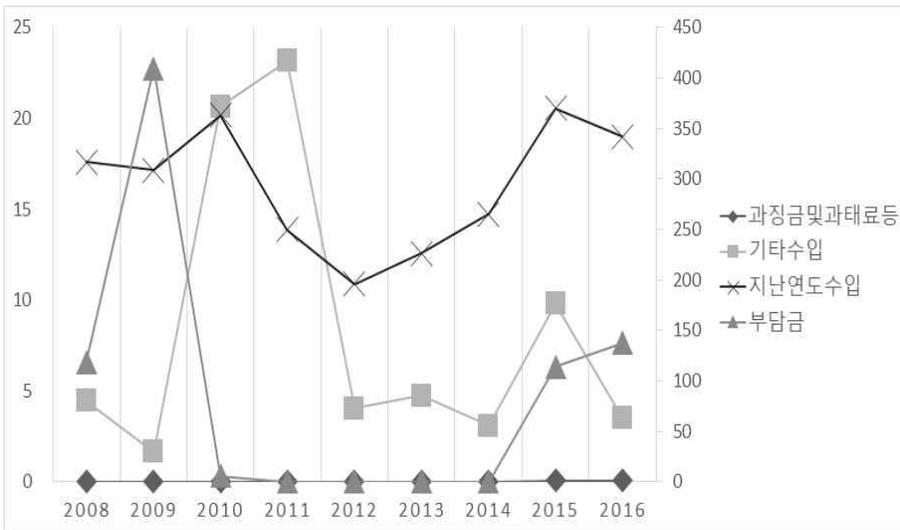
-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기타특별회계는 기타수입이 2014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한편, 공기업특별회계는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부담금 이외의 수입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기타수입과 지난연도 수입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 기타특별회계의 기타수입에는 기존 과태료, 견인료, 진료비 부당이득금 환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5년 이후 기타수입의 급격한 증가에는 컨벤션센터 건립으로 인한 광고개발이익금이 원인으로 작용함



<그림 3-12> 수원시 임시적 세외수입(기타특별회계) 규모 추이(결산총계)

주: 재산매각수입 및 기타수입의 경우 우측 값을 기준으로 함(단위: 억 원)
 자료: 2016 지방재정연감(행정안전부, 2017)

- 공기업특별회계는 호매실지구 조성에 따른 서호천공공하수처리장건설 원인자 부담금 (광고, 호매실)으로 인해 2010년 일시적으로 부담금 규모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부담금을 제외하면 차량 및 기계장치 매각수입에 따른 1억 원 이하의 재산 매각수입과 기타영업수입 중 잡수입을 포함하여 그 외 수입이 발생하고 있음



<그림 3-13> 수원시 임시적 세외수입(공기업특별회계) 규모 추이(결산총계)

주: 부담금의 경우 우측 값을 기준으로 함(단위: 억 원)
 자료: 2016 지방재정연감(행정안전부, 2017)

- 연도별 세외수입을 종합하여 볼 때, 경상적 세외수입 내에서 특히 비교적 안정적인 세입원은 일반회계의 수수료 수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용료 수입 역시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음
- 기타특별회계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각사업수입 및 주차요금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함
- 또한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기업특별회계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 경상수입의 2배가량 높은 세입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상하수도 사용료는 2015년 상수도요금 현실화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어, 세외수입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매각수입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수입은 낮은 안정성을 보이고 있는 한편, 재산임대수입과 이자수입은 낮은 규모에 정체되어 있거나 점차 감소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세입확충 방안이 필요함을 보여줌

-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택지개발 등에 의해 부담금 등의 변동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재산매각 수입은 크게 감소하는 추세임
- 전반적으로 볼 때, 수원시는 안정적 경상적 세외수입원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향후 기존의 광고, 호매실, 권선택지개발 등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한 세외수입 창출이 기대되기 어려운 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신세원 확보 및 추가적인 징수율 제고의 노력이 요구됨

제3절 수원시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1. 수원시 세외수입 징수실적

- 2017 회계연도 가결산 자료¹²⁾에 따르면, 2017년도 세입은 총 3,192.442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3.6%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비중이 높은 것은 세외수입(34.8%), 보조금(18.5%)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세입 중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61.7%(1조 9,703억 원), 28.2%(9,004억 원)로 2016년도(42.7%)와 비교하여 자체수입 비중이 19.0%p 증가하였음

〈표 3-12〉 수원시 3개년도 세입결산 현황(결산총계)

(단위: 백만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	전년대비 (%)	전년대비 (%)
계	2,637,092	2,809,795	106.5	3,192,442	113.6
자체수입	1,271,317	1,200,954	94.5	1,970,279	164.1
지방세	829,750	789,569	95.2	859,267	108.8
세외수입	441,568	411,385	93.2	1,111,012	270.1
이전수입	830,109	799,588	96.3	900,423	112.6
지방교부세	13,818	15,427	111.6	23,462	152.1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78,991	239,812	86.0	286,392	119.4
보조금	537,300	544,348	101.3	590,569	108.5
지방채및예치금회수등	31,700	45,000	142.0	52,000	115.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03,966	764,254	151.6	269,741	35.5

자료: 2016 지방재정연감(행정안전부, 2017), 수원시 2017 세입가결산 내부자료(수원시, 2017)

- 지방세수입은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유사자치단체 상위 25% 이내에 해당하는 우수한 수준을 나타내었음.¹³⁾ 2016년에는 삼성전자의 법인지방소득세 감소로 인해 일시적으로 하락한 이후 2017년 다시 증가하여 예년 수준을 회복하였음
 - 2015년까지의 자체세입의 증가의 원인으로는 삼성전자의 영업실적 상승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변화와 호매실지구 조성을 통한 인구유입으로 지방세입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삼성전자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삼성전자 영업실적상승에 따라 2014년 귀속분이 증가하였으며(14년 1,085억 원→15년 1,775억 원), 독립세 전환 및 삼성전자의

12) 보고서 작성 시점에서 확보 가능한 2017년 가결산 자료를 활용함

13) 2016년 지방재정분석 보고서

- 연구개발비 등 공제 감면분 과세전환으로 지방소득세 940억 원이 증가하였음
- 또한, 호매실지구 조성을 통한 인구유입(약 12,000명)으로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입 증가로 자체세입이 증가하는 추세임

<표 3-13> 수원시 지방세 징수액 추이

(단위: 백만 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6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3	2014	2015	2016	비중(%)	
합 계	644,675	713,026	829,750	789,569	100	6.99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56,645	58,965	65,532	74,658	9.46	9.64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5,308	34,734	38,958	42,927	5.44	100.72
지방소득세	284,789	302,494	396,415	319,515	40.47	3.91
재 산 세	164,057	172,511	185,290	193,252	24.48	5.61
자동차세	129,589	133,871	136,595	149,294	18.91	4.83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4,288	10,451	6,960	9,924	1.26	32.27

자료: 2017수원시 지방재정공시(수원시, 2017)

- 2016년, 세외수입은 전년도의 93.2% 수준인 4,114억 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적극적인 체납 관리활동 및 과태료 등 징수노력을 통하여 2017년 큰 폭으로 증가(1조 1,110억 원)하였으며, 향후 세외수입을 안정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요구됨

<표 3-14> 수원시 연도별 세입항목별 결산(총계) 규모

(단위: 억 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합계	19,368	21,962	17,647	17,948	20,850	23,172	23,718	26,371	28,098	31,924
지방세수입	4,874	4,732	5,151	5,759	5,847	6,447	7,130	8,297	7,896	8,593
세외수입	10,333 (4,112)	13,364 (4,583)	7,877 (3,803)	7,816 (4,026)	8,754 (4,213)	10,419 (4,755)	3,156	4,416	4,114	11,110
조정교부금등	1,401	1,035	1,372	1,515	2,351	1,903	2,498	2,790	2,398	2,864
지방교부세	230	101	106	96	211	149	155	138	154	235
보조금	2,529	2,122	3,021	2,761	3,665	4,210	4,855	5,373	5,443	5,906
지방채	0	608	120	0	23	44	210	317	450	52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221)	(8,780)	(4,074)	(3,791)	(4,541)	(5,664)	5,714	5,040	7,643	2,697

주: 제외수입 괄호() 안의 수치는 법률 개정에 따라 2014년 이후 제외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항목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2008-2016지방재정연감(행정안전부, 각 년도) 재구성, 수원시 2017세입가결산 내부자료(수원시, 2017)

- 세목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도 일반회계 기준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7% 감소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82.0% 증가하였음
 -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각각 전년대비 1.7%, 2.7% 증가하였으나, 징수교부금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전반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다소 감소하였음
 - 한편, 임시적 세외수입은 모든 세목이 증가세를 보이며 규모가 크게 상승함
 - 특히 기반시설부담금 등 부담금이 전년도 89억 원에서 1,075억 원 증가한 1,164억 원 규모를 나타냈으며, 재산매각수입 또한 전년 대비 4배가량 증가함

〈표 3-15〉 수원시 2016년 세입항목별 결산(총계) 규모(일반회계)

(단위: 원, %)

구분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
계	2,142,929,651,270	2,336,853,624,900	109.05%
지방세	789,569,429,780	859,267,000,000	108.83%
세외수입	149,613,989,560	255,423,000,000	170.72%
경상적세외수입	90,640,080,160	89,121,478,960	98.32%
재산임대수입	3,700,908,430	3,266,633,090	88.27%
사용료수입	27,921,272,190	28,400,856,790	101.72%
수수료수입	28,102,760,050	28,872,918,240	102.74%
사업수입	9,258,200,820	8,934,073,980	96.50%
징수교부금수입	16,852,349,640	15,567,141,720	92.37%
이자수입	4,804,589,030	4,079,855,140	84.92%
임시적세외수입	58,973,909,400	166,302,342,910	281.99%
재산매각수입	3,667,001,730	12,218,522,500	333.20%
부담금	8,921,066,590	116,437,368,720	1305.20%
과징금및과태료등	8,830,640,040	8,415,074,010	95.29%
기타수입	28,030,069,960	22,230,821,990	79.31%
지나년도 수입	9,525,131,080	7,000,555,690	73.50%
지방교부세	14,726,938,000	23,462,000,000	159.31%
조정교부금등	231,439,287,000	286,391,835,000	123.74%
보조금	538,673,695,000	590,569,204,810	109.63%
지방채	45,000,000,000	52,000,000,000	115.5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73,906,311,930	269,740,585,090	72.14%
보전수입등	338,677,553,930	138,926,795,300	41.02%
내부거래	35,228,758,000	130,791,314,790	371.26%

자료: 2016회계연도 수원시 결산서, 수원시 2017세입가결산 내부자료(수원시, 2017)

- 회계구분별 징수액은 공영개발사업 및 상하수도사업을 포함한 공기업 특별회계가 4,412억 원(39.7%)으로 가장 큰 규모를 보이며,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가 4,144억 원(37.3%), 일반회계가 2,554억 원(23.0%)으로 나타남

〈표 3-16〉 수원시 세외수입 회계구분별 징수실적(결산총계)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6		2017	
		비중		비중
합계	411,385	100.0%	1,111,012	100.0%
일반회계	149,614	36.4%	255,423	23.0%
경상적세외수입	90,640	22.0%	89,121	8.0%
재산임대수입	3,701	0.9%	3,267	0.8%
사용료	27,921	6.8%	28,401	2.6%
수수료	28,103	6.8%	28,873	2.6%
사업수입	9,258	2.3%	8,934	0.4%
징수교부금수입	16,852	4.1%	15,567	0.3%
이자수입	4,805	1.2%	4,080	1.4%
임시적세외수입	58,974	14.3%	166,302	15.0%
재산매각수입	3,667	0.9%	12,219	0.8%
부담금	8,921	2.2%	116,437	2.0%
과징금및과태료등	8,831	2.1%	8,415	10.5%
기타수입	28,030	6.8%	22,231	1.1%
지난년도수입	9,525	2.3%	7,001	0.6%
특별회계	261,770	63.6%	855,588	77.0%
기타특별회계	68,209	16.6%	414,350	37.3%
공기업특별회계	193,561	47.1%	441,238	39.7%

자료: 2017 지방세외수입연감(행정안전부, 2017), 수원시 2017 세입가결산 내부자료(수원시, 2017)

- 2017년 세입 가결산 기준으로 전체 징수목표액 2조 9,123억 원 중 미수납액이 1,180억 원으로 부과 대비 징수율(C/B)은 96.0%로 2016년 징수율과 비교하여 소폭 증가하였음
 - 세외수입의 경우 경상적 세외수입의 징수율은 부과 대비 99.4%를 유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율은 60.5%에서 83.6%로 증가하여 세외수입의 징수율 증대에 기여하였음

〈표 3-17〉 2016년 수원시 징수율 현황(결산총계)

(단위: 백만 원, %)

과 목 별	징수 목표액 (A)	부과액 (B)	징수액 (C)	불납 결손액(D)	미수납액 B-(C+D)	2016년 징수율(%)
합 계	2,091,842	2,247,626	2,142,930	18,001	86,695	95.3
지방세수입	764,133	855,172	789,569	9,641	55,962	92.3
주민세	42,860	43,952	42,927	1	1,025	97.7
재산세	192,182	197,888	193,252	11	4,625	97.7
자동차세	147,146	161,495	149,294	1	12,201	92.4
담배소비세	62,275	74,658	74,658			100.0
지방소득세	312,080	332,968	319,515	29	13,424	96.0
지난년도수입	7,590	44,211	9,924	9,600	24,687	22.4
세외수입	128,360	188,708	149,614	8,360	30,733	79.3
경상적세외수입	87,667	91,230	90,640		590	99.4
임시적세외수입	40,693	97,477	58,974	8,360	30,143	60.5
지방교부세	12,755	14,727	14,727	0	0	100.0
조정교부금등	227,539	231,439	231,439	0	0	100.0
보조금	536,081	538,674	538,674	0	0	100.0
지방채	45,000	45,000	45,000	0	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77,975	373,906	373,906	0	0	100.0

자료: 2016 회계연도 수원시 결산서(수원시, 2017)

〈표 3-18〉 2017년 수원시 징수율 현황(결산총계)

(단위: 백만 원, %)

구분	예산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불납 결손액(D)	미수액 (B-C-D)	징 수 율	
						C/A	C/B
합 계	2,912,274	3,326,365	3,192,443	15,895	118,004	109.6%	96.0%
일반회계	2,145,034	2,434,549	2,336,854	11,631	86,064	108.9%	96.0%
지방세 (시세)	846,120	923,942	859,267	8,663	56,012	101.6%	93.0%
세 외 수 입	246,120	288,443	255,423	2,968	30,052	103.8%	88.6%
경상적세외수입	86,744	89,616	89,121		495	102.7%	99.4%
임시적세외수입	159,376	198,827	166,302	2,968	29,557	104.3%	83.6%
지방교부세	21,268	23,462	23,462		0	110.3%	100.0%
조정교부금	255,333	286,392	286,392		0	112.2%	100.0%
보조금	585,247	590,569	590,569		0	100.9%	100.0%
지방채	52,000	52,000	52,000		0	100.0%	100.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38,946	269,741	269,741		0	194.1%	100.0%

구분	예산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불납 결손액(D)	미수액 (B-C-D)	징수율		
						C/A	C/B	
특별회계	767,240	891,816	855,589	4,264	31,940	111.5%	95.9%	
공 기 업	소계	419,975	451,538	441,238	47	10,253	105.1%	97.7%
	상수도사업	113,705	118,721	112,371	47	6,303	98.8%	94.7%
	공영개발사업	181,835	184,442	184,442			101.4%	100.0%
	하수도사업	124,435	148,375	144,425		3,950	116.1%	97.3%
기 타	소계	347,265	440,278	414,351	4,217	21,687	119.3%	94.1%
	도시교통사업	53,412	122,094	96,941	4,191	20,962	181.5%	79.4%
	의료급여기금	6,086	6,912	6,183	26	703	101.6%	89.5%
	기반시설부담금		2,101	2,078	0	0		98.9%
특 별 회 계	도시개발	93,304	97,620	97,598		22	104.6%	100.0%
	대지보상	1,404	106	106			7.5%	1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9	137	137			1522.2%	100.0%
	폐기물처리시설	11,383	6,702	6,702			97.5%	100.0%
컨벤션센터건립	181,667	204,606	204,606			112.6%	100.0%	

자료: 수원시 2017 세입가결산 내부자료(수원시, 2017)

2. 수원시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 2016년 결산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누계액은 일반회계기준 지방세 656억 원, 세외수입 390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은 2015년 대비 134억 원 감소한 1,047억 원임
 - 지방세의 경우, 지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체납액 징수의 어려움이 있으며, 경기 회복 둔화로 소규모 영세업체 부도·폐업 증가, 납세자 담세능력 부족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음
 - 세외수입의 주요 체납요인으로는 주정차 과태료 등이 있으며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전담조직 신설, 개인별 목표관리제를 운영하여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난년도 대비 163억 원이 감소하였음

<표 3-19>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 원)

구분	2015연말 체납누계액	2016연말 체납누계액	증감액
합계	118,121	104,696	△13,425
지방세	62,769	65,603	2,834
세외수입	55,352	39,094	△16,258

자료: 2017 수원시 지방재정공시(수원시, 2017)

- 세외수입 체납액(일반회계+주정차위반과태료)은 2014년 853억 원에서 2016년 702억 원으로 감소하였으며, 2017년 이월체납액은 553억 원(일반회계 307억, 특별회계 246억)으로 수원시의 적극적인 징수체계 개선 노력을 통해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¹⁴⁾
 - 외국인 과태료 체납액 징수, 세외수입 특별 징수기동반의 운영, 삼진아웃제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이 증가하였음
 - 또한,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차량 번호인식형 영치시스템 도입·운영 및 전자예금압류, 직장급여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에 따라 2016년도 역대 최고징수액 16,527백만 원(종전 15,120백만 원) 및 징수율(23.5%)을 달성함
 - 징수과를 컨트롤 타워로 체계적인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징수전담팀을 운영함으로써 자동차 관련 지방세와 과태료 및 과징금의 체납액이 감소하였으며, 타 시도의 징수 업무에 대한 벤치마킹 사례로 제공되는 성과를 거두었음

<표 3-20> 연도별 수원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추이(일반회계 및 주정차 과태료)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이월 체납액	70,221	89,422	85,270	84,067	85,975
징수금액	16,525	15,120	8,775	7,422	11,529
징수율	23.5%	16.9%	10.3%	8.8%	13.4%

자료: 2017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계획(수원시, 2017)

<표 3-21> 2016년 수원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일반회계 및 주정차 과태료)

(단위: 백만 원, %)

구분	이월 체납	정리액(징수+결손)						2017.1. 이월체납	
		계	정리율	징수액	징수율	결손액	결손율		
계	70,221	28,857	41.09%	16,525	23.53%	12,332	17.56%	55,305	
일반회계	소계	39,538	17,871	45.20%	9,575	24.22%	8,296	20.98%	30,735
	체납세징수단	13,161	6,072	46.14%	4,798	36.46%	1,274	9.68%	11,115
	차량등록사업소	26,377	11,799	44.73%	4,777	18.11%	7,022	26.62%	19,620
특별회계(주정차과태료)	30,683	10,986	35.80%	6,950	22.65%	4,036	13.15%	24,570	

자료: 2017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계획(수원시, 2017)

14) 2017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계획(수원시,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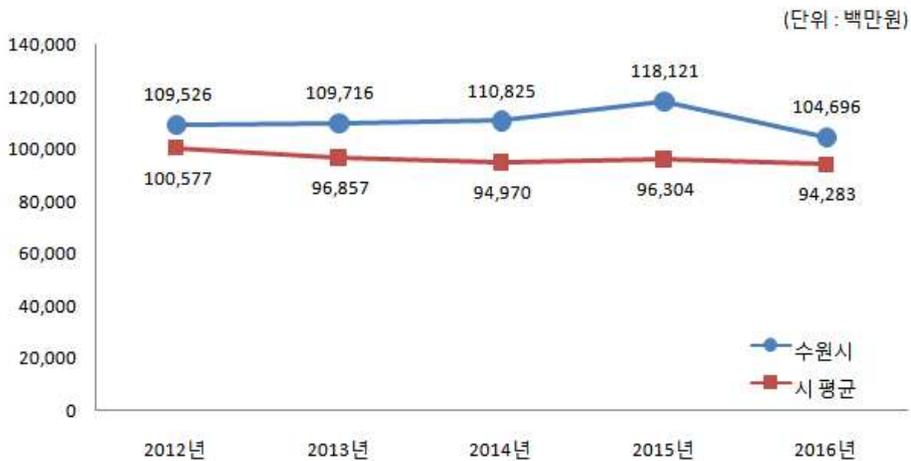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의 전체 체납액(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유사자치단체 평균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징수활동 강화방안이 요구됨
 - 2016년도 일반회계 기준 수원시 체납액은 유사자치단체 평균인 94,283백만 원보다 10,413백만 원 많은 104,696백만 원이며, 체납액 축소를 위해 목표관리제 운영 및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음

<표 3-22>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 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109,526	109,716	110,825	118,121	104,696
지방세	57,882	55,932	56,209	62,769	65,603
세외수입	51,644	53,783	54,617	55,352	39,094
유사단체 평균	100,577	96,857	94,970	96,304	94,283

자료: 2017 수원시 지방재정공시(수원시, 2017)



<그림 3-14> 수원시 및 유사자치단체 체납액 추이

자료: 2017 수원시 지방재정공시(수원시, 2017)

- 특히 수원시는 비교적 체납액 규모가 큰 자동차 관련 체납액 정리를 위해 통합영치 시스템, 맞춤형 징수전담팀 설치, 외국인 차량 관련 체납액 집중 관리를 실시하여 자동차관리과의 체납액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둠

〈표 3-23〉 세외수입 연도별 관리조직별 체납액 현황(2017.7.31. 기준)

(단위: 백만 원)

회계연도	소계	징수과	자동차관리과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합계	46,211	15,472	19,085	1,979	2,889	3,994	2,792
2016	6,220	2,520	1,935	172	508	635	450
2015	4,725	1,939	1,640	137	190	592	227
2014	5,491	2,723	1,832	139	202	449	146
2013	5,078	1,852	2,115	144	219	466	282
2012	3,977	1,006	2,331	107	134	262	137
2011	3,330	594	2,307	85	94	145	105
2010	2,906	655	1,858	77	89	91	136
2009	3,243	774	1,855	111	118	168	217
2008	1,888	449	933	85	103	125	193
2007	1,672	380	788	119	93	105	187
2006	1,620	425	617	161	140	125	152
2005	1,513	331	703	112	132	117	118
2004	1,072	507	55	113	155	110	132
2003	955	365	12	107	144	175	152
2002	773	294	15	95	141	140	88
2001	756	315	22	61	170	119	69
2000	404	139	19	67	114	64	1
1999	234	80	28	22	59	45	-
1998	194	64	18	60	27	25	-
1997	86	37	2	2	24	21	-
1996이전	74	23	-	3	33	15	-

자료: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대책보고자료(수원시, 2017)

제4절 수원시 세외수입 관리체계 현황

1. 수원시 세외수입 관련 정책방향 및 조례

- 2017년 수원시 재정운용 방향¹⁵⁾은 크게 재정원칙 준수, 주민생활 안정, 성장기반 강화를 주요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성장기반으로서 자체재원 확충은 중요한 의미를 지님
- 특히, 자체재원 확충을 통한 자주적 기반 구축을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관리 강화 및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기존 세수의 확충뿐만 아니라 수수료 현실화 및 신규세원 마련 등 세입 증대방안을 모색함
 - 구체적으로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운영, 재산압류 등 강제처분,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 병행, 각종 수수료 현실화 등 세입수입 증대방안 강구, 일몰제 엄격 적용으로 비과세·감면 축소 등의 내용을 포함함

재정기준 강화 및 지출 자율통제 등 재정원칙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이며 합리적인 재정관리 강화 ○ 재정운영 기준 강화 ○ 재정지출 자율통제 강화
일자리 창출 및 안전관리 강화 등 주민생활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창출사업 지속추진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 안전관리기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입확충 노력 등 성장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성장 동력 확보 ○ 지역전략사업 육성 ○ 자체재원 확충 강화

<그림 3-15> 2017년 수원시 재정운용 방향

자료: 2017년 예산 성과계획서

- 또한 실국 전략목표를 살펴보면, 주무국인 일자리경제국은 세정운영과 관련하여 납세의 제공과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전략목표로 하고 있음

15) 2017년도 예산 성과계획서 참조

고객이 감동하는 납세편의 서비스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납부 홍보 ○ 세입정보시스템 운영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관리로 세수확충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정 운영 및 지방세 부과징수 지원 ○ 탈루은닉 세원추정 ○ 세입관리 및 자금운영
청사시설 개·보수와 유지관리를 통한 시민중심의 안전한 에너지 절약 청사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가치 증대

<그림 3-16> 2017년 수원시 일자리경제국 전략목표(세정 운영 관련)

자료: 2017년 예산 성과계획서

<표 3-24> 2017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계획

추진 내용	상세
고액체납자 행방 및 재산실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류물건 조회 및 실익분석 - 체납자 방문 및 현장조사 -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체납액 징수율 전년대비 0.2%p 높이기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조회·압류 - 체납자 대금지급 정지 시행 - 담당자 직무교육 및 부서별 순회 상담
책임징수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 부동산, 채권 등 조회 및 실익분석 - 체납자료 분석 및 현장방문
결손처분자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압류 물건 실익분석 및 분석 - 전국 재산 및 채권조회 실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자료: 2017년 세외수입징수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계획(수원시, 2017)

- 이와 같은 주요 전략 하에 수원시는 2017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1,476억 원을 목표로 세정과를 컨트롤타워로 한 과태료 징수 실적 향상, 회계별 자금운용 관리에 대한 안정성과 효율성 향상, 자금운용 효율성 제고 및 유휴자금 적기 자금배정으로 이자수입 증대 추진, 세외수입 부과업무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교육, 자체 인센티브 부여 등을 실시 하여¹⁶⁾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음

<표 3-25> 2017년 세외수입 징수목표

(단위: 백만 원, %)

목 별	2017년도 징수목표액 (A)	2016년 징수예상액 (B) (추경예산액)	2016년도 예산액 (C)	증감액 (A-B)	증감비율
세 외 수 입	147,612	142,242	104,673	5,370	3.8
경상적세외수입	87,278	85,724	85,596	1,554	1.8
재산임대수입	3,484	3,387	3,387	97	2.8
사용료 수 입	27,658	26,749	26,629	909	3.3
수수료 수 입	27,547	26,919	26,882	628	2.3
사 업 수 입	8,811	10,255	10,284	△1,444	△14
징수 교부금	15,295	13,923	13,923	1,372	9.8
이 자 수 입	4,483	4,491	4,491	△8	△0.1
임시적세외수입	60,334	56,518	19,077	3,816	6.7
재산매각수입	2,500	2,500	2,500	0	0
부담금 수입	40,796	30,846	799	9,950	145.5
과징금및과태료등	3,921	3,559	3,559	362	10.1
기 타 수 입	8,117	13,213	7,919	△5,096	△38.6
지난연도 수입	5,000	6,400	4,300	△1,400	△21.8

자료: 2017년 세외수입팀 세부업무계획(수원시, 2017)

- 세외수입 제도와 관련하여 수원시는 회계, 징수, 감사, 시정(조직) 영역과 시설물 관리 영역에서 연관된 조례 및 시행규칙, 예규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재무회계 및 징수와 관련하여 세외수입의 정의, 지방세 법규의 적용, 포상금과 내부 통제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함
 - 예산절감 및 세입확충과 관련하여 제안제도와 성과급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인센티브제에 대해 명확히 함
 - 세외수입 부과징수 부서를 대상으로 한 자체 세외수입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구청 4개 부서, 본청 및 사업소 3개 부서에 대해 15,000천 원 범위 내에서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함
 - 시설물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세외수입으로서의 사용료 및 수수료의 납입, 환불, 변상 등에 관한 내용은 체육시설 및 미술관, 박물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관리 운영 등을 포함함

<표 3-26> 수원시 세외수입 관련 주요 자치법규 목록(세외수입)

분야	조례 및 규칙	관련내용
회계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22조 재정사항의 합의 제48조 지방세법규의 적용
예산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20조 상여금의 지급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제16조 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감사	수원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징수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 정의
시정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8조 일자리경제국에 두는 과
교육 및 문화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관람료 등 징수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5조 세외수입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 위탁관리 및 운영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사용료 등 납부·반환
	수원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회계 및 운영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제13조 관람 입장료 및 마케팅 비용 등 징수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 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 시민자전거의 운영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시스템

- 그 외 사용료와 관련하여 86개 조례 239개 항목, 수수료는 52개 조례 124개 항목이 있으며, 과징금 11개 조례 17개 항목, 과태료 관련 33개 조례 100개 항목, 부담금 23개 조례 81개 항목 등이 세외수입과 관련된 조례로 나타남
- 또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80개 조례 137개 항목이 있으며, 주요 조례로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이 있으며, 공공시설물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 그 외 부담금, 청산금, 주차요금, 불용품, 체납처분 등과 관련하여 43여개 조례 및 시행규칙과 89개 관련 항목이 있음
- 이러한 자치법규들은 신규 세입 확충을 위해 공공시설을 건립하거나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세입을 증대하는 한편,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표 3-27〉 수원시 세외수입 주요항목별 자치법규 현황

(단위: 개)

구분	조례 및 시행규칙	관련내용 (조문/부칙/별표)	주요 조례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80	137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수원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수원시 시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사용료	86	239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수원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수원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및 시행규칙 등
수수료	52	124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 수원시 수입증지 조례,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부담금	23	81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수원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수원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등
과징금	11	17	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수원시 주차장 조례, 수원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수원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등
과태료	33	100	수원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수원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수원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행위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수원시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처리 및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수원시 주차장 조례, 수원시 지하수 조례 등
기타 (분담금, 불응품, 주차요금 등)	43	89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수원시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수원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수원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수원시 시세 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 등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시스템

2. 수원시 세외수입 관련 조직

-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조사 자료에 의하면 수원시는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있으며 수원시의 세외수입 전담 공무원 인력은 18명으로 조사되고 있음. 이하에서는 세외수입과 관련된 전반적인 조직 구성을 검토함
- 2017년 말 기준, 수원시 본청 소속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조직은 기획경제국 내 세정과 및 징수과에 총 7개팀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과장 2명을 포함하여 총 39명의 담당자가 있음
 - 세정 및 징수 업무 각각 세외수입을 전담하는 세외수입팀과 세외수입징수팀이 있으며, 징수과에는 체납추적팀을 두어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자동차관리과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2인 1조로 구성된 체납 징수전담반을 지속 운영하고,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체제를 강화하는 등 체납액정리 활동을 추진하였음
 - 자동차관련 과태료 집중 정리를 위해 차량등록사업소에 각 4명씩 시간선택제 임기제 전문인력을 전담 배치함
 - 장기적·고의적 체납자에 대해 개인별 맞춤형 체납처분을 시행하는 한편, 체납 법인에 대해 관허사업제한(허가취소 및 제한)과 같은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적용함

<표 3-28> 수원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유관 조직(시 본청 및 사업소)

조직명		인원	업무내용
시 본청	세정과	세정팀	4명 ○ 세입전망, 평가, 조례개정, 지방세 시책 및 연찬회 운영 ○ 마을세무사 운영 ○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구제사무 ○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지방세지출예산, 감사 ○ 성실납세자 선정 ○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주택가격조사
		세무조사팀	4명 ○ 통합세무조사, 구제업무 등
		세외수입팀	5명 ○ 자금 운용 관리 ○ 과오납 ○ 인터넷등기소권한부여 ○ 자금배정 운영 및 관리, 자금결산 ○ 세외수입시스템 운영 등
	세무전산팀	3명 ○ 스마트고지, 지능형 세정서비스, 원콜통합납부서비스 ○ ARS납부시스템, 지방세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징수과	지방세 징수팀	7명 ○ 종합, 계획, 행정사무감사, 포상금, 성과관리 ○ 부동산 공매, 결손처분	

조직명		인원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허사업제한 ○ 재산조회 및 안내문 발송 ○ 체납차량 공매, 예금 및 기타채권 압류 ○ 지방세 체납액 징수 	
	세외수입 징수팀	7명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체납추적팀	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추적업무 전반 (고액체납자 관리, 탈루은닉재산 추적 조사 등) ○ 추적팀 업무계획 및 보고 ○ 고액체납자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입국금지 및 정지업무 ○ 공공기록 등록 	
도로 교통 관리 사업소	자동차 관리과	체납관리팀	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압류 및 해제, 교부청구 ○ 예금압류 및 해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대체압류 ○ 과태료 체납액 징수 및 상담(예금,부동산압류,영치)
		검사보험팀	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 자동차 검사 촉구서 명령서 발송, 검사기간 연장 ○ 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 부과 ○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자료: 수원시(<http://www.suwon.go.kr>) 조직 및 업무 재구성, 2017년 세외수입 업무분장(수원시, 2017)

- 세외수입 징수에 있어서 수원시는 그동안 전담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체납·징수 관리개선을 시도하며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도모하여 옴
- 2015년에는 세외수입금 체납액 860억 원 중 87%를 차지하는 751억 원의 자동차관련 과태료 정리를 위해 체납세징수단에 세외수입징수팀, 차량등록사업소에 체납관리팀을 설치 운영하였음
 - 체납세징수단 세외수입징수팀 4명,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체납팀 4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전담 배치함
 - 의무보험 등 과태료 체납자 40,720명, 주정차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자 21,181명을 전자예금압류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집중 관리하여 전자예금압류 16,983명 122억 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028대 9억 원의 징수성과를 창출함
- 또한 38체납 징수기동반을 구성·운영(2015년)하고, 맞춤형 징수전담팀 설치 및 현장징수 강화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율 향상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
 - 일반회계 세외수입금 체납액(차량등록사업소분 제외) 114억 원 중 76%인 천만 원 이상 체납자 170명 87억 원 징수를 위해 38체납징수기동반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과 2인 4개조로 편성함
 - 이행강제금, 과징금 등의 고액체납자에 대해 현장방문하여 징수를 독려하는 한편,

-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을 금액, 과목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하고, 현장행정 어플리케이션(수원톡)을 활용하여 모바일 현장징수독려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함
- 징수전담 조직체계 구축과 더불어 책임징수 ‘전담목표제’ 운영을 통해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징수기법 발굴을 유도하고 부서원 간 선의의 경쟁을 도모함
 - 세무직 직원 1명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명을 2인 1조로 편성하여 징수대상 체납자 배정 및 월별 징수목표를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액을 기준으로 매월 목표 달성도를 평가함
 - 2017년 7월에는 기존 체납세징수단을 폐지하고, 징수과를 신설하여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를 징수과로 이관하였음
 - 시청, 구청 각 과·동이 부과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를 징수과로 이관하고 예금, 부동산·급여 압류와 같은 체납처분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
 - 이를 통해 세외수입징수팀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세외수입 관련 부서와의 정보 공유 및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관리하며, 지방세에 준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처분으로 징수율을 제고함

<표 3-29> 수원시 신설 세외수입 징수과(세외수입징수팀) 업무

	기존	변경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발송	각 부서별로 부과 고지 및 체납 고지서 발송	과년도 체납고지서는 세외수입 징수팀에서 일괄 발송
세외수입 체납자 재산압류 및 해제	각 부서별로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 및 해제	세외수입징수팀에서 과년도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해제
세외수입 공매 및 결손처분	각 부서별로 체납자에 대하여 공매 및 결손처분	세외수입징수팀에서 과년도 체납자에 대한 공매 및 결손처분 실시
세외수입 재산 조회	체납세징수단 일괄 재산조회 후 각 부서별로 송부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에서 일괄 재산조회 후 각 부서별로 송부
세외수입 부과분 송달자료 확인	각 부서별 부과관련 송달근거 자료 제출 및 확인	기존과 동일

자료: 2017년 세외수입 업무 운영 지침(수원시, 2017)

- 또한, 현장 징수기동팀의 상시 운영 운영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지방세 징수기동팀은 체납추적팀장 등 6명 2개조, 세외수입 징수기동팀은 세외수입 징수팀장 등 6명 2개조로 구성됨
 - 주소지, 직장 등을 사전분석하고 현장방문 조사내용에 따라 추가 재산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함

- 형편곤란자의 경우에는 분납을 유도하고, 징수불능분은 결손처분 실시하여 세입 확충에 기여함
- 한편, 수원시 4개 행정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업무는 7팀(시세팀, 도세팀, 재산세팀, 개인 지방소득세팀, 법인 지방소득세팀, 과표팀, 징수팀)으로 구성된 세무과에서 담당함
 - 각 지방세무조직 인원은 28명~29명으로 대체로 동일하며 각 팀별 인력 역시 유사함
 - 장안구는 전국 대포차량 추적 영치팀으로 “장안 5201 세무기동팀”을 설치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음
 - 영통구는 고액체납자 징수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권선구에서도 징수팀을 2인 1조로 2개조를 구성하여 고액체납자를 격주로 방문하는 등 각 구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현장밀착형 징수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표 3-30> 수원시 구별 세무과 조직구조

조직명	인원 (명)				주요업무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세 무 과	과표팀	3	2	2	2	○ 동별 개별주택가격
	도세팀	5	5	5	5	○ 중과세, 취약분야, 지목변경, 도세소송 ○ 등록면허세(면허), 차량(이륜차)취득세 ○ 비과세감면, 상속(부동산) ○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 처리 ○ 위반(가설)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특자)
	개인지방소득세팀	3	3	3	3	○ 개인지방소득세(양도,특별징수) ○ 개인지방소득세(종합)
	법인지방소득세팀	3	3	3	3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지방소득세(정산)
	시세팀	6	6	6	6	○ 지방세 수납 및 과오납환급 ○ 자동차세, 자동이체 ○ 주민세(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 AIO ○ 세외수입 수입일계 및 월보작성
	재산세팀	4	4	4	5	○ 재산세(토지, 건축물, 주택) ○ 미신고상속 부동산 ○ 재산세 감면
	징수팀	4	5	4	4	○ 개인(법인)회생 및 파산 업무 ○ 차량공매 교부청구, 독촉장 ○ 경매 교부청구 및 배당, 압류, 징수포상금 ○ 변호판영치, 징수촉탁
	계	29	29	28	29	

자료: 2017년 말 기준, 각 구별 세무과 조직도 재구성

- 그 외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자동차관리과 체납관리팀(8명)에서 과태료 체납액 징수 및 상담, 부동산 및 예금 압류와 해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제5절 수원시 세외수입 확충 노력과 성과

- 수원시는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신규 세입을 발굴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위해 전담조직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그 결과, 2014, 2015년 행정안전부 지방세외수입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2016, 2017 경기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1. 체납액 정리율 향상

- 체납자 특성 상 기존에 부과징수에 어려움이 있던 외국인 차량 관련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정리율을 향상함
 - 외국인 특성상 잦은 거소 이동 및 출국으로 납부 고지의 반송 비율이 높고 체류 기간 만료 후 출국 시 적절한 징수 강제방안이 없어 체류 중 신속한 징수 및 향후 대책을 마련함
 - 외국인 차량등록 관련 과태료(검사미필, 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체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국인의 특성을 고려한 징수활동 및 체납예방활동을 실시함
 - 출입국사무소와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외국인 차량등록 관련 정보 등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체납자 출국여부 등 실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함
 - 민원창구 및 차량등록서식을 비롯하여 자동차 등록 시 준수사항 및 규정 안내문 등에 언어권별로 외국어 병행표시를 하여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활발한 납세홍보활동을 수행함
 - 출국 전 체납여부 확인 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체납자 출국을 사전에 예방함

<표 3-31> 수원시 외국인 차량관련 체납액 ZERO화 성과

(2015년 3월~10월31일 추진실적)

(단위: 명, 백만 원, %)

구분	이월체납	정리실적			2015.10.31. 기준 체납	정리율(%)
		계	징수	결손		
체납자	565	338	134	204	227	71.3
건수	1,638	1,151	513	638	487	
체납액	450	321	101	220	129	

자료: 행정안전부 2015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수원시, 2016)

- 외국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해 총 체납액 450백만 원 중 321백만 원을 정리 (71.3%)하였으며, 총 418명의 체납자 정보를 세외수입징수팀 등 관련 외국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부서 10개 팀과 공유함
- 정보시스템 측면에서는 가상계좌납부시스템 통합계좌납부 기능을 개발하여 민원인인 각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함
 - 통합가상계좌를 생성하고 SMS를 전송하여 납부 편의성을 증대하는 한편, 5개 세입계좌를 1개 계좌로 통합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 가상계좌 이체수수료에 대한 불만을 해소함
 - 230개 부서에서 운영하는 미납·체납액을 한 번에 납부 가능하도록 안내하여 징수를 독려하고 세수를 증대시킴
 - 세외수입·지방세 통합납부는 102건 41,268천 원으로 기존 583건에 달하는 세입항목을 102건으로 통합 납부할 수 있게 됨

2. 효율 현실화를 통한 세입 증대

- 원가절감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고,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함
 - 2007년 13% 인상 이후 8년간 동결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2015년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요금을 7.1% 인상함
 -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선 경영합리화를 강도 높게 추진하고, 요금인상은 가능한 최소화하는 단계적 현실화 방안을 채택함
 - 업무용과 영업용을 단일화하여 상수도요금 체계 업종구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고 체납요금 일할납부를 도입하였으며, 검침일시를 격월검침에서 매월검침으로 변경하여 민원을 최소화함
 - 가상계좌은행을 확대하고 전자납부와 신용카드 등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납부편의를 도모하고, 이동이체납부할인을 신설하여 체납을 최소화함

3. 신규세입 발굴과 기존 시설 운영 효율화

- 수원시는 또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전통식생활체험관과 같은 수원시의 문화적 특성

을 반영한 문화관광시설을 추가로 확충하는 한편, 공공시설물을 적극 개방하고 관광수입을 창출함으로써 연간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함

<표 3-32> 수원시 신규세입 발굴 사례(2016년)

(단위: 천 원)

제 목	추진내용	연간 세입증대액
공공시설물 야간/휴일 확대개방	○ 수원시 공공시설물 개방 및 사용 (2016. 2. 1. ~)	10,000
서수원칠보체육관개관 운영	○ 서수원칠보체육관개관 운영 (2016.2.16. ~)	306,030
광고 마을공동구판장 로컬푸드 육성	○ 수원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2016.11.11. ~)	30,000
관광형 탈거리 통합 론칭(3종) (플라잉, new화성열차, 자전거택시)	○ 3가지 체험형 관광탈거리 제공 (2016. 8. 10 ~)	50,000

자료: 2017 경기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 이와 같이 문화관광시설을 확충하여 신규 세입을 창출하는 한편, 기존 시설은 운영을 효율화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함
 - 화성관광열차 이용료를 인상하고, 수원박물관 사용료납부 및 반환규정을 정비하는 등 기존 문화시설의 운영을 효율화함
 - 화성열차 운행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화성열차의 이용료를 인상함
 -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운영조례를 개정함
 - 박물관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용료 납부와 반환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사용허가 취소 시 시의 면책을 규정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사용료 반환액수를 최소화함
 - 수원시장례식장(수원시 연화장 추모의 집) 운영방식을 연간 임대방식에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장례식장 운영, 매점 및 식당 운영 등에 따른 운영수익 세입조치로 5,340백만 원의 세입증대 성과를 창출함
 - 2001년 1월 추모의 집 개장 후 최초 사용기간 만기(15년)가 도래함에 따라 「수원시 연화장설치 및 운영 조례」 재사용료와 관리비 규정 조항을 신설하여 불안시설의 관리운영을 효율화함
 - (주)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에서 인수한 장례식장을 2015년 2분기부터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도록 하여 운영 투명성 및 세외수입이 증가함
 - 장례용품 및 음식 값을 평균 37.7% 인하하여 시민들의 장례비를 절감하는 데 기여함

제4장 타지방자치단체 사례분석

제1절 유사지방자치단체의 사례

1. 성남시

- 성남시는 일반상업 지구와 분당 테크노파크, 분당벤처타운 중심으로 게임, 콘텐츠, 모바일 등의 지식산업을 주도하는 다수의 정보서비스 기업이 자리 잡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개발과 인구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일반상업지구에 민간 벤처빌딩과 SK텔레콤연구소, 포스데이터 등의 대기업과 GNG 네트워크 IDC센터 및 전자부품 연구원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야탑동에 분당테크노파크, 정자동에 분당벤처타운이 조성되어 있음
- 성남시는 현장중심의 체납관리와 직접 대응 징수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체납액 징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징수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강력한 공매추진, 금융거래 제한,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체납차량에 대한 새벽과 야간영치 확대운영, 전 직원 징수책임제, 예금압류 확대 등을 바탕으로 현장중심의 체납관리와 직접 대응 징수활동을 수행함
 - 특히 체납액 징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인력 부족으로 인해 진행하지 못했던 지방세·세외수입원 과세자료에 대한 전면적인 대사와 정비작업이 체납기초 자료정비반을 통해 실시됨에 따라 정확하고 체계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징수활동을 수행함
-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기동단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징수활동과 체납처분을 수행하는 한편,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시민으로 구성된 체납실태전수조사반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며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한 공감세정을 병행함

1) 성남시 세외수입 현황

- 성남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지방세입 규모(2조 6,251억 원)와 자체수입 규모(1조 2,338억 원)를 가지고 있어, 지방 분권화 시대에 있어서 재정력이 높은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음¹⁷⁾

17)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2017년 당초 예산 기준으로 성남시의 세외수입 규모는 3,876억 원으로 유사지방자치단체 상위 3위 내에 자리하고 있으며, 지방세수입 역시 8,462억 원으로 경기도 내 대도시 중 가장 높은 규모를 보이고 있음
- 2016 회계연도 재정공시 결산 기준, 성남시의 총 세입은 3조 3,680억 원으로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액(2조 3,518억 원)보다 1조 162억 원 높으며, 자체수입 규모가 이전재원 규모보다 큼
 - 자체수입 규모는 1조 3,403억 원으로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액(8,964억 원)보다 4,439억 원이 많은 한편, 이전재원은 7,516억 원을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액(7,945억 원)보다 429억 원 적은 규모임
- 2016년 지방세 징수액은 8,745억 원으로 3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10.36%로 나타나며, 수원시 6.99%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임
 - 위례신도시 인구유입 및 기반시설 안정화, IT기업 및 벤처기업 입주 증가, 제2판교 테크노벨리 개발 등으로 자체세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¹⁸⁾
 - 판교, 위례 등 도시개발로 인한 부동산 거래 및 기업체 입주에 따라 지방소득세와 및 재산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4-1> 성남시 지방세 징수 추이

(단위: 백만 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6년 징수액		최근 평균증가율(%)
	2013	2014	2015	2016	비중(%)	
합 계	650,605	714,061	794,431	874,593	100	10.36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46,416	48,529	49,493	60,770	6.95	9.4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5,361	32,725	38,019	43,845	5.01	101.48
지방소득세	263,895	284,497	349,382	387,633	44.32	13.67
재산세	212,107	227,198	238,336	252,646	28.89	6.00
자동차세	114,181	112,770	114,842	119,475	13.66	1.52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년도수입	8,644	8,341	4,359	10,224	1.17	5.76

자료: 2017년 성남시 재정공시(2016년 결산기준)(성남시, 2017)

18) 2015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

- 성남시 세외수입 총 규모는 2016년 결산 기준, 약 4,503억 원¹⁹⁾으로 전체 지방세입의 약 13.4% 수준이며,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 규모는 1,501억 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세입의 7.2%를 나타냄
 - 2016년 결산기준으로 수원시보다 총 세외수입 규모 및 일반회계 세외수입 규모가 약간 크게 나타남(수원시 총 세외수입 4,114 억 원, 일반회계 세외수입 1,496억 원)
 - 수원시 세외수입이 총 지방세입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6%,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인 점을 감안할 때 총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성남시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세입인 일반회계 세입에서 세외수입의 위상은 수원시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일반회계 기준으로 전체 세입의 세외수입 징수액은 2014년 이후 최근 3년 간 증가추세에 있으며, 미수납액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14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항목이 세외수입으로부터 제외됨에 따라 세외수입의 절대 규모가 감소하였으나, 이후 부과액과 징수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미수납액은 지난 5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미수납액은 2015년(678억 원) 대비 123억 원 감소하였음
 - 다만, 세외수입 결손액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 결손처분과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임

<표 4-2> 성남시 세외수입 징수 추이(일반회계)

(단위: 백만 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부과액	404,216	534,553	201,156	220,063	223,401
징수액	309,388	448,275	115,896	138,360	150,165
결손액	10,973	4,460	10,524	13,883	17,763
미수납액	83,855	81,819	74,737	67,820	55,472
징수율	76.50%	83.90%	57.60%	62.90%	67.20%

자료: 경기도의회 (2017.8.8.)

- 성남시의 체납액 징수 실적은 지난 5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체납누계액은 2015년 체납누계액(1,568억 원) 대비 170억 원 감소하였음
 - 전국 최초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시스템을 통합하여 개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왔던 세외수입 징수업무를 일원화하고, 시민으로 구성된 소액체납 실태 조사반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체납기초자료를 효율적으로 확보함

19) 2016 지방재정연감 자료 기준

〈표 4-3〉 성남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 원)

구분	2015연말 체납누계액(A)	2016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계	156,778	139,778	-17,000
지방세	75,091	66,542	-8,549
세외수입	81,687	73,236	-8,451

자료: 2017년 성남시 재정공시(2016년 결산기준)(성남시, 2017)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규모는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개인 및 법인의 지방소득세 고액 체납비중이 높고, 미수납된 체납액(지난년도 수입) 또한 기업체의 부도·폐업 및 납세능력 저하 등에 원인이 있음²⁰⁾
 - 지방세 체납액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부담금 등이 주요 체납요인에 해당됨²¹⁾
 - 2016 지방재정분석보고서(행정안전부, 2016)에 따르면, 2015년 성남시 세외수입체납액(817억 원)중 차량 관련 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등)의 체납액이 329억 원으로 40.3%의 비중을 차지함
 - 2016년 7월 말 자동차세 체납액은 112억 원, 책임보험 미가입과 검사지연 등의 과태료 체납액은 303억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366억 원으로 집계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주차 관제 시스템을 시청사에 우선 도입하였음²²⁾

〈표 4-4〉 성남시 체납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 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210,045	186,109	176,918	156,778	139,778
지방세	115,130	99,842	91,674	75,091	66,542
세외수입	94,915	86,267	85,244	81,687	73,236
유사자치단체 평균	100,576	96,856	94,969	96,303	94,282

자료: 2017년 성남시 재정공시(2016년 결산기준)(성남시, 2017)

20) 2015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

21) 2017년 성남시 재정공시(2016년 결산기준)(성남시, 2017)

22) 성남시청사 입구서 체납차량 걸러내, 성남시 보도자료(2016.8.25)

2) 성남시 세외수입 관련 조례

- 성남시는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회계, 징수, 감사, 시정(조직) 영역과 사용료 및 수수료와 관련하여 기업경제, 교육, 문화 영역에서 연관된 조례 및 시행규칙, 예규 등을 조례로 갖추고 있음
 - 재무회계 및 징수와 관련하여 세외수입의 정의, 지방세 법규의 적용, 포상금과 내부통제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함
 - 행정기구 조례와 관련하여 세외수입 관련 조직의 구성과 사무분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체납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기타 주요 시설물 및 공공서비스 관련 조례에서는 세외수입으로서의 사용료 및 수수료의 납입, 환불, 변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표 4-5〉 성남시 세외수입 관련 자치법규 목록

분야	조례 및 규칙	관련내용
회계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2조 재정사항의 합의 제46조 지방세법규의 적용
징수	성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 정의
	성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3조 지급대상
감사	성남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규칙	제5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시정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8조 재정경제국에 두는 과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29조 세원관리과 제63조 과의 사무분장
기업 경제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지원 대상
	성남시 지하수 조례	제15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교육 및 문화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변상조치
	성남시 판교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세외수입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사용료의 납부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시스템

- 그 외 사용료와 관련하여 73개 조례 188개 항목, 수수료는 66개 조례 124개 항목이 있으며, 과징금 10개 조례 14개 항목, 과태료 관련 41개 조례 101개 항목, 부담금 31개 조례 98개 항목 등이 세외수입과 관련된 조례로 나타남

- 대부분 소하천 사용료, 상하수도, 폐기물, 공공시설물 이용 및 광고물 표시 관련 사용료, 수수료 및 과태료 등을 비롯하여 수입증지 및 제증명 수수료와 관련된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유사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하게 나타남
- 또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59개 조례 103개 항목이 있으며, 주요 조례로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그 외 공공시설물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과 관련된 조례는 유사지방자치단체와 공통적으로 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의 무상임대 및 대부, 공공시설물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성남시는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의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과 특허권의 공유재산화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공유경제촉진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활용을 활성화함
- 그 외 분담금, 청산금, 주차요금, 불용품, 체납처분 등과 관련하여 39여개 조례 및 시행규칙과 76개 관련 항목이 있음
 -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물품관리, 시세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유사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하게 나타나며, 각종 체납처분에 있어서 급여·기금의 환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표 4-6> 성남시 세외수입 주요항목별 자치법규 현황

(단위: 개)

구분	조례 및 시행규칙	관련내용 (조문/부칙/별표)	주요 조례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59	103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사용료	73	188	성남시 경관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 성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및 시행규칙, 성남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등
수수료	66	124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성남시 건축 조례,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성남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 성남시 수질검사 조례 및 시행규칙 등

구분	조례 및 시행규칙	관련내용 (조문/부칙/별표)	주요 조례
부담금	31	98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성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성남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성남시 집단 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성남시 지하수 조례 등
과징금	10	14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성남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규칙, 성남시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등
과태료	41	101	성남시 공공시설물 등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성남시 복권판매 관련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등
기타 (분담금, 불용품, 주차요금 등)	39	76	성남시 임시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성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성남시 북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취급 규칙, 성남시 공영개발 사업 회계 규칙, 성남시 물품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성남시 북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취급 규칙 등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시스템

- 또한, 최근 성남시는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세금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성남시 세외 수입 업무처리 및 책임관계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세외수입 책임관제를 도입하고, 부과액 책임징수, 세외수입 점검의 날 운영 등을 시행한 바 있음

3) 성남시 세외수입 관련 조직

-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조사 자료에 의하면 성남시는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전담 공무원 인력은 22명으로 조사되고 있음. 이하에서는 세외수입과 관련된 전반적인 조직 구성을 검토함
 - 수원시와 거의 유사한 규모의 세외수입에 대해 수원시 보다 큰 많은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 성남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조직은 재정경제국 내 세원관리과 및 세정과로 각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장 2명을 포함하여 총 69명의 담당자가 있음
- 징수 및 과징업무는 세원관리과에서 담당하며, 체납세 징수 관련 조직인 체납세징수팀과 세외수입체납징수팀이 각각 2팀씩 총 15명, 13명으로 운영되어 타 조직과 비교하여 많은 인원을 배정하고 있음
 - 2015년 5월 세정과 업무 중 세무조사 및 체납액 정리 업무를 분리하여 체납징수 및 세무조사 총괄부서인 징수과(현 세원관리과)²³⁾를 신설하고 87개 부서에서 담당했던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징수과로 일원화함
 -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징수기동반을 확대 편성하여 매일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를 실시하여 고질적인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함
 -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시민으로 구성된 체납실태전수조사반을 구성하고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여 체납내역을 안내하고 납부를 독려함
 -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 세원관리과 내에 세무조사팀이 징수팀과 함께 존재하는 구조로 세무조사 결과가 부과 및 징수업무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함

<표 4-7> 성남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유관 조직

조직명		인원	업무내용
세원관리과	세원관리팀	1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원관리 업무 전반 ○ 의회 및 주요업무, 체납 일반 ○ 기간제근로자 운영 업무 ○ 체납 기초자료 정비 ○ 실태조사반 운영 ○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징수 ○ 체납자 전화 징수독려 및 현장조사 자료정비
	세무조사팀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세무조사 ○ 세무조사분 행정소송 등 구제업무
	체납세징수팀 (총 2팀)	15명 (1팀: 3명 2팀: 1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세관리 징수 일반 ○ 체납세 징수 ○ 부동산공매, 출금금지, 징수책임제 ○ 자동차공매, 영치 ○ 지방세 결손, 가택수색, 제2차납세의무 ○ 고액체납자 징수독려

23) 2016년 9월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조직명		인원	업무내용
	세외수입체납징수 (총 2팀)	13명 (1팀: 6명, 2팀: 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외수입 체납 일반 ○ 세외수입 체납 징수 ○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 관리 ○ 고액체납자 징수독려
	주차과징팀	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과징 업무 ○ 추정차과태료 징수 ○ 차량(대체)압류해제 ○ 과태료 결손처분 ○ 고액체납자 징수독려
세 정 과	세정운영팀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세입예산추계 차량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취득세 관련 구제업무 처리 성과관리 ○ 구제업무, 징수통계, 등록면허세 ○ 예산, 회계, 물품, 공유재산, 서무, 제증명, 보안, 기록물
	시세운영팀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세, 조례개정 ○ 개별주택가격,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세입관리팀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관리팀 업무총괄 ○ 자금배정, 시금고관리 ○ 세외수입총괄
	지방세정보화팀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정보화팀 업무 총괄 ○ 지방세시스템 운영관리

자료: 성남시(www.seongnam.go.kr) 총괄조직도 재구성

- 한편, 성남시는 3개구의 50개 행정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구청에서는 세입 및 징수와 관련하여 세무과를 보유하고 있음
- 가장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구는 분당구로 총 52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세와 시세 업무를 세무1과와 2과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음
 - 징수업무는 세무2과에서 담당하며, 그 중 체납세징수팀의 인력이 7명으로 가장 많음
- 3개 구 모두 세무과 전체 인원 중 도세팀 인력이 가장 많게 나타남 (수정구 21.9%, 분당구 54.6%, 중원구 19.4%)
- 체납세 징수 인력은 5명~7명으로 유사하며, 세무과 전체 인원 중 분당구의 체납세징수 인력 비율(전체 52명 중 7명, 23.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8> 성남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유관 조직(구별)

(단위: 명)

팀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
	세무1과	세무2과	세무과	세무과
과표팀	2		3	3
도세팀	1팀	7	7	7
	2팀	5		
세무조사팀	1팀	3	3	5
	2팀	4		
시세팀	6		5	4
재산세팀	1팀		4	7
	2팀			
지방소득세팀	1팀		6	4
	2팀			
체납세징수팀	7		6	5
총 인원수	22		32	36

주1: 각 구청별 조직도 재구성

주2: 인원수: 각 과 및 구청별 소계는 각 과의 과장을 포함함

4) 성남시 세외수입 확충 주요 사례

(1) 체납액 징수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 세외수입과 지방세 체납업무를 최초로 통합하여 세외수입에 대한 부서·과목별 체납액을 개별 안내하는 기존 비효율적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전 세목에 대한 체납안내 방식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납부편의 서비스 확대 및 징수비용 예산절감에 기여함

 - 2015년 11월 2일 87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과태료, 부담금, 변상금 등의 세외수입 체납업무를 지방세 체납업무와 전국 최초로 통합함
 - 체납자의 유형을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납자 패턴에 따른 맞춤형 징수 활동을 수행함
 - 체납자별 자동차세, 재산세, 주정차 위반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변상금 등 체납 종류와 기간, 수납 패턴을 알 수 있음
 - 징수 담당 공무원은 단순 체납, 생계형 체납, 고질 체납 등의 유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체납자 사정에 따라 맞춤형 징수 활동이 가능함

- 2015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구축함
 - 1단계 : 미납/체납액 회계별 실시간 데이터 연계 및 통계관리 등
 - 2단계 : 고지서 발송정보 및 부과·수납정보 연계 등
 - 3단계 : 체납자별 유형분석 및 통계관리 활용 체납방지 서비스 구축
-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체납업무프로세스를 간소화함
 - 체납자의 자동차세·재산세 등 11종류의 지방세 체납액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변상금 등 108종류의 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 정리함
 - 체납자가 주거지와 가까운 관련 부서 한 곳에서 체납 사실을 열람하고 납부를 안내 받을 수 있어 체납 분야별로 담당 부서를 찾아 문의하거나 방문하던 불편을 해소함
- 세외수입 체납 통합 일원화 추진으로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수행하고 체납액 통합 안내 및 원-스톱 업무처리를 통한 납부편의 제공을 통해 세수증대에 기여함
 -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전국 확대 보급사업을 통해 9억 4천여만 원의 판매수익금이 기대되고 있으며, 체납액 통합안내문 발송에 따라 약 5억 원의 예산이 절감됨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실시간 체납액 통합관리 수납솔루션과 실시간 통합가상계좌 수납솔루션 등 2건의 저작권을 등록하여 저작권료 수입을 확보함
 - 다른 지자체가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발 비용의 10%를 저작권료로 개발용역업체인 (주)지비스를 통해 성남시에 지불해야 함
 - 체납액 통합관리 수납솔루션 저작권료(300만 원), 통합가상계좌 수납솔루션 저작권료(110만 원)임

〈표 4-9〉 성남시 체납액 징수 통합시스템 개요

체납액 통합 프로그램	체납징수 부서	주요 기능
세입통합관리시스템 -예산액 : 86,000천 원	징수와 통합 관리	-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 민원 안내 - 주요기능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 안내문 일괄 출력 . 회계별 전체 수납내역 조회 가능 . 부과사항 및 발송이력등 조회로 “원-스톱 체납액 안내” 가능

(2) 징수책임제 및 세외수입 책임관제의 실시

가. 징수책임제

- 2014년 세무직 공무원 1명당 체납자 50명을 지정해 세금납부를 독려하는 징수 책임제를 시행하여 지방세 징수 담당, 세외수입 징수 담당, 주정차 과태료 담당 등 분야별로 체납자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 심층 상담을 수행함
 - 세무 공무원이 체납자와 직접 소통해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의 어려움을 듣고 대안을 찾기 위해 도입함
- 2014년 기준 대상 체납액의 50%인 5억 9,800만 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하여 시청 세무 부서에 근무하는 37명의 공무원이 참여하여 체납자 1,850명(체납액 11억 9,600만 원)을 직접 면담함

나. 세외수입 책임관제 운영

- 성남시는 세외수입 책임관제와 부과액 책임징수, 세외수입 점검의 날 운영 등을 골자로 한 성남시 세외수입 업무처리 및 책임관제 운영 규정(이하 책임관제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세금관리를 총괄함
 - 시 세정과장을 총괄책임관으로 지정해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를 총괄 지원·관리하도록 하여 시·사업소·구·동 각 부서에서 개별법령에 따라 부과하던 150여 종의 세외수입 세금관리를 총괄함
 - 본청·사업소의 경우 세외수입 부과부서의 팀장이 징수책임관을 맡고 구의 경우 세무과장(분당구는 세무2과장)이 징수책임관을 담당함
 - 세외수입 부과부서의 장들은 세외수입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절차이행 및 관리를 담당함
 - 담당자의 인사이동이나 업무비중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여 현 연도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고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함
 -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은 세외수입 점검의 날로 정해 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관리 등 업무전반에 대해 점검함

(3) 체납실태 시민조사반 운영

- 전국 최초 시민으로 구성된 ‘소액체납자 전수실태조사반’ 운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사유 등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체납유형별 징수대책 마련 등 체계적인 체납관리로 징수율을 제고함
 - 2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사유조사 및 납부안내, 자료정리를 비롯하여 생계형 체납자들의 분납 및 복지기관 연계 등을 주요 업무로 함

담당	업무	세부 분장 사항
체납실태조사반 (70명)	현장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5-30건 방문(부재시 안내문 부착) ○ 조장에게 당일 실적 보고
전화민원처리반 (공무직 조장4명)	전화 징수 독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복명서 데이터 정리 ○ 당일 면담자 가상계좌 안내 및 납부독려 ○ 관외 체납자 전화 독려
체납자료정비반 및 서무 (10명)	친절모니터링 체납자료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원 현장방문지에 대한 친절 모니터링 실시 ○ 일일 면담 및 징수실적 자료정리

<그림 4-1> 체납실태 시민조사반 운영현황

- 2015년 5월 시민 88명 구성을 시작으로 2016년 100여 명의 실태조사원이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121억 원 징수, 예산액 대비 417% 성과를 달성함(2015년 88명 → 2016년 100명 → 2017년 94명으로 구성)
 - 시행 첫 해인 2015년 2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 22만 3,771명 중 18만 5,228명을 방문하여 상세한 납부홍보와 체납자 상황에 맞는 민원응대로 17만 2,750건의 체납액이 자진 납부됨
 - 체납자의 현장상황을 직접방문하고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생계형 체납자 130가구를 복지기관에 연계함으로써 생계형체납자와 상습체납자에 대한 차별화된 징수기법을 마련함

2. 용인시

- 용인시는 경기도 최다 규모의 대학(13개)과 연구소 및 연구원이 분포되어 있으며, 에버랜드, 한국민속촌을 비롯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이 문화시설이 다수 입지하고 있어 정상적 세외수입 규모가 큼
 - 경부·영동, 제2경부,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등의 고속도로와 분당선 연장, 광역순환선 전철 및 경전철 등으로 교통여건이 양호하여 수도권 및 광역교통 접근성이 높으며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용인시의 경상적 세외수입 규모는 2,090억 원으로 도내 유사자치단체 중 4위에 해당하며 전체 세외수입(2,630억 원) 중 79.5%에 해당함²⁴⁾
- 비교적 이른 시기에 세외수입을 전담하는 조직인 세외수입체납팀이 마련되었으며 현재 유관조직 전체 인원 중 53.1%에 달하는 26명의 담당자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다양한 납부 채널을 구축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의 납세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징수 측면에서 소액체납에도 관심을 기울임에 따라 소액체납의 장기화를 방지함

1) 용인시 세외수입 현황

- 용인시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유사자치단체보다 평균적으로 지방세입규모와 공유재산보유액 등이 큰 편에 속하며 2016년 지방채무해소를 통해 건전재정 여건을 확립함
 - 2017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용인시의 자체수입비중은 전체 지방세입규모(1조 8,716억 원)의 57.0%인 1조 673억 원이며, 이 중 지방세 수입은 8,043억 원으로 유사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2위에 해당함
 - 2016년 회계연도 재정공시 결산 기준, 용인시의 총 세입은 2조 6,243억 원으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2조 3,518억 원)보다 2,725억 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8,964억 원)보다 2,833억 원 많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7,945억 원)보다 120억 원 많은 규모임
- ‘2017년 경기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에서 세외수입·지방세정 운영·세무조사 등 3개 분야에서 수상하였음
 - 세외수입 분야(최우수상)에서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신규 세외수입 발굴, 특수시책 추진 등에서 높은 평가를 획득함
 - 지방세정 운영에서는 현대자동차 취득세 소송 등 8건의 행정소송 승소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세무조사 평가에서는 기업 대상의 찾아가는 세무 컨설팅제 시행, 세원 발굴과 자주재원 확충 노력 등에서 인정받음
- 2016년 지방세 징수액은 8,369억 원으로 3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7.59%로 수원시 6.99%를 상회하고 있음
 - 15개 도시개발사업과 1개의 택지개발사업²⁵⁾으로 부동산 시장 및 경제 활성화가

24) 2017년 당초 예산총계 기준

25) (도시개발) 기흥역세권, 역북1,2, 신봉, 신봉2, 동천2,3, 상현, 역삼, 이동송전, 남사아곡, 모현왕산, 양지주북, 신대, 보정, (택지개발) 광교지구

기대되고 있으며, 역북지구와 기흥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추진에 따라 인구유입이 늘면서 자체세입의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²⁶⁾

- 최근 3년 간 주민세와 재산세, 담배소비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소득세의 규모는 2015년 대비 188억 원 감소하였음

<표 4-10> 용인시 지방세 징수 추이

(단위: 백만 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6년 징수액		최근 평균증가율(%)
	2013	2014	2015	2016	비중(%)	
합 계	671,918	725,129	796,343	836,878	100	7.59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35,280	37,643	39,494	49,257	5.89	11.77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5,807	25,991	28,297	33,069	3.95	78.58
지방소득세	254,035	261,657	334,014	315,170	37.66	7.45
재산세	237,706	247,092	255,540	268,074	32.03	4.09
자동차세	125,535	139,534	126,541	151,050	18.05	6.36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년도수입	13,556	13,212	12,458	20,258	2.42	14.33

자료: 2017년 용인시 재정공시(2016년 결산기준)(용인시, 2017)

- 용인시 세외수입 총 규모는 2016년 결산 기준, 약 3,406억 원²⁷⁾으로 전체 지방세입의 약 13.0% 수준이며,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 규모는 1,473억 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세입의 약 7.1%를 나타냄
 - 수원시 보다 총 세외수입 규모는 다소 작게 나타나고 있지만 일반회계 세외수입 규모는 거의 유사한 수준임
 - 수원시 총 지방세입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다소 작게 나타나지만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원시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26) 2015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

27) 2016년 지방재정연감 자료 기준

- 세외수입 징수액은 2015년까지 감소추세에서 2016년 소폭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 간 징수율은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음
 - 2014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세외수입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2016년 이후 부과액과 징수액이 증가하였음
 - 2015년 미수납액이 전년도인 2014년(756억 원) 대비 121억 원 증가하였으나, 2016년 780억 원으로 감소하였으며, 결손액은 2016년 125억 원으로 2014년(581억 원)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표 4-11> 용인시 세외수입 징수 추이(일반회계)

(단위: 백만 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부과액	475,378	571,249	289,556	234,660	237,818
징수액	344,929	409,458	155,847	139,870	147,316
결손액	22,497	24,262	58,107	7,099	12,493
미수납액	107,952	137,529	75,603	87,691	78,009
징수율	72.60%	71.70%	53.80%	59.60%	61.90%

자료: 경기도의회(2017.8.8.)

- 용인시의 체납액 징수 실적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체납누계액은 2015년 체납누계액(1,792억 원) 대비 77억 원 감소하였음
 - 지역적인 부동산 침체로 재산세(38%),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지방소득세(37%) 및 자동차세(23%) 체납이 전체 체납의 98%를 차지하고 있음²⁸⁾

<표 4-12> 용인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5연말 체납누계액(A)	2016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79,204	171,474	-7,730
지방세	84,414	80,972	-3,442
세외수입	94,790	90,502	-4,288

자료: 2017년 용인시 재정공시(2016년 결산기준)(용인시, 2017)

- 연도별 체납액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개발사업 부진으로 부도·폐업 법인 증가와

28) 2017년 용인시 재정공시(2016년 결산기준) (용인시, 2017)

개인 납세자의 체납증가로 인해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체납액이 많은 실정임

- 용인시는 맞춤형 체납징수 대책으로 압류된 신탁재산 공매, 생활실태조사에 기초한 선별적 가택수사 및 자동차 공매 등으로 체납정리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세외수입 체납액 규모는 2016년 905억 원으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 주민들의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2012년 9월 세입통합 간편납부시스템을 구축하고, 납부방법의 다양화(방문·카드·전화납부 등)를 모색함
 - 2014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시, 체납액 일제정리 범위를 세외수입 과년도 이월체납액에서 현년도 및 도 세외수입 체납액으로 확대함
 - 2017년 3월부터 표준세외시스템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포함하여 체납액 징수 효율화를 도모함

<표 4-13> 용인시 체납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239,789	252,714	213,220	179,204	171,474
지방세	109,339	90,923	79,511	84,414	80,972
세외수입	130,449	161,791	133,709	94,790	90,502
유사자치단체 평균	100,576	96,856	94,969	96,303	94,282

자료: 2017년 용인시 재정공시(2016년 결산기준)(용인시, 2017)

2) 용인시 세외수입 관련 조례

- 세외수입과 관련한 용인시는 회계, 징수, 감사, 시정(조직) 영역과 사용료 및 수수료와 관련하여 문화/관광 영역에서 연관된 조례 및 시행규칙, 예규 등이 있음
 - 재무회계 및 징수와 관련하여 세외수입의 정의, 지방세 범규의 적용, 포상금과 내부 통제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며, 예산절감 및 세입확충과 관련하여 제안제도와 성과급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
 - 기타 주요 문화시설 관련 조례에서는 세외수입으로서의 사용료 및 수수료의 납입, 환불, 변상 등에 관한 내용과 시설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표 4-14〉 용인시 세외수입 관련 자치법규 목록

분야	조례 및 규칙	관련내용
회계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2조 재정사항의 합의 제46조 지방세 법규적용
예산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보조신청 제15조 교부결정
	용인시 예산 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9조 상여금의 지급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제12조 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징수	용인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 지급대상
시정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8조 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교육 및 문화	용인시 용인농촌테마파크 운영 조례	제15조 수익금처리
	용인시 용인문화유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세외수입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 위탁관리 및 운영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사용료의 납부·반환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시스템

- 그 외 사용료와 관련하여 51개 조례 129개 항목, 수수료는 47개 조례 105개 항목이 있으며, 과징금 10개 조례 13개 항목, 과태료 관련 25개 조례 41개 항목, 부담금 24개 조례 84개 항목 등이 세외수입과 관련된 조례로 나타남
 - 대부분 소하천, 상하수도, 폐기물, 공공시설물 이용 및 광고물 표시 관련 사용료, 수수료 및 과태료 등을 비롯하여 수입증지 및 제증명 수수료와 관련된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유사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조례 및 관련항목의 개수가 비교적 적음
 - 한편, 용인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를 통해 외부에 의뢰하였던 먹는물 수질검사를 시에서 실시함에 따라 예산절감과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였으며, 수질 검사에 대한 공신력 및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함
- 또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42개 조례 88개 항목이 있으며,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그 외 공공시설물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공통적으로 공유재산 관리, 각 재단 및 단체에 대한 공유재산의 무상임대 및 대부, 공공시설물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성남시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의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과 특허권의 공유재산화를 명문화하고 있음

- 그 외 분담금, 청산금, 주차요금, 불용품, 체납처분 등과 관련하여 40여개 조례 및 시행규칙과 62개 관련 항목이 있음
 -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물품관리, 시세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대동소이하게 나타나며, 각종 체납처분에 있어서 급여·기금의 환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표 4-15> 용인시 세외수입 주요항목별 자치법규 현황

(단위: 개)

구분	조례 및 시행규칙	관련내용 (조문/부칙/별표)	주요 조례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42	88	용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사용료	51	129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용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용인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조례, 용인시 상징물 조례,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용인시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및 시행규칙 등
수수료	47	105	용인시 건축 조례 및 시행규칙, 용인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용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용인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 용인시 수입증지 조례,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부담금	24	84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용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등
과징금	10	13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용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용인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에 관한 규칙, 용인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 등
과태료	25	41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용인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용인시 어린이놀이

구분	조례 및 시행규칙	관련내용 (조문/부칙/별표)	주요 조례
과태료	25	41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용인시 지역보건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용인시 주택 조례 등
기타 (분담금, 불용품, 주차요금 등)	40	62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용인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용인시 시세 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 용인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등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시스템

3) 용인시 세외수입 관련 조직

-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조사 자료에 의하면 용인시는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전담 공무원 인력은 17명으로 조사되고 있음. 이하에서는 세외수입과 관련된 전반적인 조직 구성을 검토함
 - 수원시보다 작은 규모의 세외수입에 대해 수원시와 유사한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 용인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조직은 기획재정국 내 세정과 및 징수과로 각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명의 과장을 포함하여 총 49명의 담당자가 있음
- 크게 세무관리 및 조사를 담당하는 세정과와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징수과로 구분되어 있으며, 징수과는 사실상 체납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특징임
- 징수과 내 세외수입을 전담하는 세외수입체납팀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 2012년 9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전문적인 체납징수를 위한 세외수입체납팀이 신설되었으며, 이는 2014년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전담조직 설치 추진 시기보다 이른 대응임
 - 세무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세무직 및 민간추심 전문요원을 계약직으로 선발하고 징수활동을 추진함
 - 설치 이전년도인 2011년과 비교하여 설치 다음해인 2013년 세외수입 체납징수액은 124억 원에서 182억 원으로 약 47%의 증가율을 보인 바 있음

〈표 4-16〉 용인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유관 조직

조직명		인원	업무내용
세 정 과	세정팀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전망 및 세수추계, 세정운영평가, 지방세조례개정 ○ 통계, 지방세 및 국세 수납월보, 과세자료 통보 및 일일결산 ○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과표 운영, 지방세부과운영, 지방세 질의회신, 도시지역분고시
	자금관리팀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배정관리, 세외수입 세수추계, 금고 및 수납대행점 검사 ○ 세입금, 채권 관리 및 결산 용인시 수수료등 조례, 금고운용조례 제·개정 ○ 수입증지관리, 변상금 부과·징수 ○ 세외수입 일계표 작성 및 징수상황 보고 ○ 세외수입, 의존재원 징수 및 과오납환부
	세무조사팀	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무조사 ○ 지방세 컨설팅
	세무전산팀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 ARS납부시스템 및 무인수납기 운영 ○ 용인시 세금납부 홈페이지 관리 ○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권한 부여 ○ 카드수납시스템(세입통합 포인트 자유결제)운영 ○ 체납차량 알리미 시스템 운영
징 수 과	체납행정팀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행정 (계획수립, 보고회운영, 구청 체납세 관리, 체납평가 등) ○ 조례, 회계, 감사, 징수포상금 지급업무 ○ 기록물관리, 체납월보, 고액체납자명단공개, 공공기록등재
	체납관리팀	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재산, 기타채권, 소송, 관허사업제한 ○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일반 실익분석 ○ 고액체납자 징수독려 관련 분야 소송 ○ 경매 교부청구 및 배당금 수령 ○ 급여채권, 매출채권, 신탁부동산, 예금압류 및 추심 ○ 등록면허세(면허분), 제증명
	체납기동팀	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칙행위자 고발 및 처벌, 출국금지, 소송수행 ○ 고액체납자징수독려 (현장독려 포함) ○ 도광역체납처분반 운영 ○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관리 ○ 대여금고/동산 압류 및 공매, 공탁금 압류 및 수령 ○ 회생 및 파산 채권 관리 ○ 결손처분, 결손사후관리(정기 재산조회 및 압류) ○ 자동차 압류 및 공매, 번호판영치
	세외수입체납팀	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사업소 책임관리 ○ 책임징수제운영 ○ 세외수입체납일반(계획), 세외수입체납월보, 결손처분, 정부 합동평가 ○ 고액 체납자 징수, 관허사업 제한, 행정제재 ○ 세외수입 체납징수,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발송 ○ 기타채권, 매출채권, 급여, 공탁금, 동산, 예금 및 차량, 부동산 (저당권, 신탁수익권 등)압류 및 공매, 실익분석(실과소관리) ○ 채권 교부청구 및 회생·파산 채권신고, 체납처분 유예

자료: 용인시(<https://www.yongin.go.kr>) 조직도 및 부서업무안내 재구성

- 한편, 용인시는 3개구 24개 행정동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각 구청에서는 세입 및 징수와 관련하여 1개의 세무과를 보유하고 있음
- 3개구 모두 세무업무와 관련하여 31~35명 사이의 유사한 수준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세와 재산세, 체납세징수팀 인력은 전체 세무과 인력 중 17~20%로 10% 전후의 다른 팀과 비교할 때 비교적 많은 인력을 보유함
- 체납세징수 인력은 기흥구와 수지구가 6명으로 동일하고 처인구의 체납세징수팀이 9명(전체 세무과 인력 중 24.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7> 용인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유관 조직(구별)

(단위: 명)

	기흥구청	수지구청	처인구청
도세팀	6	6	6
세원관리팀	3	-	3
세입관리팀	3	4	4
시세팀	5	4	4
재산세팀	6	6	7
지방소득세팀	5	4	3
체납세징수팀	6	6	9
총 인원수	35	31	37

주1: 각 구청별 조직도 재구성

주2: 인원수: 각 과 및 구청별 소계는 각 과의 과장을 포함함

4) 용인시 세외수입 확충 주요 사례

(1) 세입통합 간편납부시스템의 구축

- 용인시는 2012년 통합 간편납부시스템을 구축하여 각각 부과와 수납을 담당하던 6개 세목별 시스템을 통합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함
 -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을 통합조회 및 납부할 수 있는 ARS 납부시스템 구축, 무인수납기 설치, 스마트 청구서 발송 및 세외수입 카드결제 서비스를 실시함
 - 세외수입, 주정차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요금 등의 과세내역에 대한 조회·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인이 간과할 수 있는 체납·과태료

등을 안내하고 일괄 또는 선택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세 과오납 환급, 자동차세 연납 신청 등 각종 세무업무를 제공함

- 2013년 경기도 세입관리 연구대회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세입통합 간편납부시스템 운영 보고회」에서 우수시스템으로 채택되어 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를 제공함

〈표 4-18〉 세입통합 간편납부시스템 수납실적(2012.9~2013.12)

(단위: 건/백만 원)

시스템명	수납실적
합계	38,187/10,311
ARS 납부시스템	30,905/8226
무인수납기	3,390/1,532
스마트 청구서	401/51
용인시 세금납부 홈페이지(tax.yongin.go.kr)	3,491/502

자료: 용인시 민선5기 시정백서(용인시, 2014)

(2) 세외수입 체납팀 및 직원 책임관리제 운영

- 용인시는 2012년 세외수입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세외수입 체납팀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체납 관리 및 일체 정리를 실시함
 - 세외수입 체납팀은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던 세외수입 체납액을 매년 연도폐쇄기 이후 이관 받아 체납액을 통합관리하며, 각 실·과·소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고지서 발송, 체납처분(압류)등을 일괄처리함
 - 체납업무 담당자들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함
 -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 도입 및 채권추심 경력직 지방임기제 공무원을 활용한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정리가 크게 향상됨
 - 체납액 일체 정리기간 운영, 부서별 체납액 상시 관리체계 구축, 세외수입 체납 담당자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등을 개최함
- 세무부서 전 직원과 6급 이상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책임징수제를 시행하여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현장 징수활동을 수행함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고액채납자 대상으로 가택 수색과 부동산 압류 및 공매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수행함
- 이러한 책임징수제 도입을 통해 개별 특성과 체납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체납 처분을 실시함
- 2017년 하반기 세외수입체납팀 직원들이 부서별 체납관리 실태를 점검·지도하는 '직원 책임관리제'를 중점 운영하여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장기체납 발생을 사전 차단함

(3) 예산절감 아이디어 발굴 및 인센티브 지원

- 2016년 예산절감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우수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담당부서에 2,000여 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함
 - 고도정수처리장 공법변경, 동천동~죽전동 고속도로 통로암거 개선, 결손채납자 체납액 현금납부, 용인·광주 공동취수장 운영비 절감 등 5개 사업을 우수사업으로 선정함(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액 총 84억 원)
 - 읍·면지역 테마파크, 연수원, 골프장 등 대규모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5억여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함
 - 2014년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으로부터 제외되어 있던 읍·면지역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과근거를 지자체 최초로 마련함
 - 또한, 체납능력이 없는 결손채납자에 대해 제3자의 재산을 담보로 체납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6억 원의 수입증대 성과를 거둠

3. 화성시

- 화성시는 경기도 내 제조업 사업체수 1위 도시로 삼성반도체 및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이 다수 위치하고 있으며, 동탄신도시 등의 개발사업에 따른 인프라 확충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도농복합도시로 시 본청 내에 세정과 및 징수과에서 도세와 시세를 모두 담당하고 있으며, 전략기획과 일반관리를 전담하는 세정정책팀과 징수정책팀을 운영하고 있음
- 세외수입 체납과 관련하여 사무인수인계 지침을 두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체납징수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1) 화성시 세외수입 현황

- 화성시는 수원시(50.9%)와 비교하여 자체수입 비중이 높고(58.6%) 이 중 지방세 규모는 8,033억 원(자체수입 중 74.6%)으로 유사지방자치단체 중 3위에 위치함²⁹⁾
 - 도시개발 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인구 유입(최근 10년간 인구증가 전국 1위), 규제 완화 및 적극적인 기업유치 정책을 통해 기업체가 증가하여 지방세 규모가 높게 나타남
 - 2016년 회계연도 재정공시 결산 기준, 화성시의 총 세입은 2조 7,297억 원으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2조 3,518억 원)보다 3,779억 원 많으며, 자체수입 규모가 이전 재원 규모보다 높음
 -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8,964억 원)보다 2,584억 원이 많은 반면,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7,945억 원)보다 1,247억 원 적음
 - 또한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809억 원)보다 809억 원 적고, 시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102천 원)보다 102천 원 적어 상대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음
- 2016년 지방세 징수액은 8,301억 원으로 3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15.66%로 수원시 6.99%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임
 - 특히 2015년에는 인구수 및 기업체 수 증가 등으로 인해 지방세 부과 규모가 2014년 대비 1,796억 원(약 30%) 증가하여 징수 여건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징수율은 동종평균인 94.69%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³⁰⁾

29) 2017년 당초예산 기준

30) 2015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

- 지방세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공정·공평 과세 체계를 확립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수행하였으며, 신속한 채권확보 및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여 체납을 최소화함

<표 4-19> 화성시 지방세 징수 추이

(단위: 백만 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6년 징수액		최근
	2013	2014	2015	2016	비중(%)	평균증가율(%)
합 계	536,558	634,066	803,655	830,066	100.00	15.66
취득세	0	0	0	0	0.00	0.00
등록면허세	0	0	0	0	0.00	0.00
레저세	0	0	0	0	0.00	0.00
담배소비세	34,911	38,801	42,816	54,765	6.60	16.19
지방소비세	0	0	0	0	0.00	0.00
주민세	6,415	40,323	46,802	56,629	6.82	106.67
지방소득세	243,560	279,559	432,291	407,866	49.14	18.75
재산세	165,613	179,675	189,758	207,197	25.20	8.10
자동차세	79,108	86,374	83,909	93,106	11.22	5.58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00	0.00
지방교육세	0	0	0	0	0.00	0.00
지난년도수입	6,952	9,333	8,079	8,504	1.02	6.95

자료: 2017년 화성시 재정공시(2016년 결산기준)(화성시, 2017)

- 화성시의 세외수입 총 규모는 2016년 결산 기준, 약 3,233억 원³¹⁾으로 전체 지방세입의 11.8%를 차지하고 있어 규모나 지방세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원시 보다 전반적으로 낮음
 - 다만 일반회계 세입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7.8%³²⁾로 수원시(7.0%)와 성남시(7.2%), 용인시(7.1%)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여 재원 안정성 측면에서 우수함
- 화성시의 세외수입 징수액과 징수율은 최근 3년 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4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항목이 세외수입으로부터 제외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세외수입 규모가 감소하였으나, 이후 부과액과 징수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다만, 세외수입 결손액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미수납액 규모 역시 큰 변동이 없어 결손처분에 대한 개선과 체납처분 및 강력한 징수활동이 요구됨

31) 2016년 지방재정연감 자료 기준

32) 2017년 지방재정공시(2016 회계연도) 자료 기준

<표 4-20> 화성시 세외수입 징수 추이(일반회계)

(단위: 백만 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부과액	336,944	396,667	162,338	215,825	228,725
징수액	271,878	332,684	98,798	147,013	162,036
결손액	3,123	11,415	2,739	6,574	15,109
미수납액	61,943	52,568	60,802	62,238	51,580
징수율	80.70%	83.90%	60.90%	68.10%	70.80%

자료: 경기도의회 (2017.8.8.)

- 화성시는 2016년 체납누계액은 1,159억 원으로 2015년 대비 26억 원 감소하였으며, 이 중 세외수입이 21억 원 감소하여 자체수입 증대에 기여함

<표 4-21> 화성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5연말 체납누계액(A)	2016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18,564	115,928	△2,636
지방세	49,752	49,239	△513
세외수입	68,812	66,689	△2,123

자료: 2017년 화성시 재정공시(2016년 결산기준)(화성시, 2017)

- 이와 같은 화성시의 세외수입 체납징수 노력으로 경기도가 주관한 2017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에서 1그룹³³⁾ 내에서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으나, 체납액 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여전히 높은 규모를 보임
 - 경기악화에 따른 기업체의 부도·폐업 등이 증가하고 있어 납세자의 채무부담 증가 및 납세능력 저하로 인한 고질 체납액이 증가함

<표 4-22> 화성시 체납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98,983	103,675	107,790	118,564	115,928
지방세	33,917	39,692	44,249	49,752	49,239
세외수입	65,066	63,983	63,541	68,812	66,689

자료: 2017년 화성시 재정공시(2016년 결산기준)(화성시, 2017)

33)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세수 규모 기준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체납액 정리 실적, 신규 세원 발굴과 특수 시책운영 등 세외수입 운영 전반을 각 그룹별로 평가하고 있음

2) 화성시 세외수입 관련 조례

-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화성시는 회계, 징수, 감사, 시정(조직) 영역과 사용료 및 수수료와 관련하여 지역경제 및 문화/관광 영역에서 연관된 조례 및 시행규칙, 예규 등이 있음
 - 재무회계 및 징수와 관련하여 세외수입의 정의, 지방세 법규의 적용, 금고의 지정, 포상금과 내부통제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함
 - 세외수입의 체납과 관련하여 사무인수인계 지침을 됴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인 행정사무를 도모함
 - 행정기구 조례와 관련하여 세외수입 관련 조직의 구성과 사무분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는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함
 - 기타 공공녹지와 주요 문화시설 관련 조례에서는 세외수입으로서의 사용료 및 수수료의 납입, 환불, 변상 등에 관한 내용과 시설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표 4-23> 화성시 세외수입 관련 자치법규 목록

분야	조례 및 규칙	관련 내용
회계	화성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22조 재정사항의 합의 제48조 지방세법규의 적용
	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제4조제2항 관련)
예산	화성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보조신청 제15조 교부결정
징수	화성시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무인계인수 지침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 정의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의회법무	화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감사	화성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시정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 징수과 제58조 과의 분장사무 제64조 과의 분장사무 제67조 과의 분장사무
기업경제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7조(예산의 지원)
농정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용자금 상환
여성가족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수수료 등의 징수
산림녹지	화성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원인자 부담금 (제16조제7항 관련)
안전정책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제15조 준용

자료: 화성시 자치법규 원문열람시스템(<http://jachilaw.com/GG-HS2>)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 그 외 사용료와 관련하여 63개 조례 192개 항목, 수수료는 48개 조례 102개 항목이 있으며, 과징금 9개 조례 13개 항목, 과태료 관련 31개 조례 87개 항목, 부담금 28개 조례 107개 항목 등이 세외수입과 관련된 조례로 나타남
 - 유사지방자치단체와 공통적으로 소하천 사용료, 상하수도, 폐기물, 공공시설물 이용 및 광고물 표시 관련 사용료, 수수료 및 과태료 등을 비롯하여 수입증지 및 제증명 수수료와 관련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이 있음
- 또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44개 조례 93개 항목이 있으며,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화성시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 조례 등 그 외 공공시설물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과 관련된 조례는 유사지방자치단체와 공통적으로 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의 무상임대 및 대부, 공공시설물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그 외 분담금, 청산금, 주차요금, 불용품, 체납처분 등과 관련하여 42개 조례 및 시행규칙과 75개 관련 항목이 있음
 -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물품관리, 시세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유사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하게 나타나며, 각종 체납처분에 있어서 급여·기금의 환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표 4-24> 화성시 세외수입 주요항목별 자치법규 현황

(단위: 개)

구분	조례 및 시행규칙	관련내용 (조문/부칙/별표)	주요 조례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44	93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화성시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 조례,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사용료	63	192	화성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화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화성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화성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 화성시 읍·면·동 종합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구분	조례 및 시행규칙	관련내용 (조문/부칙/별표)	주요 조례
수수료	48	102	화성시 건축 조례, 화성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화성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화성시 농기구 수리센터 설치 운영 조례, 화성시 의회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
부담금	28	107	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 화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화성시 도로복구 원인자의 비용 부담금 징수 조례,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화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및 시행규칙 등
과징금	9	13	화성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 화성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등
과태료	31	87	화성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화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화성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화성시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시행규칙 등
기타 (분담금, 불용품, 주차요금 등)	42	75	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화성시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및 시행규칙, 화성시 조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등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시스템

3) 화성시 세외수입 관련 조직

-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조사 자료에 의하면 화성시는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전담 공무원 인력은 유사 자치단체보다 다소 적은 10명으로 조사되고 있음³⁴⁾. 이하에서는 세외수입과 관련된 전반적인 조직 구성을 검토함
- 화성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조직은 자치행정국 내 세정1, 2과 및 징수과로 총

34) 화성시에 대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담 공무원이 세외수입 업무를 평균 전담한 기간은 화성시(17개월)가 성남시(10개월)와 용인시(15개월)보다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나 세외수입 전담 인력은 적지만 업무 전문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12개 팀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과장 3명을 포함하여 총 81명의 담당자가 있음

- 별도의 구청이 없으므로 세정과가 시세와 도세와 관련하여 2과로 분리되어 있으며, 시세팀과 도세팀은 지역별로 2팀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음
 - 전략기획과 일반관리를 전담하는 세정정책팀과 징수정책팀을 운영하고 있는 특성이 있음
 - 지방세의 경우 체납관리팀은 압류 및 납부안내를, 체납징수기동팀은 현장 관리 및 과년도 체납자 통합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세외수입은 계획, 관리, 징수를 한 팀에서 수행하는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세외수입의 추진계획과 관리를 전담하는 세외수입관리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세외수입체납징수팀은 징수업무에 집중함
- 단, 전산업무를 총괄·전담하는 조직은 부재하며, 각 관련부서에서 정보보안, 세외수입 시스템 등을 각각 담당하여 활용하고 있음

<표 4-25> 화성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유관 조직

조직명		인원	업무내용
세 정 1 과	세정정책팀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 ○ 지방세 전산운영, 세수추계, 조례
	시세팀 (총 2팀)	11명 (1팀 6명, 2팀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재산세,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 재산조회 ○ 지역별 주민세 재산분, 균등분, 종업원분 ○ 지역별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과표팀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개별주택평가 ○ 부동산평가위원회 관리
	지방소득세팀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특별징수분,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세 정 2 과	도세팀 (총 2팀)	11명 (1팀 5명, 2팀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세 징수목표 설정 및 관리 ○ 세수추계, 지출예산제도 ○ 기록물관리, 정보보안 (개인정보) ○ 지역별 취득세 부과 및 비과세·감면 ○ 등록면허세(면허분), 지역자원시설세 ○ 취득세(농지) 현지조사 및 사후관리 ○ 위택스 승인, 신고서 정리
	세무조사팀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조사 목표설정 및 관리 ○ 법인 세무조사, 과점주주 세무조사 ○ 세무조사대상 법인 명부 관리 ○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 법인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 시스템 운영

조직명		인원	업무내용
징수과	차량세무팀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취득세 이의신청, 조세심판 ○ 차량 및 (건설)기계장비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취득세 직권고지 ○ 취득세 감면통지, 세입경정, 감면사후관리 ○ 법인 세무조사 부과
	징수정책팀	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 지방세 과오납 환급 ○ 지방세(수납, 징수월보), 세외수입(수납, 월보) ○ 서무, 신용카드 납부 ○ 자금관리 및 금고관리 ○ 우편업무 및 문서접수 ○ 지방세 고지서 시기분 전산입력
	지방세 체납관리팀	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 부동산, 급여, 예금 압류 및 해제, 환급금 압류 및 해제 ○ 경.공매 교부청구 및 배당금 수령 ○ 관허사업 제한 ○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 ○ 납세증명서 업무
	지방세 체납징수기동팀	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심팀운영, 결손관리 ○ 고액체납자 관리(출국금지 및 정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과년도 체납자 통합관리 ○ 체납징수 및 관리
	세외수입관리팀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외수입관리종합추진계획수립 ○ 세외수입 연감통계, 세외수입결산 ○ 세외수입시스템 운영관리 ○ 세외수입가상계좌 및 ARS수납시스템 관리
	세외수입 체납징수팀	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 ○ 고액체납자 현장방문 ○ 부동산통장 압류해제 ○ 자동차번호판 영치

자료: 화성시(<http://www.hscity.go.kr>) 행정조직안내 재구성

4) 화성시 세외수입 확충 주요 사례

(1) 고액상습체납자를 중심으로 한 현장중심 체납징수

- 2015년 현장 중심의 세외수입 체납징수 계획을 수립하고 고액·상습체납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함
 - 고액고질 체납정리 추심전문담당자를 채용하여 금융기관 등 채권추심 노하우를 도입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유형별 추적조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보조금 신청 접수시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및 보조금 교부 제한 규정을 「화성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명시 개정하여 2015년부터 시행함

(2) 세외수입 징수 및 납부 편의성 확대

- 2014년 세외수입 ARS 통합납부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세외수입 징수를 제고를 도모함
 - 세외수입 종류에 상관없이 ARS를 통해 세외수입을 24시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로 주차차위반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종류별로 납부방법이 달라 발생하는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방문 납부나 인터넷 사용이 힘든 납세자를 위한 대체수단으로 사용이 익숙한 전화를 납부 수단으로 활용했으며, 업무시간 이외에도 납부가 가능함
-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통해 지방세외수입의 행정오류를 예방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 기존 새울행정시스템과 세외수입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새울행정시스템에 도로점용허가 사항이 입력되어도 세외수입에서는 도로점용료 부과가 누락된 경우가 다수 발견되는 문제가 존재하였음
 - 시스템 도입을 통해 일일이 자료를 대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누락된 자료가 추출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누락세원 발굴이 용이해짐

4. 창원시

- 창원시는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통합되어 창원시로 출범하여 다양한 입지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창원국가산업단지, 마산자유무역지역, 진해국가산업단지 등 경상남도 중부지역 산업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음
-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세외수입의 규모가 증대되었으며, 다양한 공공시설물의 활용과 상표사용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세외수입 구조를 가지고 있음

1) 창원시 세외수입 현황

- 창원시는 높은 경상적 세외수입 규모를 바탕으로 지방세입규모(2조 6,511억 원)와 자체 수입 규모(1조 891억 원)를 가지고 있음³⁵⁾

- 2017년 당초 예산 기준으로 창원시의 세외수입 규모(4,127억 원)는 유사 자치단체 중 3위에 해당하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 규모는 3,661억 원으로 유사 자치단체 중 1위로 안정적인 세외수입 규모를 확립하고 있음
- 2016년 회계연도 재정공시 결산기준 총 세입규모는 3조 5,404억 원으로, 유사 자치단체 평균액(2조 3,518억 원) 보다 1조 1,886억 원 많음
 - 자체수입은 유사 자치단체 평균액(8,964억 원)보다 3,969억 원이 많으며, 이전재원은 유사자치단체 평균액(7,945억 원)보다 5,148억 원 많음
- 2016년 결산 기준, 지방세 징수액은 7,416억 원으로 3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5.98%이며, 지방세 전담 매니저 지정 운영 및 가상계좌,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 편의시책 다각화로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있음
 -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 등으로 기업경기 활성화를 통해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가 증가하였으며, 담배소비세가 소폭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 수입액이 증가함

<표 4-26> 창원시 지방세 징수 추이

(단위: 백만 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6년 징수액		최근 평균증가율(%)
	2013	2014	2015	2016	비중(%)	
합 계	622,962	658,779	665,695	741,574	100	5.98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61,011	63,190	64,029	78,711	10.61	8.86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8,603	35,092	40,838	43,965	5.93	72.25
지방소득세	218,102	216,511	227,135	244,841	33.02	3.93
재산세	128,182	140,462	148,849	157,113	21.19	7.02
자동차세	184,053	177,829	162,966	183,215	24.71	△0.15
지역자원시설세	17,272	20,595	21,773	23,835	3.21	11.33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년도수입	5,739	5,099	104	9,893	1.33	19.9

자료: 2017년 창원시 재정공시(2016년 결산기준)(창원시, 2017)

- 창원시 세외수입 총 규모는 2016년 결산 기준, 약 5,301억 원³⁶⁾으로 전체 지방세입의 약 15.0%를 차지하여 수원, 성남, 용인, 화성보다 높은 규모와 비중을 보이고 있음

35) 2017년 당초예산 기준

36) 2016 지방재정연감 자료 기준

- 다만,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6.8%로 수원시와 기타 유사 자치단체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보임
- 창원시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새로운 재원 개발 및 사용료 수수료 요율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자금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함
 - 2014년 세외수입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도입·운영에 따라 292건, 278백만 원을 압류하여 44백만 원을 징수함
 - 2015년에는 세외수입원은 사용료 수수료 요율 현실화를 통해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 수입이 세외수입 증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시유재산을 매각하는(269억 원) 등 임시적 수입 또한 증대하였음
- 창원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유사 지방자치단체 대비 체납액이 적은 수준임
 - 2016년 일반회계 체납액은 총 670억 원이며, 지방세는 5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억 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50억 원으로 전년대비 50억 원 증가하여 체납액징수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매년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및 연도폐쇄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설정으로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표 4-27> 창원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5연말 체납누계액(A)	2016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59,826	69,968	10,142
지방세	49,880	55,049	5,169
세외수입	9,946	14,918	4,972

자료: 2017년 창원시 재정공시(2016년 결산기준)(창원시, 2017)

<표 4-28> 창원시 체납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53,975	48,366	54,243	59,826	69,968
지방세	40,960	38,290	43,697	49,880	55,049
세외수입	13,016	10,075	10,546	9,946	14,918
유사자치단체 평균	100,576	96,856	94,969	96,303	94,282

자료: 2017년 창원시 재정공시(2016년 결산기준)(창원시, 2017)

2) 창원시 세외수입 관련 조례

-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창원시는 회계, 징수, 감사, 시정(조직) 영역과 환경, 문화, 복지 시설물 관리 영역에서 연관된 조례 및 시행규칙, 예규 등이 있음
 - 재무회계 및 징수와 관련하여 세외수입의 정의, 지방세 법규의 적용, 포상금과 내부 통제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함
 - 행정기구 조례와 관련하여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세외수입 관련 조직의 구성과 사무분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표 4-29〉 창원시 세외수입 관련 자치법규 목록

분야	조례 및 규칙	관련내용
회계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48조 지방세 법규적용
예산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21조 상여금 지급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상여금 지급의 평가방법 제12조 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의회법무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감사	창원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징수	창원시 공간정보시스템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제6조 수입금의 처리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 지급대상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시정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조 경제국에 두는 과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세정과
환경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종량제봉투 대금 납부
	창원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수입
교육문화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수입금처리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변상 및 손해배상
복지	창원시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시설물 사용 및 허가
	창원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임대료 및 관리비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시스템

- 그 외 사용료와 관련하여 59개 조례 279개 항목, 수수료는 54개 조례 127개 항목이 있으며, 과징금 8개 조례 15개 항목, 과태료 관련 26개 조례 51개 항목, 부담금 28개 조례 77개 항목 등이 세외수입과 관련된 조례로 나타남
 - 대부분 소하천 사용료, 상하수도, 폐기물, 공공시설물 이용 및 광고물 표시 관련 사용료, 수수료 및 과태료 등을 비롯하여 수입증지 및 제증명 수수료와 관련된

-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유사자치단체와 유사하게 나타남
-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를 통해 공공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으며, 창원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를 통해 창원시 상표 사용권에 따른 사용료 수입을 확보하고 있음
 - 또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76개 조례 142여 개 항목이 있으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등 그 외 공공시설물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 창원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과 특허권의 공유재산화를 명문화하고 있음
 - 각종 해양시설을 비롯하여 창원시 부대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창원시 소방정 운영·관리 규칙 등을 조례로서 규정하고 있음
 - 그 외 분담금, 청산금, 주차요금, 불용품, 체납처분 등과 관련하여 48여 개 조례 및 시행규칙과 77개 관련 항목이 있음

<표 4-30> 창원시 세외수입 주요항목별 자치법규 현황

(단위: 개)

구분	조례 및 시행규칙	관련내용 (조문/부칙/별표)	주요 조례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76	142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창원시 고현마을 공동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창원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창원시 부대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창원시 소방정 운영·관리 규칙,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등
사용료	95	279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창원시 공동구 관리 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창원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창원시 양수기 대부 조례, 창원시청 및 구청·읍·면·동 회의실 사용 조례, 창원시 해양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수수료	54	127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창원시 먹는물 등의 수질 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창원시 자원회수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창원시 재활용품 상설교환 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부담금	28	77	창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지부담금 징수 조례,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및 시행규칙,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및 시행규칙, 창원시 지하수 조례

구분	조례 및 시행규칙	관련내용 (조문/부칙/별표)	주요 조례
과징금	8	15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창원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창원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과태료	26	51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시행규칙, 창원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창원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창원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창원시 화재예방 조례
기타 (분담금, 불용품, 주차요금 등)	48	77	창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창원시 경차 우대 조례, 창원시 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및 시행규칙,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창원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창원시 농업 기계 순회교육 수리반 운영 조례,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창원시세 조례 및 시행규칙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시스템

3) 창원시 세외수입 관련 조직

-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조사 자료에 의하면 창원시는 아직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있지 않으며 세외수입 전담 공무원 인력은 유사 자치단체보다 다소 적은 7명으로 조사되고 있음. 이에 이하에서는 세외수입과 관련된 전반적인 조직 구성을 검토함
- 창원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조직은 경제국 내 세정과에 총 4개 담당 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장 1명을 포함하여 총 23명의 담당자가 있음
- 세외수입 전담조직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체납징수기동팀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전반을 관리하고 있음
 - 2014년 체납징수기동팀을 신설하여 각 구청 세무과에서 징수가 어려운 고질·고액 체납세(지방세 2,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14명(178억 원), 세외수입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50명(26억 원)을 시청 전담팀에서 집중 징수·관리함
 - 2016년 세외수입 체납 정리 전문단을 구성하여 체납과목 집중운영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자 정보를 체납부서와 공유하여 징수활동을 수행함
 - 경제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세정과 체납징수기동팀과 주요 체납부서 담당자로 구성하

- 여 체납자의 특성 및 재산현황을 체납부서와 공유하고 고질체납자에게는 부동산·차량 압류 및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취함
-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병행함
 - 한편, 창원시는 5개구의 49개 행정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구청에서는 세무과에서 총 92명의 담당자가 세입 및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가장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구는 의창구로 총 21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5개 구 모두 세무과 전체 인원 중 시세팀 인력이 가장 많게 나타남
 - 체납세징수팀의 인력은 4-5명으로 유사하며, 세무과 전체인원 중 마산 회원구의 체납 징수담당 인력이 5명으로 총인원수 대비 2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표 4-31> 창원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유관 조직(구별)

(단위: 명)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성산구청	의창구청	진해구청
도세담당	4	4	4	4	4
시세담당	6	6	8	7	5
재산세 담당	4	3	3	4	4
체납징수 담당	5	5	4	4	4
총 인원수	20	19	19	21	18

주1: 각 구청별 조직도 재구성

주2: 인원수: 각 과 및 구청별 소계는 각 과의 과장을 포함함

4) 창원시 세외수입 확충 주요 사례

(1) 에너지 판매를 통한 수입 확충

- 태양광 발전소 임대 및 진해자원해수시설의 소각 폐열 판매 등 에너지 자원 확보 및 판매를 통해 세입원을 확대함
 - 창원시는 대기 중으로 증발시키고 있던 잉여 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자 여열회수사업을 추진함
 - 진해자원회수시설의 경우, 2012년 450kW급의 증기터빈 발전시설을 준공하여 가동 중에 있음
 - 소각 폐열을 최대한 재생에너지화하여 시 세외수입 증대 및 저탄소 녹색성장 부응 등 환경수도 이미지를 제고함

- 또한 하수처리장 유희부지를 활용하여 민간유치와 기부채납으로 태양광발전소(2개소, 2,850MWh)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연 84백만 원의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을 올리고 있음³⁷⁾

(2) 폐기물 매립장 반입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

- 반입수수료를 부산·경남 8대 도시 반입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통합 전 천선매립장 수준인 25,000원으로 인상함(2015. 1. 1. 시행)
 - 기존 천선매립장 톤당 25,000원, 덕동매립장 톤당 9,100원, 덕산매립장 16,300원의 반입수수료를 16,300원으로 단일화 하였음(2012. 3. 16. 시행)
 - 행정구역 통합 후 반입수수료의 하향단일화에 따른 세입감소와 건전재정 운영악화에 따른 반입수수료 현실화의 필요성이 대두됨
 - 분리수거를 통한 폐기물 감량화와 종량제 봉투사용 등을 권고하고 적극적인 사전 홍보활동을 통하여 반입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처리비용 증가로 인한 민원소지를 최소화함
- 예산대비 46%, 원가대비 59% 수준의 인상률을 통해 세외수입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리수거 활성화, 인근지역 반입량 감소, 가연성 폐기물 반입억제 등을 통해 매립장 위생관리 및 장기사용 기반을 마련함

(3) 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서비스

- 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서비스를 2015년 확대 시행하여 체납자 예금을 실시간으로 전자 압류함으로써 신속하게 체납액을 징수함
 - 기존의 예금압류는 수작업으로 함으로써 업무처리가 복잡하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소요기간도 수개월이 걸려 체납액 징수에 실질적인 효과가 미비하였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발생 주요부서 13개과에 전자압류서비스 이용을 확대 시행함
 - 5개 구청 전 부서에서 부과된 일반과태료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같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비롯해 이행강제금, 각종 점용사용료, 변상금, 대부료, 부담금, 소송 회수비용 등의 체납금액에 대해 7개의 은행에 예치돼 있는 체납자의 예금을 실시간 전자 압류하여 추심함

37) 2017 창원시 시정백서(창원시, 2017)

제2절 기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 기획재정부의 세입확충 분야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외수입 우수단체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확충을 위한 노력은 크게 법령 해석 및 조례변경 통한 납부대상의 확대와 누락세원의 발굴, 이자 및 금고관리를 통한 효율적 이자관리, 투자 및 연구를 통한 새로운 판매수익의 확보 등이 있음

1. 법령해석 및 조례변경을 통한 납부대상의 확대와 누락세원의 발굴

1) 충청북도 단양군

- 하천 점·사용료를 중심으로 과징현황 및 문제점 개선을 통해 숨어있는 세원을 찾아 내고, 이를 통해 수년간 과소 부과된 하천 점·사용료 9억 5천여 만 원을 추정함

〈표 4-32〉 단양군 하천 점·사용료 추정 주요 내용

	내용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물 자원의 가치 재조명 및 인식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 관련 세외수입 증대 관심 고조 - 물(강, 하천 등 명칭 불문)은 양적인 면에서 풍부하지만 관련 세입은 적음 ○ 수익자 부담원칙의 응익과세 및 응능과세로 탄력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료적 성격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도 지방세에 비해 조세저항이 적은 편 - 부과체계 개선, 관련 규정 제·개정 등을 통해 세수 증대
추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대장 및 과세대장의 전수대사를 통해 누락 필지 등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조사를 통해 부과누락 여부, 적용목적에 따른 정확한 세율 적용여부 확인 ○ 현실적인 토지의 적정한가격의 재산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낮게 책정된 공시지가가 재산징 - 인근 유사 토지가격을 사용한 개별필지들에 대한 지가 산정 ○ 하천 점·사용료 과징체계 개선만으로도 세수증대 가능 ○ 장기적으로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 추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홍수통제소 하천수사용허가자료와 하천점사용료대장 대사 과소 부과 및 누락 사실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부서 합동으로 추정 가능 여부 검토 - 기 부과금액을 차감한 차액에 대해 고지서 발부 후 완납(2015.10~11) ○ 세외수입 과소부과 및 누락세원 발굴: 9억 5천여 만 원 추정

2) 인천광역시 중구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일지라도 도로법령에서 정한 점용료 징수제한 대상인 비영리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밀한 법령분석을 통해 도로점용료를 징수함

<표 4-33>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 점용료 추징 주요 내용

	내용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투자사업자의 도로점용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점용료 납부의무 회피 - 주무관청의 행정해석을 근거로 하여 사업구간 점용에 대한 점용허가 내지는 점용료 납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 고속국도 건설사업이 공익사업이라는 이유와 과거 도로점용료 부과사례가 없다는 형평성 논리를 주장하며 점용료 납부 거부
추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해석과 고문번호사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도로점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제기 시, 특정 유사판례 확인과 관계법령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바탕으로 도로점용료 징수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전국 최초로 도로점용료 징수 ○ 체납독촉과 압류예고 등을 통하여 부과액 전액 징수 완료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점용료 6,017,335,110원을 징수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함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4개년에 해당하는 점용료 징수 완료

3) 대구광역시 수성구

- 불법현수막 게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법 및 부과대상자 변경으로 과태료 부과액을 증대하고 불법현수막 근절에 일조함

<표 4-34>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주요 내용

	내용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1일 부과최고금액이 5백만 원인 점을 악용하여 지역주택조합에서 주말 및 야간에 게릴라식으로 무분별하게 불법현수막을 게시 ○ 납부능력이 없는 과태료 부과대상자(광고업자, 광고대행사)들이 과태료 부과를 감수하고 지속적으로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 시행사와 시공사 및 지역주택조합 등이 연결되어 있어 책임을 떠넘기고 납부를 기피하여 과태료 체납액이 누적
추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반 상시 운영체계 구축 - 2개 반 6명으로 구성하여 게릴라성 불법현수막에 대한 집중 단속 ○ 부과대상자(납부의무자) 변경 - 현수막의 내용, 시행사와 건설사와의 관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추어 시공사(건설사)로 과태료 부과 ○ 부과방법 변경 - 날짜·구간별 건당 최대금액(5백만 원)을 부과하여 1일 수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현수막게시에 대해 날짜별·구간별로 부과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증가 - 지역주택조합 및 업무대행사, 시공사의 불법현수막 게시에 대한 경각심 고취 ○ 부과방법 및 부과대상자(납부의무자) 변경으로 징수활동이 용이하여 과태료 징수 실적 증가

〈표 4-35〉 대구광역시 수성구 연도별 과태료 부과현황

(단위: 천 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 9월 말 현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93	103,987	153	157,039	146	432,289	141	669,102

〈표 4-36〉 대구광역시 수성구 연도별 과태료 징수현황

(단위: 천 원)

부과금액		징수금액		채권확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41	669,102	103	466,927	29	183,680

4) 경상남도 상주시

-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비현실적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수수료의 현실화로 지자체의 예산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협조 유도 및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표 4-37〉 경상남도 상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수수료 현실화 주요 내용

	내용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처리효율 저하 및 고가의 처리비용으로 인하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저하시킴 ○ 가축분뇨의 해양투기전면금지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부담과 한미 FTA 등 축산경영환경의 악화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
추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축산농가 협조가 결합된 처리원가 절감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입농도 저하, 자원화를 통한 원가절감 ○ 원가절감에 따른 수수료 인하 추진 등 인센티브 부여로 농가의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인 협조 유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539백만 원 예산 절감 및 세외수입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원가 1,049백만 원/년 절감 - 세외수입 490백만 원/년 증대

5) 경기도 광주시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도로, 하천 점용대장 등 행정정보와 국·공유재산이 구축되어 있는 항공사진·지적도 등 공간정보에 국·공유재산(도로, 하천, 공유수면 등)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국·공유재산 무단 점용 사용자를 추출하여 누락된 신규 세원을 발굴함

<표 4-38> 경기도 광주시 3.0 빅데이터를 활용한 누락세원 발굴 주요 내용

	내용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시스템의 현행화 미흡으로 인해 토지대장과 공공재산 관리대장 간에 정보 불일치 발생 ○ 누락재산의 발굴과 대부재산의 목적 외 사용, 무단점유, 불법시설물 설치 등 현장조사를 통해 정비가 필요한 공공재산이 지속적으로 발생 ○ 행정정보와 공간정보를 하나하나 대조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의 정비로 인해 탈루누락 세원 발생
추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원 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재산의 현황관리 및 누락재산 발굴, 무단점유나 불법사용 현황 일괄 추출을 위한 공간분석기능 개발 ○ 행정정보가 구축된 아이원 통합 시스템에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의 국·공유 재산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빅데이터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유재산 과세자료 속성 값 “점용기간 과 허가번호” 로 국·공유 재산 무단 점·사용자 추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한 신규누락세원 발굴로 재정확충 기여 : 2,658백만 원 / 941건 ○ 국유재산 무단 점용 누락세원 발굴실적 : 1,641백만 원 / 519건

2. 효율적 이자관리를 통한 세입규모의 확충

1) 전라북도 순창군

- 보통예금에 방치되는 민간보조금 등을 사업자가 고이율상품에 정기예탁 관리하도록 지도하여 이자수입을 추가 확보하여 민간보조예산에 대한 자금 집중관리를 통한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함

〈표 4-39〉 전라북도 순창군 민간보조금 이자수입 지도 관리 주요 내용

	내용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에 방치되는 민간보조금 등을 사업자가 고이올 상품에 정기예탁 관리하도록 지도하여 이자수입을 추가 확보 - 추진기간 : 2011. 1. 17부터 전면시행 - 관련예산 : 민간보조, 사회단체보조, 공공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추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보조금을 활용한 이자수입 창출방안 주관계자 토론회 ○ 주요방침 결정과 세부지침 확정통보(군수) ○ 이행상황 수시점검 및 중간실적 관리 ○ 업무추진 요령과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혼선을 방지 ○ 추진성과에 따른 상여금 지급 :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연도(2011년) 보조금 관련 정산이자수입 160백만 원(전년대비 17.5배 증가) - 군 자체 연간 1억 원 이상 세입증대 효과

2) 서울특별시 본청

- 본청·자치구의 총 3,474개 계좌에서 관리하던 39조 원의 세출자금을 시·구 회계별 1개 모(母)계좌로 통합·집중 관리함으로써 자금운용수의 창출을 도모함

〈표 4-40〉 서울특별시 세출자금 집중관리제 주요 내용

	내용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관리 및 운영의 비효율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해결책 부재 - 자금이 분산되고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해결책 미제시 - 불필요한 자금 분산(3,474개 계좌) 방지를 위해 최대한 자금집중 및 자금의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자금관리의 효율성·경영상·예측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추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자금관리시스템 구축 ○ 자금집중·통합관리제 시행계획 수립(부시장 방침) ○ 2개 구청(서초·양천구) 시범시행 후 시·자치구 전면시행 ○ 사업소 및 자치구에 자금을 내려 보내는 '자금배정' 제도를 폐지하고 전국 최초로 모든 자금을 본청 모(母)계좌에서 집중·통합 - 일체의 자금을 본청 모계좌에서 관리·운영하고 사업소·부서에서는 한도액만 관리 - 실제자금은 보유·관리하지 않도록 개선 - 자금이 사업부서에 머무르지 않고 통합계좌에서 채권자에게로 곧바로 지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집중에 의한 운영성과를 통해 최소한 195억 원의 운영수입 증대 가능 - '단순 평균잔액'에 의한 효과 기대: 195억 원(연 39억 원×5년)

3. 투자개발 및 연구를 통한 새로운 판매수입원의 확보와 운영효율화

1) 충청북도 영동군

- 왕산악, 우륵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악성 중 하나인 박연이 영동에서 성장했음에 착안하여 국악체험촌을 조성하고 신규수입을 창출함

<표 4-41> 충청북도 영동군 국악체험촌 조성 주요 내용

	내용
추진배경	○ 왕산악, 우륵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악성 중 하나인 ‘박연’ 이 영동에서 성장했음에 착안하여, 관광객들이 국악과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국악체험촌을 조성
추진방안	○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공연장과 세미나실, 300여 명이 숙박을 하며 국악을 체험할 수 있는 국악체험실, 국악전문가를 위한 연습 공간 마련 ○ 국악 인프라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활성화를 위해 212억 원 투입 ○ 국악 체험촌의 운영 관리를 위해 전국 처음으로 국악 전담 조직인 국악사업단 신설 ○ 국악 체험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신설
성과	○ 관광객들이 일정기간 머물면서 국악은 물론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국악체험촌을 조성하여 신규수입 창출

2) 경기도 고양시

- 노후화로 인해 가동 중단된 폐정수장을 리모델링하여 영화, 드라마, CF 등을 촬영할 수 있는 아시아 최대 수조(특수)촬영장을 조성하여, 국내영화 및 방송영상산업의 발전 토대 마련 및 고양시 세수 증대에 기여함

<표 4-42> 경기도 고양시 수조(특수)촬영장 조성 주요 내용

	내용
추진배경	○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각종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지역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산업이 방송영상 산업이라고 판단하여 전략 산업으로 육성 추진
추진방안	○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이행, 국·도비 지원 등의 과정을 거쳐 국·내외 영화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시아 최대 수조(특수)촬영장 조성 - 영화산업 기간 및 비용 측면에서의 영화산업 경쟁력 강화 ○ 시설의 활용 가능여부에 따라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시설과 철거하는 시설로 구분 ○ 관리동과 사무동은 내부시설 변경 없이 간단한 수선을 통해 활용하며, 건조여상은 철골 구조물을 철거하고 수조 내부의 흙을 제거하여 야외수조로 사용 ○ 고양 수조(특수)촬영장은 시설비 38억 원(국비 5억 원, 도비 5억 원, 시비 28억 원)으로 미활용 공유재산인 고양정수장을 리모델링하여 신규조성 비용(총 579억 원) 절감
성과	○ 폐 정수장을 활용 수조촬영장을 조성함에 따라 총 541억 원의 사업비 절감과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 기여 - 예상 세외수입(연간 6억 원 ~ 12억 원)

3) 전라남도 강진군

- 강진군에서 사업비를 투자하여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공영차고지 부지 공간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소 설치하고 투자유치 임대 세입 증대에 기여함

<표 4-43> 전라남도 강진군 공공건물 옥상, 주차장 태양광발전 투자유치사업 주요 내용

	내용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고지 조성을 통한 발전소 임대 및 차고지 운영수익 창출 도모 ○ 기존 주차장에 대한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기존 부지를 활용한 운영수익 확대 방안 마련
추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110억 원을 투자하여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공영차고지 부지 공간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소 설치 ○ 7월 말부터 8월 초 강진청자축제 기간에 청자박물관에 방문하는 관광객이 주차장이나 주변에 그늘이 없어 복사열로 인한 불편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소 설치 ○ 남포축구장의 3,700㎡ 비포장 주차장을 아스콘 포장하여 주차 편의를 증대하고, 포스코 건설에서 포장비를 전액 부담함으로써 군비 예산 절약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물 옥상, 주차장 등 태양광발전소 임대에 따른 수익창출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운영 임대 등 세수 확대

4) 부산광역시 남구

- 기존 민간위탁 운영으로 적자상태에 있는 부산남구 국민체육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체제를 개선함으로써 세외수입을 증대함

<표 4-44>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직영 전환 주요 내용

	내용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 3월 개관하여 1년 5개월간 민간위탁 결과 부도상태 - 2010년 결산 시 239백만 원 적자(수탁 협회 결산보고서 기준) - 2011년 공공요금 체납(1억 원), 임금체불, 용역대금 미지급 등
추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인 시설 재배치 및 신규 프로그램 개설 및 정비 - 유휴 공간 정비로 실내골프장 개설 및 요가장 이설 - 유휴시간대에 노인건강 프로그램 도입 - 새로운 인기종목인 스피닝 등 신규 프로그램 도입시행 ○ 회원 중심형 운영제도 도입으로 서비스 강화 - 회원주도형 프로그램 평가제 매월 시행 - 헬스북 디자인공모 등 센터운영에 회원의견 적극 반영 ○ 시설 및 운영체제 개선 -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 : 현금출납 지양, 신용카드로 체제전환 - 무인자동화시스템 구축 : 회원대기시간 단축, 경비절감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영에 따른 대규모 부가세환급 성공 : 1,106백만 원 ○ 2011. 8월부터 3년간 직영 결과 50% 이상 회원을 증가시켜 대규모 흑자, 부가세환급 등 3,070백만 원의 세외수입 창출로 구 재정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

5) 울산광역시 북구

- 직무발명을 통한 방충망 시범설치 효과 분석을 통해 북구의 아이디어와 방역기계 수리업체의 자금과 기술로 방충망 공동 개발 및 특허등록을 통해 추가 수익원을 확보함

<표 4-45> 울산광역시 북구 직무발명을 통한 기업-지자체간 공동특허획득 주요 내용

	내용
추진배경	○ 국내에서 실시해 온 획일적인 모기방제 방식은 지역적 및 환경적 특성에 적합한 효과적 방제가 어려워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 존재
추진방안	○ 북구지역 4,211개의 정화조에 대하여 6,000회의 조사를 실시 후 적합한 방제방안 도출 ○ 방충망 시범설치 효과 분석 수행 ○ 방역기계 수리업체와의 공동 개발 - 상품화된 방충망 특허등록 - 공동 개발자인 구청과 영광테크와의 이익배분과 독점 생산권 보장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
성과	○ 2006. 6~2009. 12(3년 6개월)간 제품 판매 순수익금 이익배분으로 37,713천 원 수익 - 특허의 존속기간(20년) 간 1억 5천만 원 세외수입 증대 기대

6) 전라남도 고흥군

- 농어촌지역의 경우,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이 별도로 투입하는 수거 시스템 하에서 쓰레기 발생량이 수거차량 적재량에 못 미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절감이 가능한 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통합 분리수거 차량을 개발하고 특허로열티를 확보함

<표 4-46> 전라남도 고흥군 통합쓰레기 분리수거 차량 개발 및 특허 등록 주요 내용

	내용
추진배경	○ 기존 쓰레기수거체계에서는 업무의 비효율성 증가 및 1일 폐기물 수거 처리량에 비교하여 수거차량, 수거인원이 과다 투입됨으로써 예산 낭비적 문제점이 야기 ○ 낮은 청소재정자립도에 따른 자구 노력 요구
추진방안	○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각각의 차량의 기능을 통합, 2대의 기능을 1대에 탑재 - 2015년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하여 2016년 문제점 보완 - 특허차량 7대를 확대 배치하여 2개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 처리 - 상품화된 방충망 특허등록 - 공동 개발자인 구청과 영광테크와의 이익배분과 독점 생산권 보장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
성과	○ 통합쓰레기 분리수거 차량 개발(2대 기능 1대로 통합) 예산절감 - 청소 1구역 당 차량구입 및 유지비 75백만 원 예산절감 (1) 차량유지비 50%절감(9백만 원) (2) 차량구입비 50% 절감(66백만 원) - 청소 1구역 당 수거인력 인건비 106백만 원 절감(50%절감) ○ 특허차량으로 2015년도 특허로열티로 10백만 원 세입 창출

7) 충청남도 천안시

- 중앙정부(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처리의 광역화·최적화 일환으로 소각시설의 여유용량을 활용, 최적화 구역 내에서 생활폐기물을 광역처리 함으로써 처리과정을 환경성·기술성·경제성을 제고함

<표 4-47> 충청남도 천안시 생활폐기물 광역처리 주요 내용

	내용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처리시설이 없는 자치단체의 경우, 관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민간 처리 시설 등에 위탁처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어려움 및 위탁 처리비 과다 발생 ○ 인근 자치단체의 가연성생활폐기물을 반입·처리함으로써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뿐만 아니라 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스팀을 인근 산업체에 판매하여 세외수입을 증대 시키고 연속가동을 통한 시설의 안정성·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음에 착안
추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파악 후, 기존 수도권매립지로 매립하던 평택시의 가연성생활폐기물을 반입·소각처리 방안 검토 ○ 외부 생활폐기물 반입·처리 계획에 따른 소각시설 인근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 ○ 생활폐기물 위수탁 협약 체결('16. 2.15.)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폐기물 광역 위탁(소각) 처리를 통한 상생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증설('15. 9.30.)에 따른 소각 여유량 발생 - 평택시의 가연성생활폐기물을 반입·안정적 처리 ○ 생활폐기물 반입 처리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입수수료(15억 원/년) 및 추가 스팀 판매수입(18억 원/년) - 스팀 판매 세외수입 : 56억 원(2016. 9월 말 기준)

8) 충청남도 공주시

- 생활폐기물 폐열공급시설 설치 및 기존 폐열보일러 개체로 성능을 향상시켜 대기권 방출 폐열(스팀)을 재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함

<표 4-48> 충청남도 공주시 생활폐기물 폐열 판매 주요 내용

	내용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각장 폐열보일러 교체시기 도래(내구연한 10년 / 가동기간 13년) ○ 인근에 산업단지 입지로 판매처 확보 용이 ○ 지자체가 보증하는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자금지원기관 및 열수급처의 신뢰 확보
추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최초로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공급업체와 협상 조기 타결 ○ 정책융자금 시의회 채무보증 동의 확보 및 원안가결 통과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충청남도 심의 통과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주시 연간 총 16.8억 원 세외수입 발생 ○ 관내 기업체(솔브레인㈜) 난방비 절약으로 기업 경쟁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열공급가 : 42,000원/톤, 기존 LNG 사용가 : 62,000원/톤(33% 절약)

제3절 소결

- 검토한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종합해 볼 때, 대체로 수원시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세외수입 규모나 총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으나,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수원시의 안정적인 세외수입 창출과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의 위상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특히 일반회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의 확충 및 안정적 확보가 긴요함
- 조직 및 인력 측면에서 수원시 및 창원시를 제외한 유사 지방자치단체는 세외수입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있으나 한국지방세연구원(2017)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원시의 세외수입 전담인력은 약 18명으로 총 세입 및 지방세외수입이 유사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적은 수준으로 나타남
 -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행안부의 세외수입징수업무 전담조직 신설 운영 지침이 전달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전담하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음
 - 성남시 22명, 용인시 17명으로 수원시의 전담인력 규모는 유사 세외수입 규모를 보이는 자치단체보다 적거나 유사한 수준임
-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확충 노력은 주로 부서별로 산재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를 세외수입 전담팀을 구성을 통해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체납징수팀을 강력히 운영하여 체납액 정리율 및 징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에 집중된 모습을 보임
 - 창원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는 전담팀이 설치되어 있으며, 자동차 체납액 관리, 정책수립 조직을 보유하거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성남시는 고액체납자와 소액체납자를 구분하여 체납자 특성을 고려한 징수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체납징수통합 시스템을 통해 체납업무의 능률화를 추구함
 - 용인시의 징수과는 체납을 전담하고 있으며, 가장 오랫동안 세외수입체납팀을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음
 - 화성시는 세외수입을 관리업무와 징수업무를 분리함으로써 징수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은 수원시와 유사하나, 두 팀 모두 징수과에 설치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음
 - 성남시와 화성시는 세외수입 징수전담팀과는 별도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과태료와

과징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주차과징팀, 차량세무팀)을 보유하고 있음

- 최근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관리 체계는 체납액 통합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책임관제를 도입하거나, 정책수립 및 연구를 담당하는 전략조직 및 담당자를 통하여 종합적인 세입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공통적으로 세외수입 체납통합관리 시스템 운영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수행하고 체납액 통합 안내 및 원-스톱 업무처리를 통한 납부편의 제공을 통해 세수증대에 기여함.
 - 이는 행정오류를 예방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세외수입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 추적 및 분석을 가능하게 함
 - 또한 직원 1명당 일정 인원의 체납자를 할당하여 체납자에 대한 목표제를 바탕으로 맞춤형 밀착 징수활동을 수행하는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있음
 - 이러한 노력들은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징수기법 발굴을 유도하고 부서원 간 선의의 경쟁을 도모하며 개별 특성과 체납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함
- 각 자치단체들은 시민들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와 소액체납자 및 체납 원인을 구분하여 사례에 맞는 체납처분을 실시함
 - 통합가상계좌 생성 및 ARS 납부시스템을 운영하고, 납부자에게 SMS를 전송하는 등 신속하고 상세한 납부 안내로 납부 편의성을 증대함
 - 납부능력이 없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부동산 압류 및 공매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수행함
 -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 및 소액체납자에게는 분납 및 결손처분 등 사례에 맞는 체납처분 및 납부 방안을 제시함
- 세외수입 관리체계에 있어서 유사 자치단체 들은 전담인력의 전문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정기적인 징수대책회의,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부서별 체납액 상시 관리 체계 등을 통해 부과·징수·체납관리 등 업무전반에 대해 밀도 있는 점검체계를 구축함
 - 체납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주기적 교육을 통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함
 - 채권 추심관련 경력직 지방임기제 공무원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한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정리를 향상시킴

<표 4-49> 유사 자치단체 사례 종합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	창원시
현황 (유사 단체 대비)	· 높은 자체수입 규모	· 높은 세외수입 및 지방세 규모에 따른 높은 자체수입 확보 (의존재원<자체수입>)	· 높은 경상적 세외수입 규모와 비중 보유	· 높은 인구유입에 따른 지방세를 바탕으로 높은 자체수입 확보 (의존재원<자체수입>)	· 높은 경상적 세외수입 규모 보유 · 낮은 체납액 규모
조직 구조	· 2과 7팀 총 41명 (세정과 17명, 징수와 24명) · 맞춤형 징수전담팀 설치 · 각 과별로 세외수입 전담팀 설치 · 4개구청 총 115명	· 2과 12팀 총 69명 (세정관리과 56명, 세정과 13명) · 체납징수 조직이 각 2팀으로 구성 · 세무조사팀과 징수팀이 1개과에 배치 · 3개구청 총 120명	· 2과 8팀 총 49명 (세정과 22명, 징수와 27명) · 징수과는 체납징수 업무에 집중 · 세외수입체납팀 별도 설치 · 3개구청 총 103명	· 3과 13팀 총 81명 (세정1과 22명, 세정 2과 20명, 징수와 39명) · 징수와 내에서 세외수입 관리와 징수 업무를 분리 · 정책 및 전략기획팀이 존재	· 1과 5개 담당 1팀 총 23명 · 5개구청 총 97명 · 세외수입 전담조직은 없으나 세외수입 체납정리 전문단 운영
성과 관리	· 제안제도를 통한 인센티브의 부여 · 책임징수 전담 목표제 시행	· 책임관리관제를 통한 체납액 총괄 관리 · 징수책임제 시행	· 예산성과금, 제안제도를 통한 인센티브의 부여 · 책임징수제, 직원 책임관리제 시행	· 개인별 책임징수제	· 세원발굴징수 포상금 제도 시행
정보 시스템	·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통합계좌납부 기능 도입	· 세금 체납액 통합 관리 시스템 : 지방세 체납액과의 통합관리	· 표준지방세정보 시스템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 ARS 납부시스템 · 카드수납시스템 · 체납차량 알리미 시스템	· 법인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 시스템 · 세외수입시스템 · 세외수입가상계좌 및 ARS수납시스템	·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확대 시행
기타		·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체납실태 시민 조사반 운영으로 소액체납자와 고액 체납자 관리 차별화	· 읍·면지역 대규모 시설물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 · 수질조사를 시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세원 확보	· 고질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제한	· 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 · 상표권 사용권 잉여 에너지 판매를 통한 세원 확보

-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법령 해석 및 조례변경 통한 납부대상의 확대와 누락세원의 발굴, 이자 및 금고관리를 통한 효율적 이자관리, 투자 및 연구를 통해 특허권을 확보하는 등 기존 세원의 효율적 관리와 새로운 세원확보 측면의 노력을 기울임
 -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개정이나 추가세무조사를 통해 기존 부담금의 징수대상을 확대하여 세원을 확충하는(용인시, 단양군, 인천중구 등) 한편, 창원시는 수수료율을 현실화하거나 대체에너지 판매 등과 같이 투자와 협약을 통하여 새로운 세원을 확보함

- 신규 세원확보는 크게 문화관광시설을 건립하거나 기존공공시설을 개방하여 사용료, 입장료 등의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발전소를 건립하거나 폐기물 및 하수처리장 등의 잉여 에너지를 판매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함
- 또한, 기업 및 연구단지와와의 협업을 통해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거나 특허를 획득하여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마련하였음

〈표 4-50〉 세외수입 세원 발굴 주요 우수사례

구분		주요 사례
법령 해석 및 조례변경 통한 납부대상의 누락세원의 발굴	납부대상의 확대	(충북단양군)하천 점·사용료를 중심으로 숨은 세원 발굴, (인천중구) 민간투자사업자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 (대구수성구)불법현수막 게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대상자 변경, (경남김해시)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상한선 규제의 검토를 통한 과태료 수입 증대, (대전서구) 도안신도시 옥외광고물 선진화 수입증대
	수수료 현실화	(경북상주시) 처리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예산절감 및 세외수입증대
	세무조사 체계 고도화	(인천광역시)DB 융합·분석을 통한 교통유발부담금 탈루세원 발굴, (경기광주시)3.0 빅데이터를 활용한 누락세원 발굴
이자 및 금고관리를 통한 효율적 이자관리		(전북순창군)민간보조자금(보조사업자)을 활용한 이자수입 확보, (충남보은군)이자수입 증대로 지방세입 확대, (강원도)통합관리기금 수익률 제고, (충청남도) 기금 여유자금 예치방법 개선
투자개발 및 연구를 통한 새로운 판매수익의 확보와 운영효율화	지역 문화관광시설 확충	(충북영동군)지역 관광 자원을 활용한 국악체험촌 조성운영, (경기고양시), 미활용 재산의 리모델링을 통한 아시아 최대 수조(특수)촬영장 조성, (강원정선군)정선아리랑 상품권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울산울주군)대자연 속 작은영화관 「알프스시네마」 운영에 따른 세입증대
	발전소 건립 및 에너지 판매	(충남천안시) 생활폐기물 광역 소각처리를 통한 상생발전 및 세외수입 증대, (충남공주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폐열 판매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 (전남고흥군) 폐석산 활용 태양광 발전소 건립으로 세수 증대, (서울특별시) 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로 판매 수익 창출
	공공시설 운영효율화	(전북원주시)관사 활용을 통한 공유재산 임대수입 확충, (전남강진군) 공공건물 옥상·주차장 태양광발전 투자유치 사업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임대 등 세입증대, (강원원주시) 청시면적 효율화로 수익 창출, (부산남구)국민체육센터의 성공적인 직영으로 세외수입 증대
	연구 및 직무발명	(대전광역시) 대덕특구 내 연구성과 사업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 (울산북구) 직무발명을 통한 기업-지자체간 공동특허획득 및 수익창출, (경북예천군)미생물의 활용성 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 농기경영비절감, (전남고흥군)통합쓰레기 분리수거 차량 개발과 특허 등록으로 예산 절감 및 지속 가능 새로운 세외수입 창출, (경남거창군)시스템 특허 개발로 예산 절감 및 세수 확보

자료: 기획재정부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및 행정자치부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기획재정부, 각 년도)

- 검토한 국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수원시와 유사하게 세외수입 징수전담 조직운영, 통합관리 및 납부시스템 개선 등을 중심으로 체납징수 관리체계 효율화에 집중해옴
- 일부 우수사례가 있으나 징수 관리시스템 개선에 비해 신규세원 발굴, 세원관리 및 확충 등에는 정책적 관심이 다소 미비한 경향을 보임
- 향후 기존 세외수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경제적 연구 및 지속가능한 세외수입 창출을 위한 기술적 연구와 투자, 신규세입원 발굴을 위한 기반과 원칙 마련,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확충이 요구됨
- 특히 수원시의 경우, 타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담인력의 규모가 작고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의 위상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세외수입 관련 조직 및 인력의 확충, 안정적 경상적 세외수입의 창출을 위한 신규세입원 및 세원관리 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수원시의 경우 현재, 적은 전담인력에도 불구하고 부과·징수·체납관리가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징수율 역시 높은 수준을 보임
 - 따라서 향후 징수관련 전담인력 및 조직 확충뿐만 아니라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을 위한 연구 및 세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안정적 세외수입 확대에 보다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5장 수원시 세외수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절 수원시 세외수입의 문제점

- 수원시는 높은 인구규모와 전자통신 산업을 바탕으로 자체수입 비중이 높아 유사자치단체 대비 높은 재정자립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로 우수한 사회경제적 환경과 세입확보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바탕으로 재정력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그럼에도 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향후 일자리, 안전, 복지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세입구조의 확립이 요구되는 실정임
 - 국세와 지방세 8:2의 불균형적인 구조 지속과 대내외적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국세와 지방세 구조의 근본적 개편 없이는 지방정부의 자체재원 확보가 어려워짐
 - 저출산·고령화의 추세와 중앙정부 정책에 의한 사회복지분야 대응 지방비 부담 증가로 재원부족 및 세입의 국가의존성이 가중됨
- 지방세징수액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는 삼성전자의 영업실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신도시 조성 및 인구증가에 따른 세목의 완만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세입규모가 불안정함
 - 법인지방소득세 세수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수변동성이 강화되어 세입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며(구균철, 2017), 수원시 역시 삼성전자의 법인소득세 감소가 2015년 이후 지방세 수입 비중 감소로 이어진 바 있어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위해서는 세외수입 확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수원시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보조금을 제외하고 의존재원의 증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보통교부세와 더불어 지난 조정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인해 조정교부금이 수원시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보조금의 경우도 차등보조율로 인해 세출수요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음
- 따라서 수원시는 경기침체 및 중앙정부 정책 변화, 특정기업에 의한 세수변동성, 증가하는 세출수요 등을 고려할 때 자체수입 확충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므로 세수증대가 용이하여 재정수입 확충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세외수입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이하에서는 앞선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수원시 세외수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함

1. 세외수입의 낮은 위상과 구조의 불안정성

- 수원시의 세외수입이 총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산총계 기준, 2014년 13.3%를 나타낸 이후 다소 증가하였으나 지방세수입 및 보조금과 비교하여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 결산 기준으로 세외수입이 총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3.3%, 2015년 16.7%, 2016년 14.6%로 동 기간 지방세가 약 28~31%, 보조금이 약 19~20%의 비중을 보인 것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나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의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원시의 상황에서 이는 재정안정성 측면에서 더욱 부정적임
- 낮은 위상과 더불어 세외수입의 성장률이 매우 낮아 안정적 세입원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실정임
 - 당초예산 기준 2014년부터 2017년 까지 지방세의 성장률은 연평균 약 9.3%이나 세외수입의 경우 2.8%에 그침
- 특히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으로 정의되는 경상적 세외수입(이상훈, 2015)에 비해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가 두드러져 세입구조의 불안정성을 나타냄
 - 2016년 세외수입 세목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도 일반회계 기준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5% 감소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61.2% 증가하였음
 -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각각 전년대비 15.8%, 3.3% 증가하였으나, 징수교부금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감소하였음
 - 한편, 임시적 세외수입은 모든 세목이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전년도 366억 원에서 224억 원 증가한 590억 원 규모를 나타냄
- 임시적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경상적 세외수입이 총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낮아지게 됨
 - 경상적 세외수입은 6개 항, 27개의 목, 1484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외수입의 2,586개 세목 중 1,484개로 전체 세목 중 58% 가량을 차지하여 임시적 세외수입보다 그 수입원이 많아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수입임
 - 즉, 경상적 세외수입의 안정적 성장이 지속적 세원확충에 핵심적이라 할 수 있음
 - 세외수입을 연도별로 종합하여 볼 때, 경상적 세외수입 내에서 특히 비교적 안정적인 세입원은 일반회계의 수수료 수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징수교부금 역시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음

- 기타특별회계 정상적 세외수입은 매각사업수입 및 주차요금수입을 대부분으로 하는 사업수입이 대부분이며, 사업수익을 제외하고 2015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임
- 다만 공기업특별회계의 정상적 세외수입은 공기업특별회계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 정상수입의 2배 가량 높은 세입규모를 보임
-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상하수도 사용료는 2015년 상수도요금 현실화, 2018년 하수도 요금 현실화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어, 세외수입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 한편, 재산임대수입은 낮은 규모에 정체되어 있거나 점차 감소하고 있음
- 사업수입 또한 매각수입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안정성이 낮으며, 이자수입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속가능한 세입확충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함
- 정상적 세외수입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신장성이 낮은 가운데 개발수요, 재산매각 등에 의한 임시적 세외수입 규모의 변동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 세외수입의 불안정성을 드러냄
 -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택지개발 등에 의해 부담금 등의 변동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재산매각수입은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역시 부담금 및 기타수입의 변동폭이 매우 크며, 재산매각수입은 감소하는 추세임
- 전반적으로 볼 때, 수원시는 안정적 정상적 세외수입원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향후 기존의 광고, 호매실, 권선택지개발 등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한 세외수입 창출이 기대되기 어려운 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신세원 확보가 요구됨

2. 과징금 및 과태료의 낮은 징수율

- 2016 일반회계 결산 기준, 수원시의 세외수입 징수율은 약 79.3% 수준으로 경기도 평균이 66.1%인 것을 감안할 때 매우 양호한 편임
- 부과형 세외수입³⁸⁾의 징수율이 낮은 경향을 보인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통적인 문제이며 수원시는 상대적으로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수원시 타 세외수입 항목에 비해 과징금 및 과태료 항목의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38) 부과형 세외수입에는 행정서비스 대가로 부과되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등이 있으며, 행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일반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위약금’, ‘체납처분수입’, ‘그외수입’ 등이 있음(이상훈, 2015)

<표 5-1> 2016년 회계연도 수원시 세입결산 세외수입(일반회계)

(단위: 백만 원, %)

과목 장·관·항·목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수납액	징수율
세외수입	128,360	128,360	188,708	149,614	79.3
경상적세외수입	87,667	87,667	91,230	90,640	99.4
재산임대수입	3,399	3,399	4,139	3,701	89.4
국유재산임대료	682	682	745	680	91.3
공유재산임대료	2,717	2,717	3,394	3,021	89.0
사용료수입	27,676	27,676	28,065	27,921	99.5
도로사용료	4,071	4,071	4,416	4,301	97.4
하천사용료	338	338	406	392	96.4
시장사용료	882	882	919	919	100.0
입장료수입	1,375	1,375	1,572	1,572	100.0
기타사용료	21,009	21,009	20,752	20,738	99.9
수수료수입	27,664	27,664	28,104	28,103	100.0
증지수입	5,100	5,100	5,101	5,100	100.0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17,002	17,002	17,011	17,010	100.0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1,700	1,700	1,571	1,571	100.0
기타수수료	3,862	3,862	4,422	4,422	100.0
사업수입	9,588	9,588	9,261	9,258	100.0
사업장생산수입	5,737	5,737	5,039	5,036	99.9
주차요금수입	2,721	2,721	2,938	2,938	100.0
기타사업수입	1,130	1,130	1,285	1,285	100.0
징수교부금수입	14,848	14,848	16,852	16,852	100.0
징수교부금수입	14,848	14,848	16,852	16,852	100.0
이자수입	4,491	4,491	4,808	4,805	99.9
공공예금이자수입	3,000	3,000	3,899	3,899	100.0
기타이자수입	1,491	1,491	909	906	99.6
임시적세외수입	40,693	40,693	97,477	58,974	60.5
재산매각수입	2,500	2,500	3,669	3,667	99.9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500	2,500	3,669	3,667	99.9
부담금	8,328	8,328	9,330	8,921	95.6
일반부담금	8,328	8,328	9,330	8,921	95.6
과징금및과태료등	6,455	6,455	14,210	8,831	62.1
과징금및이행강제금	1,948	1,948	4,624	2,733	59.1
변상금및위약금	319	319	430	411	95.7
과태료	4,187	4,187	9,156	5,686	62.1
기타수입	16,272	16,272	28,476	28,030	98.4
불용품매각대	150	150	350	287	82.1
기부금	117	117	117	117	100.0
그외수입	16,004	16,004	28,009	27,626	98.6
지난연도수입	7,139	7,139	41,793	9,525	22.8
지난연도수입	7,139	7,139	41,793	9,525	22.8

주: 징수율: (실제수납액/징수결정액)×100

자료: 2016 회계연도 수원시 결산서(수원시, 2017)

<표 5-2> 2017년 회계연도 수원시 세외수입 징수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예산액 (A)	현재예산액	조정액 (B)	징수액 (C)	징수율	
					C:A	C:B
합계	1,013,360	260,726	1,180,259	1,111,012	110%	94%
일반회계	246,119	88,906	288,443	255,424	104%	89%
경상적 세외수입	86,744	49,408	89,616	89,121	103%	99%
재산임대수입	3,320	1,568	3,370	3,267	98%	97%
사용료수입	28,135	5,651	28,691	28,401	101%	99%
수수료수입	27,757	16,570	28,875	28,873	104%	100%
사업수입	8,206	2,646	8,940	8,934	109%	100%
징수교부금	15,444	13,070	15,657	15,567	101%	99%
이자수입	3,882	9,903	4,082	4,080	105%	100%
임시적 세외수입	159,376	39,498	198,827	166,302	104%	84%
재산매각수입	11,000	7,910	12,226	12,219	111%	100%
부담금	116,757	21,391	118,579	116,437	100%	98%
과징금및과태료	6,436		12,108	8,415	131%	70%
기타수입	18,383	9,207	22,640	22,231	121%	98%
지난년도수입	6,800	990	33,274	7,001	103%	21%
특별회계	767,241	171,820	891,817	855,588	112%	96%
공기업소계	419,974	122,015	451,539	441,238	105%	98%
상수도사업	113,705	75,256	118,722	112,371	99%	95%
공영개발사업	181,835	46,635	184,442	184,442	101%	100%
하수도사업	124,435	124	148,376	144,425	116%	97%
기타소계	347,267	49,805	440,278	414,350	119%	94%
도시교통사업	53,412	45,203	122,094	96,941	181%	79%
의료급여기금	6,086	2,755	6,912	6,183	102%	90%
기반시설부담금			2,101	2,078		99%
도시개발	93,304		97,620	97,598	105%	100%
대지보상	1,404		106	106	8%	1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9		137	137	1449%	100%
폐기물처리시설	11,383		6,702	6,702	59%	100%
컨벤션센터건립	181,667		204,606	204,606	113%	100%

자료: 2017년 12월분 세외수입 과징현황(누계) (수원시, 2017)

- 2017년 기준 일반회계 세외수입 항목의 징수율은 대부분 80~10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과징금 및 과태료의 경우 70% 대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음
 - 수원시는 전담조직을 바탕으로 과태료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과징금 및

- 과태료 징수실적이 매년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음
- 특히 과태료의 경우 부과·징수에 반발과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위반시점에 부과, 안내, 고지, 독촉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징수가 어렵고 법률위반에 대한 시민인지 및 개선효과도 떨어짐³⁹⁾
 - 차량관련 과태료의 경우는 전담부서 등으로 징수율이 그동안 많이 개선되었으나 기타 과태료의 경우 담당부서 인력 및 전문성 부족의 문제로 부과 이후의 일련의 과정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고 부과자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전문가 인터뷰 결과, 과징금 및 과태료의 특성상 일정수준 고질적 체납이 발생하고 수원시가 매우 우수한 징수실적으로 보이고 있어 급격한 개선을 보이기는 어려우나 수원시가 외국인 체납액에 대한 관리 개선을 이룬 바와 같이 사각지대에 대한 획기적 접근, 부과 부문의 시스템 및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징수율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3. 지방세외수입 관련 조직 및 인력운용상의 문제

- 현재 수원시의 경우 시청 세정과 내 세외수입팀, 징수와 내 세외수입징수팀,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자동차관리과 등의 전담조직을 두고 있으나 세외수입 업무의 근본적인 특성상 세외수입의 부과·징수·관리 업무는 수백 개의 개별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개별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업무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구조임
 - 실질적으로 세외수입 전담조직이 각 부서의 세외수입원의 관리 및 효율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하지만 현재, 세외수입팀 및 세외수입징수팀 인력으로는 전체 세외수입을 취합·관리하고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원시의 세외수입 전담인력 정원은 18명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는 세외수입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유사 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전담인력 규모보다 적은 수준임
- 특히 각 부서의 세외수입 실무 담당자는 해당 업무를 타 업무와 병행하고 있어 해당 업무에 대한 우선순위와 전문성이 떨어짐
 - 순환보직으로 담당자 교체가 빈번하여 부과 이후의 과정이 누락되는 등 업무의 연결성이 떨어지고 전문성 축적이 어려워 부과 등에 관한 질의에 대응하기 어려움⁴⁰⁾

39) 전문가 및 업무담당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함

40) 전문가 및 업무담당자 인터뷰 결과 세외수입 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에 있어서 업무 전담기간이 매우

- 특히 세무직이 아닌 일반직이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전문교육 부족 등으로 업무의 전문성을 갖기 어려우나⁴¹⁾ 세무직 인력의 활용이 미흡함
- 특히 과징금 및 과태료와 관련한 부서는 격무, 소외부서로 인식되어 담당직원들의 기피대상이나 승진 및 금전적 보상 등의 인센티브가 매우 미약함
- 또한 수원시의 세외수입 인력운영과 관련하여 차량등록사업사업소의 인력부족의 문제가 제기됨
 -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차량등록 업무의 62%가 관외차량에 대한 업무이나 관외분 업무 증가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인력충원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비용부담 협약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등록업무의 지연⁴²⁾ 등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세외수입 업무 구조상 세외수입 전담조직이 각 부서의 세외수입업무에 대한 종합계획 및 목표설정, 관리 기능을 모두 담당하기는 다소 어려우나 전문가 및 실무자 인터뷰 결과 향후 신세원 개발 및 세원관리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의 정책개발 및 기획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세외수입원 관리 및 신규 수입원 발굴의 한계

-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원시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공공시설 사용료 인상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신장률이 저조하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변동 폭이 매우 큼
 - 수수료 수입은 비교적 안정적인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신장률이 미미함
 - 재산임대수입, 사업수입은 낮은 규모에 정체되어 있거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뿐만 아니라, 초저금리 경향 속에서 이자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증지 수입 역시 행정정보화로 인해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받아 불안정함
 - 이에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지고 있음
- 이와 같은 세외수입 구조의 불안정성과 낮은 신장성과 더불어 향후 기존의 광고, 호매실, 권선택지개발 등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한 임시적 세외수입 창출이 기대되기 어려운 바 안정적인고 지속가능한 신세원 확보가 요구됨

중요한 요소로 나타남

- 41) 전문가 및 업무담당자 인터뷰 결과 경험적으로 세무직의 세외수입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반직의 경우 이에 준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42) 실제로 등록 대기 시간이 1~2시간에 달하는 경우가 발생함

- 수원시는 2016년도에도 공공시설물 야간/휴일 확대개방, 칠보체육관 운영,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관광형 탈거리 론칭 등 신규세입원 발굴에 힘쓰고 있으나 여전히 세외수입 확충에 한계가 있음
- 수원시의 세외수입 관리의 초점은 징수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부과·관리 및 체납 징수 업무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밀착관리를 통해 체납액을 감소시키는데 주력하여 왔으며 상대적으로 세원관리 및 신세원 발굴에는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함
- 세원관리 및 신규 수입원 발굴을 위해서는 각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세외수입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및 조직과 신규 수입원 발굴 기준 등의 마련이 필요함
 - 세원관리 및 신세원 발굴을 위해서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연구, 원가 분석 등을 통해 적정 사용료 및 수수료, 임대료의 책정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요구되나 현재 수원시 세외수입 전담부서 및 관련부서의 인력 및 조직구조가 이에 부합하지 못함
 -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의 업무 과중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면밀한 관리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⁴³⁾
 - 세외수입 관련 주요부서(ex. 건축과)의 경우도 전문적으로 세외수입원 관리 및 부과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부재하고, 담당자 변경이 빈번하며 세정과 및 징수과와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함
- 이와 같은 조직 및 인력구성상의 한계, 조직간 연계 미비, 공유재산에 대한 조사부족 등으로 신세원발굴과 같은 기획업무는 도모하기 어려운 실정임

5.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 필요

- 수원시는 2015년 12월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통해 2007년 이후 동결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2018년 1월부터 ‘하수도 요금 연차별 인상계획’에 따라 하수도 요금을 2018년 20%, 2019년 10%, 2020년 4% 인상함
 - 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시설 및 노후시설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수원시는 이번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통해 세외수입 구조를 합리화하고 상하수도

43) 수원시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공유재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팀장 포함 4인임, 고양시의 경우 공유재산의 규모가 수원시의 1/2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인원은 7명임

경영적자 해소를 도모하였으나 수원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으로 원가분석에 기반한 사용료 및 수수료의 조정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수년째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 공공요금은 이해관계자 간 조정의 어려움, 정치적 부담 등으로 법률 및 규정 등에 요금 재산정 주기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요율 등의 조정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경제상황 및 환경의 변화로 야기되는 원가 인상요인을 정기적으로 사용료 및 수수료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경영적자, 공공서비스의 질 하락, 급격한 요금인상으로 인한 충격과 저항을 가져올 수 있음
- 따라서 주기적인 원가재산정을 통한 사용료 및 수수료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됨

제2절 수원시 세외수입의 개선방향

1. 안정적 경상적 세외수입의 확충

- 안정적 경상적 세외수입의 확충은 재원의 지속성,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지방재정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됨
- 무엇보다 안정적 경상적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해 근간이 되는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와 주기적 조정이 요구됨
 - 세외수입은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세입으로서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공공서비스 비용에 대한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음
 - 원가 변동의 요인을 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경영적자, 공공서비스의 질 하락, 급격한 요금인상으로 인한 충격과 저항을 방지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상적 세외수입 창출이 가능함
 - 사용료 및 수수료 요율조정에 대한 지역주민을 대상 홍보활동 강화, 주기적 원가 재산정을 통한 합리적인 요율의 설정 등 지속적인 요율 관리가 필요함
- 또한 현재 재산임대수입 등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세외수입은 낮은 규모에 정체되어 있거나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수원시 내 활용 가능한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파악과 이를 활용한 세원 확충 방안 모색이 필요함⁴⁴⁾
- 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저금리 시대에 따라 감소가 불가피한 이자수익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져야 함⁴⁵⁾
-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외국 및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수원시 고유의 지역적 특성(산업경제적 특성 및 역사문화자원 등)을 고려한 신규 경상적 세외수입원 발굴이 요구됨

2.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관리개선

- 수원시는 부과관리 및 체납징수 업무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밀착관리를 통해 체납액이 감소하여 징수율 측면에서 동종단체 대비 매우 우수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타 세외수입 항목에 비해 과태료 및 과징금 징수율이 낮게

44) 인천광역시의 경우 GIS를 활용하여 기존에 부과하기 어려웠던 공유재산에 대한 점·사용료를 산정하여 세외수입을 신규 창출하고 있음

45) 2018년 현재 이용 중인 시금고 계약 만료로 세정과를 중심으로 향후 보다 적극적인 이자수익 창출을 도모할 계획임

나타나는 등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언급한 바와 같이 수원시의 징수관리자가 타자치단체에 비해 우수하며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율 역시 매우 높은 수준에 속해 급격한 징수율 제고는 어려울 수 있으나 기존에 수원시가 외국인 체납 등에서 획기적 실적을 거둔 바와 같이 부과·징수의 사각지대를 포착하여 징수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사례별 접근이 필요함
- 다양한 세목의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유사 지방자치단체들의 우수사례를 검토·도입하고 징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조직 확충, 성과보상 측면에서의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함
 - 수원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의 그동안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중심으로 각각 전담팀을 구성하고, 체납징수에 집중하였으나 최근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책임조직 또는 종합적 정책기획 및 전략 담당 조직을 설치·강화하는 방향의 개선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부과·징수 전담 인력의 확충 및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부서에 세무직 인력의 안정적 배치와 활용이 요구됨
 - 특히 각 부서에서 부과 후 안내, 고지 및 독촉 등의 일련의 과정이 적시에 진행되고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담당자의 잦은 순환보직 방지, 업무 매뉴얼 제공 및 전문교육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음
 - 과태료 관련 부서 등 세외수입 관련 소외·격무부서에 대한 승진 인센티브 및 성과급 등 보상체계가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징수 업무에 대한 전문 계약직 인력 활용⁴⁶⁾과 같은 다양한 인력 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신규 수입원 발굴을 위한 노력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제도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과세대상을 확대 및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있으며, 효율적 이자관리, 투자개발 및 연구, 문화관광시설 확충, 공공문화시설의 복합적인 활용과 운영효율화를 바탕으로 신규 세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음
- 수원시 역시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적 기반 및 기간산업, 기타 공유재산을 바탕으로 잠재된 세원을 발굴하여 안정된 세외수입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⁴⁷⁾

46) 전문가 및 업무담당자 인터뷰 결과 징수 업무는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등에 따라 업무성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므로 채권추심 등 연계 업무에 전문성을 지닌 퇴직 공무원을 계약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음

47) 전문가 및 업무담당자 인터뷰 결과 팔달산, 광고산 등을 활용한 역사 관광자원 개발, 상권 밀집지역 지하

- 수원 고유의 역사문화 자원, 자연환경 등을 활용한 신규 수입원 창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기타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관리, 활용을 통해 임대료 수입, 점·사용료, 사업수입 등을 창출, 확대해야 함
- 또한 수원시는 수원컨벤션센터, R&D사이언스파크, 첨단과학도시(스마트폴리스), 복합스포츠문화단지(KT-Wiz) 조성에 따라 신규 세입원 확보를 위한 잠재적 기회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의 중심의 신규 수입원의 발굴이 요구됨
- 수원시 세외수입 전담조직이 단순히 세외수입 업무의 취합 및 관리만을 담당하는 것에서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신규 세입원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로서 현재 세외수입 전담팀의 인력 및 조직규모 확충이 필수적일 것임
 - 수원시 전담인력 규모가 유사 자치단체에 비해 적은 수준으로 현재의 인력으로는 신규 세입원 발굴과 같은 기획업무를 수행할 여력이 부족함
- 또한 신규 세입원 발굴 등을 위해서는 세외수입 전담팀과 회계과, 건축과 및 건설정책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등 주요 관련부서와의 협력이 필수적임
 - 특히 공유재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관리를 바탕으로 잠재적 세외수입원을 발굴,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회계과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됨
 - 현재 회계과의 업무과중으로 인해 공유재산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는 회계과의 조직 및 인력 확충을 통한 재산관리업무의 강화가 긴요함
 - 현재 회계과를 회계과와 재산관리과로 분과하고 재산관리업무를 강화하여 세외수입 부과업무와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⁴⁸⁾
 - 그 외 세외수입 관련 부서와 협업을 바탕으로 세외수입 기획, 원가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신규 수입원 발굴시 검토해야 할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과 연구 인력의 확보가 요구됨

주차장 건설, 공공청사 임대료 인상, 시유지 찾기 확대, 시유재산 자산관리 위탁 및 관리 전담팀 구성방안 등이 제시되었음

48) 부천시의 경우 회계과와 재산활용과가 분리되어 있으며 재산활용과는 물품, 관용차량, 공유재산 관리와 청사 유지보수, 동 청사 신축 및 증축, 공공건축물 공간활용 기획단 운영, 공공시설물 가격표시제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4. 세외수입 조직의 확충 및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

- 수원시의 경우, 부과관리 및 징수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나 도내 유사 지방자치단체들과 비교하여 가장 많은 인구수와 큰 세입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담당인력은 유사 자치단체와 비슷하거나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세외수입 확충 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조직의 구축이 미비함
 -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업무분장이나 인력측면에서 어려움이 존재함
 - 세원관리 및 세외수입의 종합계획을 수행하는 책임조직의 부재로 세외수입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가 어려움
- 이에 세외수입의 확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세외수입 전담조직의 확대 및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정립이 요구됨
- 그 외 관외 세외수입 업무수요로 인한 세외수입 인력부족은 중앙정부 차원의 인력충원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의한 비용지원 등이 합리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임⁴⁹⁾
- 또한 앞서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된 바와 같이 세외수입 담당인력의 전문성 부족 문제의 해소를 위해 전문교육 실시, 잦은 순환보직의 방지, 업무성과 및 신규세입 발굴에 따른 인센티브의 강화, 격무부서에 대한 보상체계 확립, 세외수입 업무 매뉴얼의 구축 등이 필요함
- 또 현재 수원시의 경우 납부편의를 제공하는 대시민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으나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은 미비한 편으로 세외수입 업무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5. 세외수입 관리체계 강화 및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 제고

-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세원확충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지방 분권시대에 매우 중요한 세원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동안 지방세 및 이전재원에 비해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낮았음
- 전문가 및 담당자 인터뷰 결과,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에 따라 징수성과에 큰 차이가 있으며, 주민 수용도에도 큰 영향을 받음
- 따라서 정기적인 징수대책회의, 부서별 체납액 상시 관리체계 등을 통해 업무전반에 대해 밀도 있는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주민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49) 전문가 및 업무담당자 인터뷰 결과, 행정안전부에 의한 관외분 처리인력의 추가 배정이 어려울 경우 관외분 처리 금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교부금과 유사한 형태로 해당 자치단체에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참고 문헌 |

<국문 자료>

- 강종규, 김인호(2007), 우리나라 지방세외수입의 확충방안-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영남지역발전 연구, 제37권, pp.119-147.
- 곽채기(2014), 지방자치단체 세입원으로서 지방세외수입의 위상과 역할 및 과제, 지방세포럼, 제18권, pp.19-44.
- 구균철, 2017, 지방세다운 지방소득세, 성숙한 지방자치의 디딤돌, 한국지방세연구원 KILF REPORT, Vol.39
- 국중호(2012), 일본의 지방세 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 김대영(2014),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 효율화에 대한 연구, 재정정책논집, 제16권 제4호, pp.103-138.
- 김대영, 강민구, 김민정(2014),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 효율화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 김재진(2013),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외수입 증대 방안, 재정포럼, 203권, pp.39-59.
- 김종순(2002), 지방세외수입의 확충방안: 공공서비스의 향상과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방안, 지방재정, 2003권 3호, pp.29-38.
- 김태복, 이효 (2002),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외수입의 개선방향, 한국토지행정학회보, 9권 2호, PP. 49-59.
- 김태호(2017),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개선 전략, 고양시정연구원 · 수원시정연구원 공동세미나 자료집.
- 마정화(2014), 지방세외수입금의 법적 지위와 징수 관련 법제 정비방안, 정책과제, 2014-09, 한국 지방세연구원.
- 마정화, 유현정(2016), 지방세외수입법 적용대상 확대 및 체납처분절차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 배용수(2002),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재정, 2002권 3호, pp.39-48.
- 서희열, 심충진(2005),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과 신 세원 개발방안, 세무학연구, 제22권 제1호, pp.9-34.
- 송상훈, 류민정(2008),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레저세의 확대개편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안종석(1997), 지방세외수입의 현황 및 정책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 유태현(2017), 지방재정분권 실천방안, 재정분권 국민 대토론회 자료집.
- 윤태섭, 서정섭, 이희재(2016), 세외수입체계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지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가정책연구, 제30권 제1호, pp.97-114.

- 여은정, 최천규(2008), 지방세외수입 징수통합법의 제정방향, 조세연구, 제 8-1집, pp. 152-198.
- 이상훈, 사명철(2016), 지방세외수입의 현황과 과제, 한국지방세연구원.
- 이세구(2005), 서울시 세외수입 증대방안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를 중심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이수범(2002), 논단: 지방세외수입의 확충방안, 지방재정, 2002년 3호, pp. 5-16.
- 이원희(1996), 전략적 재정운영으로서 세외수입 확충방안: 경기도를 중심으로, 지방재정학보, 1권, pp.29-53
- 이재원(2017), 중앙-지방간 복지재정관계 재정립방안, 고양시정연구원·수원시정연구원 공동 세미나 자료집.
- 이환범·권오규(2002),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 방안,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2권 제4호, pp. 121-141.
- 임성일(2014),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이론적 토대와 방향, 지방세포럼, 제18권, pp.4-18.
- 전상경(2002), 지방세외수입의 현황과 문제점, 지방재정, 2002권 3호, pp.17-28
- 정지선, 여은정, 최천규(2007), 세외수입 징수 통합법의 제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7.8, pp.259-286.
- 조임곤, 이상훈(2013), 지방세외수입 확대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 주만수, 주운현, 이상훈(2015), 지방세외수입 신규 수입원 발굴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 주운현(2008),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정책의 쟁점과 운영방향에 대한 소고(小考), 한국정책과학 학회보, 제12권 제1호, pp.71~93.
- 진희원, 김태호(2015), 세외수입 실무행정의 합리적 개선 방안: 서울시 세외수입 행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 최철호(2011), 일본의 지방환경세에 관한 일고찰, 환경법과 정책, 제7권, pp.179-208.
- 한선경(2010), 광역자치단체 세입추정 오차에 관한 연구, 정부학연구, 제16권 제2호, pp.151~172
- 행정안전부·한국지방세연구원(2017), 2017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분석·진단, 한국지방세연구원.
- 현대호, 문준조, 임현, 이민영(2010),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의 징수절차에 관한 통합법 제정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영문 및 해외자료>

日本 總務省(2017), 平成29年版地方財政白書

IMF(2014),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14.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1999), The appropriate role of user charges in State and local finance, State & federal issues

U.S. Census bureau(2015), 2015 State & local government

U.S. Census bureau(2016),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s-Government finance and employment classification manual

<통계·보도자료 및 기타>

경기도의회 보도자료(2017.8.8), 최근 5년간 세외수입 현황 자료, “경기도 31개 시군 세외수입 미납액 연간 1조 190억, 결손액은 1천 31억 원으로 시급히 대책 마련 해야” .

기획재정부, 예산효율화 우수사례(세입증대 분야), 각 년도

성남시 보도자료 (2016.8.25.), “성남시청사 입구서 체납차량 걸러내” .

수원시, 수원시 결산서, 각 연도

수원시, 수원시 예산서 (본예산), 각 년도

수원시(2016), 2016 세외수입 운영평가표

수원시(2017), 2017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내부자료

수원시(2017), 2017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계획

수원시(2017), 2017 세외수입 우수사례 내부자료

수원시(2017), 2017년 세외수입 업무분장

수원시(2017), 2017년 세외수입팀 세부업무계획

수원시(2017), 2017년 조직개편에 따른 세외수입 업무 운영 지침

수원시(2017), 2017년 하반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서

수원시(2016), 2017년 예산 성과계획서

수원시(2017),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대책보고자료

수원시(2016), 지방자치단체 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자료

수원시(2016), 행정안전부 2015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내부자료

수원시(2017), 지방재정공시 (2016년 결산기준)

성남시(2017), 지방재정공시 (2016년 결산기준)

용인시(2017), 지방재정공시 (2016년 결산기준)

화성시(2017), 지방재정공시 (2016년 결산기준)

창원시(2017), 지방재정공시 (2016년 결산기준)

창원시(2017), 2017 시정백서

한국지방세연구회(2017), 2017 지방세외수입실무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6), 지방재정분석보고서
행정안전부,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각 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각 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각 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2015, 2016년도
행정자치부(2009), 지방세외수입 실무편람

성남시청 www.seongnam.go.kr

수원시청 www.suwon.go.kr

용인시청 www.yongin.go.kr

창원시청 www.changwon.go.kr

화성시청 www.hscity.go.kr

KOSIS kosis.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www.elis.go.kr

국가법령정보시스템 www.law.go.kr

| 저자 약력 |

황소하

행정학박사

수원시정연구원 재정경제연구실 연구위원(현)

E-mail : hsoha@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정형평화 효과분석」 (2017,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2017,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행사·축제사업 운영현황 평가」 (2017,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의회 복합청사 시설활용 방안 검토 용역」 (2017, 수원시정연구원)

「2017 수원시 재정사업평가 평가보고서」 (2017, 수원시정연구원)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수원시 지방보조금 운영을 중심으로-」 (2016,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중기지방재정 운영 및 지방재정사업 평가방안」 (2016, 수원시정연구원)

「자원봉사활동 발전전략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016,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조직진단연구」 (2016, 수원시정연구원)

「지방재정제도 개편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2016,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모형에 관한 연구」 (2015, 수원시정연구원)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으로 인한 적정인력 확충 및 조직개편 방안」 (2015, 수원시정연구원)

